

忠清北道教育委員會會議錄

(第4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1.	제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정기회) 개회식.....	2
2.	제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7
3.	제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29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2차 감사·조사소위원회.....	42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3차 감사·조사소위원회.....	45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4차 감사·조사소위원회.....	61
7.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5차 감사·조사소위원회.....	74
8.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6차 감사·조사소위원회.....	89
9.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7차 감사·조사소위원회.....	100
10.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1차 예산소위원회.....	102
1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2차 예산소위원회.....	104
1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3차 예산소위원회.....	116
1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4차 예산소위원회.....	128
14.	부 록.....	130

제 4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 회 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

1991년 11월 1일 (금요일) 10시 30분

제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정기회) 개회식순

1. 개 식
2. 국민의례
3. 신임 교육위원 선서
4. 의장 환영인사
5. 신임 교육위원 인사
6. 개회사
7. 교육위원 윤리강령 채택
8. 폐 식

(사회: 의사과장 이영규)

(10시 30분 개식)

○ 의사과장 이영규 : 지금부터 제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동 일어남)

-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 주악과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

- 바 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 하시겠습니다.

녹음된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녹음 전주에 따라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 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 묵 념

(녹음 주악)

-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30일 충청북도 의회에 서 선출된 홍신희위원님의 교육위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홍신회위원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먼저 선서문을 왼손에 드시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손을 내리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신회위원 위원석에서 일어남)

○ 홍신회 위원 : 선서.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우리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위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1년 11월 1일

충청북도교육위원 홍신회

○ 의사과장 이영규 : 다음은 의장님께서 간단한 환영인사를 하신 후 홍신회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그간에 우리 11명 교육위원 중에서 한 분이 궐원이 되었던 바 이제 지난 30일 도의회에서 궐원이 되었던 청원군 대표로 홍신회박사께서 교육위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방금 취임선서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본인과 우리 교육위원 일동은 홍신회위원을 충심으로 환영하여 맞이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홍신회위원께서는 학식과 덕망이 높아 우리 사회에서 널리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홍교수께서 조예가 깊은 이 법률학에 박사학위를 가지신 이 분의 그 해박한 지식은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의 발전에

많은 공헌이 있으실 걸로 알며, 더군다나 또 현직 교수로서 우리 교육위원으로 모시게 되니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상에도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며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운영에 있어서 조화의 모를 찾아 주시고 많이 공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인사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홍신회위원 위원석에서 일어남)

○ 홍신회 위원 : 부려 누달간이나 지각을 한 청원군 출신 위원으로 임명된 홍신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가지 스스로를 반성해 봤고, '과연 제가 이런 훌륭한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냐' 하는 많은 회의도 갖었습니다. 마는 주위의 여러 어른들로부터 '한번 이런 것쯤 함으로 해서 우리 교육을 좀더 좋은 곳으로 높이는 데 일조하는 것이 어때냐' 하는 권유에 의해서 나와서, 오늘 영광스런 이 자리에서 선배위원들을 뵈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을 뵈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아는 것도 부족하고 인격도 원만치 못한 이런 이 사람을 여러분들께서 잘 보살피 주셔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로 우리 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선배 교육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전달을 부탁하면서 인사의 말씀에 가뭇합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그리고 유성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결실과 수확의 풍요로운 계절 속에 교육자치제가 실시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뜻깊은 교육위원회 정기회기를 맞이하여 평소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온 도민의 뜨거운 열망 속에 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공포·시행되어 왔고, 이제 주민자치에 의한 지방교육 시대의 역사적인 개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모든 사항을 주민의 대표인 우리들 교육위원이 심의·의결 하도록 규정되었고, 이제 우리 도의 교육은 명실공히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도민 주체교육이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현행 교육자치법에는 주민의 교육의 사를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실천시키기에는 적지 않은 미비사항이 논란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들 교육동지는 물론 150만 도민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의 각계 각층이 교감을 이룩하면서 총체적인 노력으

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 여러분!

이제 교육은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고 새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위대한 통일 조국의 미래를 예단하고 국가와 사회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인재 창출에 온갖 노력을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는 오늘의 교육자치가 당면한 중차대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육 현실은 교육계 스스로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빈약한 교육시설, 모자라는 교육재정, 지방교육의 고충,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서 오는 만연된 사회적 병리는 학교 교육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자녀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고 교육 담당자들을 매우 당혹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들 교육동지가 앞장서서 증지를 모으고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가슴을 활짝 열어 너와 나의 구별없는 창조적 노력을 다져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기 중에는 집행기관인 교육청의 전반적인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중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행정의 감사

실시하는 한편 '92년도의 교육시책을 비롯한 주요 교육사업의 추진에 따라 교부예산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 일동은 150만 도민의 교육의사를 결집한 대의 기관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서 이 때까지의 교육 추진 업무를 면밀히 살피보면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학생 교육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감사 활동과 예산심의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은 이번의 교육위원의 활동에 격의 없고 진지한 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내 고장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식과 시대적 소명을 바탕으로 이번 정기회기에 우리의 정성을 다한다면 충북교육의 새 지평이 기필코 열릴 것이며 교육의 난제들이 한올씩 한올씩 풀려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으로 예정되는 각종 선거와 정치적 행사 속에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그 정도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의연한 자세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유성종 교육감님 !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

금년도 한 해는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희망찬 새해 1992년을 준비하시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도록 이 자리를 빌어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교육위원 여러분 ! 그리고 직원 여러분 ! 모조록 하시는 일마다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 11.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 김영세

○ 의사과장 이영규 : 다음은 교육위원 윤리강령이 채택 되시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우리 교육위원 일동은 주민의 대의 기구라는 부철한 봉인의식 속에서 주어진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뜻을 윤리강령에 담아 채택코자 합니다.

교육위원 윤리강령을 이재희위원이 낭독해 주시겠으니 낭독이 끝난후 뜻을 같이 하시면 박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사회대로 나옴)

○ 이재희위원 : 의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위원들의 결속을 다짐하는 뜻으로 제가 윤리강령을 낭독한 뒤에 힘찬 박수로 채택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낭독을 하겠습니다.

교육위원 윤리강령

지방교육 자치의 참된 정신속에 초대 민선 교육위원으로 선출된 우리는 교육이 국가와 민족 번영의 초석임을 깊이 인식하고 교육에 대한 주민 대변자로서 교육위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엄숙히 다짐하면서 우리가 준수할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 一. 우리는 교육자치의 참뜻을 받들어 국민의 의사가 교육 전반에 걸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진력하여 교육행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一.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후세들이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인교육의 내실화에 전력을 다한다.
- 一. 우리는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정치적 편파성도 교육에 부당하게 관여함을 배격한다.

一. 우리는 대화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모든 사안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함으로써 원만하고 건전한 위원회의 풍토를 조성한다.

一. 우리는 교육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숭상수범한다.

1991년 11월 1일

충청북도 교육위원 일동

○ 의장 김영세 : 앉아 주시죠.

감사합니다.

초대 민선 교육위원으로 선출된 우리는 교육이 국가와 민족의 초석임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가 채택한 윤리강령의 뜻을 항상 염두해 두고 교육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다짐하여야 하겠습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 이상으로 개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48분 폐식)

○ 교육위원 의석 배치도 : 별첨 1.

○ 교육위원 윤리강령 : 별첨 2.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

1991년 11월 1일 (금요일) 10시 48분

의 사 일 정(제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1992년도 주요시책 발표
3. 의안 상정
 - 가.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
 - 나.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
 - 다.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라. 충청북도교육감표창조례개정조례안
 - 마.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바.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 의 된 안 건

1. 회기결정의 건
2. 1992년도 주요시책 발표(교육감)
3. 의안 상정
 - 가.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교육감 제출)
 - 나.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 다.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라. 충청북도교육감표창조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마.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바.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

사. 감사·조사소위원회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8분 개의)

○ 의장 김영세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한 것입니다.

충청북도 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의 4건의 조례안과,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하 시겠습니다.

그리고 제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1991년도 교육행정 감사계획서에 의거 집행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일은 도교육청, 11월 4일은 제천교육청, 11월 5일 청주교육청, 11월 6일 도교육청 감사 및 종합강령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소위원회가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최종일인 11월 11일에는 예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92년도 충북교육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후, 감사·조사소위원회 활동에 따른 감사실시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하도록 의사일정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50분)

1.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김영세 :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제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 일정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0일간으로 되어 있으나 최종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방금 의사과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로 결정코자 제의 합니다만,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정기회의 회기는 '91년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2. 1992년도 주요시책 발표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1992년도 본도 교육 주요시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유성종 교육감께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발언대 나옴)

○ 교육감 유성종 : 존경하는 김영세 의장님과 교육위원 여러분 !

오늘 정기회 개회를 축하드립니다. 또한 처음으로 당선, 동원하신 홍신회위원님께도 아울러 축하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정기회의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저희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시고 특히,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의 총체적인 예산을 심의해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의미가 깊은 회기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의 커다란 공헌을 저희들이 앙망하여 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충청북도 교육청의 교육시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내용은 별첨된 '92 교육시책의 내용과 같으므로 기재 생략)

이와 같은 충청북도 교육청의 교육지향을 위하여 존경하는 의장님과 교육위원 여러분

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도 교육청의 '92년도 교육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오천의 교육동지들은 일심 협력해서 여러교육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교육의 현장에 온 정성을 쏟고 충북교육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체적인 내용은 비예산 사업까지를 다 아울러 '92년도의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 관리국장이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적에는 예산을 중심으로 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더 부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 유성종 교육감님, 장시간에 걸쳐서 발표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안 상정에 앞서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11시 31분)

3.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 실습소설치조례안

○ 의장 김영세 : 좌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1호 의안인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

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옴)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을 말씀 올리기 전에 그간의 공동실습소설치 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도 교육부의 실업계고교 수용능력확충 계획에 의거해서 영농기계화에 따른 현대 농기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기계 공동 실습소를 전국의 대표적인 농업계고등학교에 '93년도까지 8개소를 설치하는데, 우리도는 금년에 2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 설치 준비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 드리면.....

(별첨된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함)

이상 11조로 구성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거기에 이미 말씀하신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에 관련돼 있는 서류를 첨부해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세 : 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은 여러위원님께 사전에 내용이 배포 되었기 때문에 예의 검토 하셨을 줄 압니다.

이제 제1호 의안에 있는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은 거수로 표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모두 간결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권혁풍위원 말씀하세요.

○ 권혁풍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 8조에 보면 교육대상으로서 첫째 자영농과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로서는 아마 자영농과 학생이 가장 주축이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다면 자영농과 학생이 졸업한 뒤에는 어떤 정착금이랴던가 혹은 어떤 특혜가 있어 가지고, 그 특혜에 대응하는 농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의무연한 같은 것이 주어져 있는건가, 그것을 한번 묻고자 합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저희들 본도에는 자연농과 학생이 2개교가 있습니다.

청주농고하고 보은농고에 각각 1개학년에 40명씩 규모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92년도 부터는 청주농고에 자연농과는 폐과가 되고, 보은농고에 자연농과 1학급 40명 쯤만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졸업후에 영농정착금으로 해서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미약 합니다.

약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연농과 학생으로서 입학은 하였습니다다마는 수업료나 기타 모든것이 면제되어 있는데 사실상으로 봤을 적에는 농촌에 정착 해서 영농을 계속하는 그런 학생들은 거의 없는 걸로 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것이 좀 딱한 점이고 또, 그 영농과를 졸업 받은 학생이 무슨 시한부로 해서 농촌에 정착해서 농업을 경영한다고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연한은 없습니다.

답변이 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 권혁풍 위원 : 네,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그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래서 저희들이 2개 농고에서 운영하던 자연농과반 중 한 학교를 폐과 시키는 이유도 사실상은 큰 효과도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자연농과는

없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앞으로 더 좀 1개 시·도에 1개 교까지는 유지를 해보자 하는 제안이 있기 때문에 보은농고 1개교만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 그렇다며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 농촌 청년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킬 필요성은 없을까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현재 저희들 각 6개 농고에서는 여름방학을 기해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영농 후계자, 이분들에 대한 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권위원 질의 마치셨습니까 ?

○ 권혁풍 위원 : 예.

○ 의장 김영세 : 예, 다른 위원.....

(박병해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박병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병해 위원 : 여기 공동실습소 설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충청북도 하면 충청북도 청주농업고등학교에 한번 설치해주며는 충청북도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몇 해 후에는 보은농고도 해주고, 제천농고도 해주고,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네, 그것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93년도까지 8개 공동실습소

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도가 선택이 돼서 저희들 6개 농고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아까 말씀 드렸던 기당 2주간씩 수업을 전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고에서 각 농고마다 고가인 현대 농기계를 전부를 다 사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농고 중에서 선택해서, 청주농고에 기숙사도 있고, 또 자영농과가 왜과 됨에 따라서 그 기숙사를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해서, 또 가장 중앙지로 생각을 해서, 농고에다가 공동실습소를 설치함으로써 거기에 각 6개 농고 학생들이 순번적으로, 로테이션 식으로 거기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실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는 청주농고에 설치가 되며는 그것으로서 끝이 납니다.

○ 의장 김영세 : 박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 박병해 위원 : 예.

○ 의장 김영세 : 또, 다른 질의.....

(이상일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이상일위원 질의하세요.

○ 이상일 위원 : 그 실습소 예산 사항을 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2억 5천만 원을 지원 해주고 자체예산으로 1천7백4십4만 5천원을 계원 요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가다 보면 농업기계

도 점차 새롭고, 또 좋은 기자재가 계속 나올텐데,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이번 한번 2억 5천만원 지원해 주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실습소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새로운 기계 구입자금이 계속 지원되는지에 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현재의 추세로 봤을 때에는 우선 공동실습소 설치를 하는데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또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아직 교육부에 발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그것에 대한 말씀을 올리기가 참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이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 이상일 위원 : 예.

(김응복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 김영세 : 예, 김응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응복 위원 : 설치조례안 5조 "직원 배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하였는데 여기 실습소를 설치한다며는 별도 공무원의 정원이 어느 규모로 어느 체제 하에서 필요할 것인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거기과 관련된 9조의 수당에 대해서 "실습소의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

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 수당에 대한 계획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같은 것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광동실습소 조태안이 가결 되면 거기에 대한 교육규칙에 의해서 또 다시 책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실습소에 종사하는 직원은 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습소 관리인 하나, 기능직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실습소를 관장하는 지도교사,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명칭상으로는 당해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6개 농고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로테이션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분적으로 그 학생들의 생활지도라던가 또는 기숙사 생활의 감독이라던가, 이러한 전반적인 지도교사 한 명, 또 보조원 한 명, 이렇게 해서 세 명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봉급관계는 그 기준에 의해서 봉급이 지급 되리라고 봅니다.

○ 김응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제 본 안건을 찬반토론에 부치겠습니다 먼저 반대로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없기 때문에.....

예, 이의 없으시죠? 전원 찬성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1호 의안인 충청북도농업계 고등학교농업기계광동실습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4.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제2호 의안인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계속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별첨된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함)

○ 의장 김영세 : 수고 하셨습니다.
역시 위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많이 검토 있으신 걸로 압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은 거수로 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충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장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충호 위원 : 장충호입니다.

제3조 2항에 "연극·영화등 공연장 운영" 이었는데 여기에 "등"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도 갑니다마는, "연극·영화·음악" 이라는 것을 좀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음악..... 이 어떻게 해서 그 연극·영화만 특별히 쓰고서 그냥 "등" 자로 그렇게 하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이 건물의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연장으로서 전시물도 게시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고, 음악회도 전개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극·영화 등" 이렇게 저희들이 분구를 만들었는데 꼭 음악이라고 하는 말을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학생들에 대한 여가 선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장충호 위원 :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연극·영화 못지 않게 음악이라는 것도 말하자면 대등한 위치인데 왜 그걸 빼고서 그냥 두느냐 하는 얘기다 이말이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뭐 그거야 음악을 넣어도 좋지요.

○ 의장 김영세 : 답변 됐습니까?

○ 장충호 위원 : 예.

(김사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 김영세 : 또, 김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사수 위원 : 그런데 이 학생도서관이 있는데 모든 인원이나 기타 시설 모든 것을 흡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학생도서관이라는 것은 어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떻게 현재 하고 있는지, 학생도서관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중앙도서관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 중앙도서관 하고 이 학생회관에 있는 도서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사용료 관계가 여기 나오는데 이 사용료는 어디에 근거로 해서 산출하여 만들었는 것이냐, 결정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제가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하고 학생도서관 하고는 완전

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은 현재 모충동에 새로 건물이 신축 되어 있어서 이미 별개로 되어 있고,

학생도서관은 현재 학생회관 건축하는 그 장소에 학생도서관으로서 명칭이 부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용으로 활용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학생회관을 건축 하는 관계로 인해서, 학생도서관은 폐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건물안에 학생도서관, 학생회관 안에 있기 때문에 학생도서관은 없애고, 도서관을 설치할 해서 학생회관으로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사수 위원 : 그러면 그 전에 상당 공원 옆에 있던 그....., 그때도 그것이 학생도서관 아니었었어요, 학생회관인가? 명칭이 학생도서관으로 알고 있는데;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학생도서관입니다.

○ 김사수 위원 : 그건 어디로 갔어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게 중앙도서관으로 흡수가.....

○ 김사수 위원 : 그것은 중앙도서관으로 흡수가 됐군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 김사수 위원 : 그럼 먼저 학생회관을 거기다 짓고서.....

다만, 그 기간은 얼마 안 돼죠, 그 동안에 학생도서관이라는 말은 없는 걸로 했다, 이 말이죠.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 김사수 위원 : 예, 알아 들겠습니다.

그럼 겹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연구·영화를 한다, 또 무슨 도서관을 한다 하는데, 참고로 연구이나 영화를 하려는 몇 석이나 거기 현재 설비가 되는 겁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지금 거기에 아직 완전하게 현재 내부시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외곽만 갖추고 있는데.....

○ 김사수 위원 : 아니 지금 그러니까 몇 석 정도는 알수 있지 않을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200석 정도.

○ 김사수 위원 : 그래 200석 정도라면 이제 인원이 많이 들어와서 '나도 들어간다' '나도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경합이 이루어 질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때에 대한 대비도 뭔가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200석 가지고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요?

실제 운영면에 있어서.....

이래서 이걸 좀 여러가지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충실하게 우리가 학생회관에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도 해 보는 것이 어떠냐, 200석 가지는 수용 능력으로 봐서 대단히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을 것 같은데.....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여가선용의 장으로써 이렇게 마련하기 때문에, 방과 후에 또는 클럽에 의해서 또는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석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클럽·클럽 단위 또는 학교 단위 또는 청소년의 모임의 단체 단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사수 위원 : 글썄요,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수가 청주시내에 얼마입니까?

상당수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간 그 운영에 대해서는 뭔가 운영의 모를 좀 써야 될 것로 알고 있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 김영세 : 예, 이재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희 위원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청주에 학생수도 많고, 인구수도 많아서도 단위 학생회관 건립같은 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 보지만, 이게 지역적인 면에서 우리 제천같은 경우에는 도서관도 지금 시 문화원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제천군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만 제천군에는 현재 도서관도 하나 설치 안돼 있는데 지역적인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단위에 이런 학생회관 설치하라는 현재 시·군 단위 도서관이 없는 데는 그런걸 배치할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이것이 첫째 질문이고,

두번째는 앞으로 이제 과의 폐지로 인해서 가지고 상당히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직면에 보려는 운영과에는 교육연구관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운영과에는 연구관 외에 교사 배치를 어느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 복안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네, 지금 청주시내에는 도의 중심지이고 하기 때문에 우선 과거에 그 학생도서관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는 건물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해서 강당까지 겸해서 지금 건축이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본청의 계획에 의하면 각 시·군마다 학생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교육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이루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아마 회관은 설립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구관, 거기에 대한 관계자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관 하나 하고, 연구사 두 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원은요.

○ 이재희 위원 : 예, 됐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또 다른 위원...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권혁풍위원 질의하세요.

○ 권혁풍 위원 :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회관에 관장을 두되 지방 서기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회관은 그 주요한 핵심 업무가 운영과에서 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운영과·도서과인데, 운영과에 일괄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학생회관에 핵심적인 중추역할을 하는 그런 활동부서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때 어찌서 그 관장을 지방서기관으로 보했는가, 교육연구관으로 보하면 안되는가 하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가?

그 핵심 부서인 운영과를 맡아서 여러가지 활동을 할 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역

시 연구관으로 적합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사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 관장도 서기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종합야영장, 거기에도 서기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려는 전문직과 일반직에 대한 그런 분제도 있고, 행정상 여러가지 업무가 일반업무에 과중한 것이 많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그러한 조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희 도에도 서기관급으로 임명토록 조태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 보려는 도서관장도 일반직이고, 또 관장도 일반직인데 운영과장만은 교육연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형평상으로 볼때도 그렇고 형평을 벗어난, 어쩔 수 없이 형평을 뒤 세 부서에서 맞추기는 힘듭니다마는 관장만은 그래도 교육연구관으로 해야만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 갈 수 있지 않은가, 물론 그 관리라던가 여러가지 업무상 복잡한 일이 많이 있겠습니 다마는, 그래도 어디까지나 운영과를 보조 해 주는 그런 역할에 해당하지 않은가 할 때 교육연구관으로 관장을 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리국장 집행기관석에서)

○ 관리국장 김근학 :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회관 관장은 영조물을 관리하는 측면이 주로 많기 때문에 영조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일반적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국이 지금 학생회관이나 야영장 등에는 전부 일반적이고, 야영장장이나 관장을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관리적인 측면이지 거기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키는 측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충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 김영세 : 예, 장충호위원 말씀하세요.

○ 장충호 위원 : 조금전에 제가 제3조 2항에 대해서 질의만 하고 그 "음악" 두 글자를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정식 동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구 수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정식 동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2항 "연극·영화" 다음에 "음악" 두 글자를 삽입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일단 동의안은 질의 종결하고서 정식 채택하도록 하죠.

권혁풍위원 답변 됐습니까?

수정하실 의사가 있으면 이따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 이따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수정 동의하면 돼요.

○ 권혁풍 위원 : 네.

(이상일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 김영세 : 예, 이상일위원 질의하세요.

○ 이상일 위원 : 제 20조 "회관 사용의 제한" 내용을 보면 말이죠, "1. 실내 풍기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고 5항까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여기에 연극이나 영화를 상영하다가 보편은 애초에 상영하겠다고 하는 영화나 연극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공연물을 상영할 때, 예를 들면 반체제 영화라든지 정부에서 학생들이 상영해서는 안되는 것을 운동권 학생이나 또는 전교조를 통해서 상영을 할 때 이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거기 그 끝머리 다섯번째요 "기타 회관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거기에 통합적으로 다....., 일일이 그것을 종류별로 나열할 수가 없어서 거기다 통합을 시킨 건데요.

○ 이상일 위원 : 그것도 이제 제가 이따가 수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걸 "기타"라고 하지 말고 명확하게 학
과에서 가령 "반체제 내용"이라든지 또는
"학생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명
확히 명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를.....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좋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이상일위원 이따
수정 동의 하시면 됩니다.

○ 이상일 위원 : 예.

○ 의장 김영세 : 또 질의 더 있으신....
(박병해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박병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병해 위원 : "충청북도학생도서관을
흡수 통합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충청북도도서관은 중앙도서
관으로 다 옮긴 걸로 아는데, 그러면 현재
충청북도도서관의 모든 자산은 그대로 완전
히 구분되게 살아 있는 거죠?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네.

○ 박병해 위원 : 그러면 이번에 저걸
흡수한다고 하면은 중앙도서관에서 그걸 전
부 분류해서 다 빠져 나가야지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아니 현재 학
생도서관이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완전히
중앙도서관으로.....

○ 박병해 위원 : 아니 난 자산 얘기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책이나 뭐 이런 문제.....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 문제.....

(부교육감 집행기관석에서)

○ 부교육감 정인영 : 중앙도서관에는
학생도서관의 책상이 없습니다.

○ 박병해 위원 : 아니 전에 있던 그 도
서.....

○ 부교육감 정인영 : 그건 전혀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 입니다. 지금 학생
도서관은 공교 학교 옆 동쪽에 있는 학생도
서관, 그걸 얘기합니다.

○ 박병해 위원 : 글썽 도서관 건물은
그런데.....

○ 부교육감 정인영 : 책도 거기 도서관
에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이 중앙도서관에
있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박병해 위원 :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전에 학생도서관 안에 있던 모든 책이나
자산, 이걸 뭐냐 그거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건 중앙도
서관으로 이미 이전이 다 되어 있고요, 학
생도서관은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 박병해 위원 : 이미 중앙도서관으로
채부까지 다 이관이 됐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모든 것
은 분리가 다 되어서 독립되어 있습니다.

○ 박병해 위원 : 그럼 이것은 새로 지
금 만든 건데, 건물도....

"흡수" 뭐 이런 말 여기서 써야 되나?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것이 이제 학생도서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서 근래에 그것이 개관을 하여 사용해 왔었는데, 이것을 학생회관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여러 장으로 활동을 하기 위하여 그것을 흡수를 해서 도서관을 둔다고 하는 것으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도서관을.

○ 박병해 위원 : 그렇고 여기 "청소년 문예활동 공간과 공연장(연극·영화 등)을 제공" 이렇게 써 있는데, 현재 거기 옆에 건립하고 있는 그 체육관, 이거 소속은 어디 입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학생회관에 속해 있습니다.

○ 박병해 위원 : 학생회관에.....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강당도...

○ 박병해 위원 : 그러면 공교 소유가 아니죠?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렇지요.

○ 박병해 위원 :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예.

○ 의장 김영세 : 예, 답변됐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세요?

(위원석 잠시 침묵)

예, 질의 없으시죠?

그럼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질의중에 여러가지 수정 동의안이 나올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12시 39분)

○ 의장 김영세 : 자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우리가 질의·답변한 질의 종결 후에 이제 본 안건을 찬반토론에 부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 김영세 : 예.

○ 권혁풍 위원 : 제가 일부에 대한 반대토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제4조 1항 "회관에 관장을 두되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하는 조항을 저는 일부 수정해서 개의를 제시합니다.

지금 전문직 대 일반직으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은 우선 전문직, 즉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하는데 커다란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전문직이 제대로 전문

성을 발휘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전문직을 보다 크게 제시해서, 앞장을 내세워서, 전문성을 보다 연구를 해서 강화 시키고, 이 전문적인 연구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북도도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전개 시켜야 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판장을 하나 보하는데 있어서도 타 다른 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 만은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는 그런 단순한, 경직된 조항을 고쳐서 제4조 1항을 저는 "장학관 및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하는 조항으로 바꾸어서 개의를 제시합니다.

또 아까 장충호위원님과 이상일위원님이 제시한 그 안도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제3조 2항에 "연극·영화 등 공연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음악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음악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등"하면 물론 거기에 다 들어간다고 확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음악을 하나 더 집어 넣어주는 것이 좋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극·영화·음악 등 공연장 운영" 이렇게 개의를 제시합니다.

또 한가지는 이상일위원께서 말씀하신 제

20조에 "기타사항"이 5항으로 되어 있는데 5항을 6항으로 고치고 5항에 다시 한개를 신설해서 "5.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내용이 담긴 공연물을 공연할 때"라는 조항을 하나 더 집어 넣어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수정 동의합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정식 개의안으로서 동의하신 거죠?

○ 권혁풍 위원 : 네.

○ 의장 김영세 : 찬성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 있으시죠?

정식 개의안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또, 제 개의안 있으면 말씀 하세요.

(위원장 잠시 침묵)

제 개의안 없으시죠?

(박병해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 김영세 : 예.

○ 박병해 위원 : "장학관 및", 그 "및"이란 말을 "또는" 이런 말로 넣는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런 말 보다는 "교육에 위해되는" 이런 말로 고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의합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그것은 동의 측에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때요, 저 권위원님 "장학관 또는 일반

직".....

○ 권혁풍 위원 : 네, 그건 좋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네, 또 이상일위원 어
떠세요.

○ 이상일 위원 : 그것이 그 말을 그렇
게 되면 조금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부분에는 "교육의 본질에 의해되는 공연
품을 공연하거나" 오히려 이렇게 바꾸면 어
떻겠습니까?

("교육에 본질보다는 교육이 더 포괄적이
지" 하는 위원 있음)

○ 박병해 위원 : 글썽, 전문가들 생각
이 어떤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본질이란 말을 거기다 굳이 넣어야 되겠
는가, "교육에 의해되는"이걸로 다 죽하는
것인가, 양쪽이 좀 문제가 되는데....

○ 의장 김영세 : 교육에 의해된다 해도
포괄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포괄적으로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병해 위원 : 전문가가 말을 조금 다
듬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으로 해서...

○ 의장 김영세 : 교육이라고 하면 포괄
적으로 다 인정이 되니까요.

○ 김사수 위원 : "교육에 의해되는" 이
렇게 하면 오히려 그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 보다는 더 많은게 포괄적으로 들어잡니
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범상으로 봐서 더

타당하다 이렇게.....

○ 의장 김영세 : 포괄적으로 됐으니까
그렇게 양해 하시죠.

그러면 정식, 저 권혁풍위원이 박병해위
원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죠?

○ 권혁풍 위원 : 예.

○ 의장 김영세 : 예, 또 그럼 제 개의
안 없습니다.

그러면 개의안 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지금 권혁풍위원의 개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여덟 분 찬성하셨습니다.

또, 반대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반대위원 거수)

한 분? 예, 반대 1표입니다.

그러면은 표결 결과 권혁풍위원의 개의안
이 8대 1로 해서 수정 통과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마침 점심시간도 되고 그래서 다음 안건
은 점심 식사 후에 속개를 하고, 14시 30분
에 속개하기로 하고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46분)

(14시 00분)

5.충정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김영세 :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3호의안인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옴)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이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별첨된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함)

그 뒤에 장을 넘기시면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련되어 있는 서류를 참고로 첨부해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관계관의 설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3호의안에 대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은 거수로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에, 권혁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 제가 하나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충청북도학생회관에 이 도서관이 흡수되는 것이 아닙니까 ?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네.

○ 권혁풍 위원 : 그렇다면 학생회관에 도서관이 있고, 또 도서관장이 또 따로 있는데, 도서관과 도서관 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건가 ?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래서 아까 그것을 학생회관설치조례에 대한 제정 협의 때 그 자료를 드렸으면 참고가 되었을텐데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지금 나누어 드린 그 서류를 참고해 주시려는 학생회관설치에 대한 여러가지 계획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려는 이해하시기가 쉬우리라 생각이 되고, 학생회관 안에 도서관이 설치되기 때문에 학생도서관 관장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관장 명칭은.

학생회관장으로 이렇게 바뀌어 지는 거죠.

(관리국장 집행기관 석에서)

○ 관리국장 김근학 : 학생도서관은 폐지가 되고 도서관이 신설되어.....

○ 권혁풍 위원 : 도서관장이 관장이 되는 거군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신설이 되는

거죠, 과장으로서는.

○ 권혁풍 위원 : 과장으로.....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예, 새로 부서가 생기는 겁니다.

○ 권혁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답변 됐습니까?

○ 권혁풍 위원 : 예.

○ 의장 김영세 :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제 본 안건을 찬반토론에 부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본원안에 이의가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다 찬성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의장 김영세 : 예, 그러면 제3호의안인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제가 죄송한 말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일전에 학생회관설치조례중 거기에 대한 사용료 비교표라고 해서 사용료에 대한 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나누어 드린 책자가 있습니다.

충청북도학생회관 설치계획 협의자료라고 하는 끝머리 부터 3페이지, 세제 쪽을 보시면 학생회관 사용료 비교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북·광주·제주, 거기에 각 시·도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것을 수집·조사를 해서 저희들 도에서는 공공요금, 전기료만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사용료로 감액을 해서 책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별첨 충청북도학생회관 설치계획 협의자료 참조)

○ 의장 김영세 : 답변 다 되었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네.

(14시 15분)

6. 충청북도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제4호의안인 충청북도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옴)

○ 총무과장 이근수 : 총무과장 이근수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첨된 충청북도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함)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수고하셨습니다.

제4호의안에 대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은 거수로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

(위원장 잠시 침묵)

예, 그러면 질의 없는 것으로 해서 질의 답변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제 본 안건을 찬반토론에 부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반대의견 없으므로 전원 찬성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4호의안인 충청북도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3분)

7.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제5호의안인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에 나옴)

○ 관리국장 김근학 :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5호 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된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함)

이상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 수고하셨습니다.

제5호의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은 거수로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호의안에 대해서.....

(김사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말씀하세요.

김사수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사수 위원 : 가경중학교가 어디입니까 ?

여기 가경중학교라고 있는데.....

○ 관리국장 김근학 : 내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김사수 위원 : 아, 그럼 짓고 있어요?

○ 관리국장 김근학 : 예.

○ 김사수 위원 : 그럼 3월달에 신설교이군요.

○ 관리국장 김근학 : 예.

○ 김사수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

내년도 행정구역에 대한 변경사항 이니까 큰 내용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질의 없으시죠 ?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부치겠습니다 먼저 반대표론 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의견 없으시므로 찬성 의안이 되겠습니다.

전원일치 찬성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5호의안인 충청북도중학교학교

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전원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33분)

8.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제6호의안인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에 나옴)

○ 관리국장 김근학 :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제안설명된 내용은 별첨된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기재 생략)

○ 의장 김영세 :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교육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충북교육예산안은 예산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회부하게 되므로 기타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은 제2차 본회의 시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내용도 소위원회에서 질의 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죠 ?

<p>("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p> <p>(14시 45분)</p> <p>9. 감사·조사소위원 주가 선임의 건</p> <p>○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오늘 위원 선거를 하신 그 홍신회위원님을 감사·조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여러위원님과 같이 감사 활동을 하고자 제의합니다.</p> <p>예산소위원회는 법정 정족수에 달하여 있고 감사·조사소위원회는 구성 인원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홍신회위원을 감사·조사소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p> <p>("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p> <p>예, 이의 없으시죠?</p> <p>이의가 없음으로 홍신회위원이 감사·조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p>(의사봉 3타)</p> <p>홍신회위원님께서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이제 오늘 제1차 본회의가 끝나면 내일부터 9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감사·조사소위원회 및 예산소위원회가 활동하게 되</p>	<p>겠습니다.</p> <p>해당 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p> <p>산회에 앞서 제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권혁풍위원과 이근수위원, 두 분을 지명코자 합니다.</p> <p>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p> <p>("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p> <p>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권혁풍위원과 이근수위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p>(의사봉 3타)</p> <p>두 분 교육위원님께서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일 부터 11월 9일까지는 예산소위원회와 감사·조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는 휴회하겠습니다.</p> <p>이상으로 제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p> <p>(의사봉 3타)</p> <p>(14시 47분 산회)</p>
<p>○ 출석위원수 : 10명</p> <p>의장 김영세, 위원 이상일·이재희·홍신회·김응복·이근수·김사수·박병태·권혁풍·장충호(불참위원: 부의장 김광수)</p> <p>○ 출석공무원 : 17명</p> <p>교육감 유성중, 부교육감 정인영,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중등교육국</p>	

장 나세웅,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신택희,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찬, 총무과장 이근수,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중등교직과장 심태섭, 과학기술과장 전택식,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행정과장 엄갑도, 재무과장 고일영, 시설과장 박성근.

- 의사일정안 : 별첨 3.
- '92 교육시책 : 별첨 4.
-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 : 별첨 5.
-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 : 별첨 6.
-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계획협의자료 : 별첨 7.
-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8.
- 충청북도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9.
- 충청북도중학교학교근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10.
-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별첨 11.
-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 : 별첨 12.
-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개요 : 별첨 13.
-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과별·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 : 별첨 14.

※ 별책 부록.

-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안)
-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세항별 설명서
-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부표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

1991년 11월 11일 (월요일) 10시50분

의 사 일 정 (제4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1.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2.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
3. 1991년도 행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경과보고
2.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 보고
3. 1991년도 행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수정안 가결)

(10시 50분 개의)

○ 의장 김영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 51분)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이영규 : 보고 드리겠습니다.

니다.

제1차 본회의 결정에 따라 1991년도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도교육청·제천교육청·청주교육청에 대한 교육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예산 소위원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내용에서 변경된 부분이 없고, 예산 소위원회의 '92년도 교복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그리고 감사·조사 소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삭감사유로는 공무원로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상재해보상금은 공무원 연금법상 공무원상 재해부조금 지급, 장해보상금 지급 등의 제도가 있고, 재판에 의한 패소시 배상금으로 집행되는 사례도 있어, 재판전 화해 등에 의거 보상금의 지급이 요구 될 경우만 집행되는 예산으로서의 성질로 보거나, '91년도중의 집행액이 1억 5천만원인 것으로 보아 '92년도중의 집행 예상액으로서는 과다하게 책정 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92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기초과학 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가를 말씀드리면, 1992년도 총 세입액 3,399억 9천91만5천원중 92%인 3,118억 7,457만 1천원이 의존수입이고, 자체수입은 281억 1,634만4천원인 8%에 불과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판공비, 정보비, 보상금, 수용비 등의 소모성 경비에 대하여는 전년도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계상액 자체가 전년도 수준에 못미쳐 계상된 예산액을 인정하였고,

세출예산중 2,642억 2,513만원이 인건비로, 총 세출액의 78%를 차지하고 있었고, 학교운영비 434억 1,129만원과 교육환경개

선비 139억 7천3백5만원, 시설비 71억 4천 9백42만원 등의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는 교육사업비와 교육행정비는 2.3% 수준인 78억 1,958만원으로 적은 예산에 의한 효율적인 교육행정수행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원연수, 학생경시대회, 연구 및 시범학교 운영, 장학금 지급, 장학자료 개발 등의 경비 지원과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교육공무원포상, 명예퇴직, 교원해외연수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 지원,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컴퓨터 교육 지원비, 그리고 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실고 실험실습비, 실고 내부시설비의 지원, 그리고 종합생활관 건립비, 체육활동비, 학교급식비, 사립학교 보조 등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편성하여 건전 재정이 되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향후 세출예산의 집행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낭비요인의 사전제거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토록 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거론된 제 문제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1년 11월 8일 예산소위원회 위원장 김사수 외 4명 위원이고, 수정이유는, 기타사업비에 계상된 공부상 재해보상금 3억원은 예년의 집행실적 등에 비추어 과다하게 계상되었기 이중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92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기초 과학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학교 과학 실험실습 재료비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수정 주요골자는 기타사업비중 재해보상금 3억원을 2억원으로 하고, 예비비 3십4억 1천2백4십만4천원을 3십5억 1천2백4십만4천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 결과에 따른 소수의견 요지를 말씀드리면 시·도에 설치예정인 지방교육발전위원회 예산 8백9십4만8천원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교육자치 시대의 주역으로서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제도화된 입장에서 그 필요성이 의문시 되는 바, 계상액 전액을 삭감할 것을 김응복위원이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출년월일은 1991년 11월 8일이고, 제출

자는 예산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불요불급한 세출과목을 감액할 필요가 있어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였고,

주요골자는 기타 사업비 공부상 재해보상금 3억원중 1억원을 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동의안 내용은 별첨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구 대표회는 별첨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 짧은 일정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소위원회 심사결과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유인물로 배포해 드린 수정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한 답변은 소위원회에서 하여 주시고, 그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권혁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청사업 7항에 기타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교육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지역발전위원회라는 기구가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 이것은 본청에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또 있으세요?

다른 질의가 있으면서, 질의 다 하시고서 답변 하시도록 하고, 계속해서 권위원 질의가 있으시죠?

○ 권혁풍 위원 : 예.

○ 의장 김영세 : 예, 그러면 일본 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발언대에 나옴)

○ 부교육감 정인영 : 부교육감 정인영입니다.

지방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나 설치목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자문위원회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설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게 될 것 같으려는 여러위원님들께 조례 설치불 또 제안을 해야 될, 이와 같은 수속 절차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목적은 지방교육자치시대에 발맞추어서 지역중심의 특색있는 교육활동, 예를 들어보려는 생활지도라든지, 어떠한 교육제도의 개선이라든지, 교육환경의 개선 또는 학교의 통·폐합,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업무는 교육감의 책임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도움을 받기위한 자문을 응하고자 이와 같은 설치를 하는 결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지침은 11월중에 교육부에서 보내 준다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교육부에서 보내온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894만8천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만약에 지방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면은 도단위에 수급기관이라든지, 이와 같은데에 교육발전을 위해서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며는, 부지사라던지 또 생활지도와 관계되는 검사장이라던지, 또는 경찰청장이라던지 또는 여러가지 학교부지 마련을 위한 청주시장이라던지, 충주시장 또는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던지, 현재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것이 그와 같은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할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자문위원은 7명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특정한 사항이 있을 때 교육감이 소집하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권혁풍 위원 : 다시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직 거기에 대한 조례도 제정이 안되어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 부교육감 정인영 : 그렇습니다.

○ 권혁풍 위원 : 조례도 제정이 안되어 있고, 또 그 기능으로 보아서 어디까지나 교육위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의 일이라고 보겠는데, 이렇게 되면 교육위원회에 또다른 교육위원회, 즉 어떤 옥상에다가 또다시 집을 짓는 옥상가옥의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납니다.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정인영 : 본인도 권위원님께

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해석하기는 여러위원님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 외에 별도로 행정적인 지원을 바라는, 필요로 하는 그와 같은 분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가령, 학생생활지도 문제 이것은 검찰청이나 경찰청하고도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되어야만 되겠고, 또 학교부지를 마련 한다던지, 또는 어떠한 행정부서로 부터 예산상의 전입금을 얻는다던지 이와 같은 데에는 부지사라던지, 또는 시장이라던지, 이와 같은 분들의 협조도 얻어야만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와 같은 사업계획에 자문을 구하는 것, 이것이 또한 필요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권혁풍 위원 : 그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이라던가, 목적에 부합되는 사례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직 조례로서 구체화 되는 단계가 되어야 겠죠.

○ 부교육감 정인영 : 예, 그렇습니다.

○ 권혁풍 위원 :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권혁풍위원 답변 됐습니까?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 잠시 침묵)

그러면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안 처리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말씀하세요.

○ 권혁풍 위원 : 방금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한 배경설명을 말씀드리고 재수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지방교육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언뜻 보기에 필요한 것도 같습니다.

지역에 여러가지 행정으로 보아서 검사·도지사·경찰·시장 그러한 행정기구를 만들어서 보다 원활하게 교육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한다는 데는 남북이 그런대로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교육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조래화 되어서 구체화 되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본 기구는 법적근거가 아직도 마련되지 않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8백9십여만원이라는 돈을 계상할 필요성을, 필요성이라기 보다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다, 법적 근거가 없이 어떻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이것에 대한 재수정 동의를 제의합니다.

즉,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51조

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안의 재심의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 그러면 지금 소위원회에서 수정 동의안이 제안되어 있고, 또 권혁풍위원께서 재수정안이 동의 되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통과한 재수정안은 위원 1/3의 찬성이 있어야 재수정안이 성립됩니다.

그러면 재수정안 부터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혁풍위원이 발의한 재수정안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위원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식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위원 거수)

예, 다섯분이 찬성하시기 때문에 재수정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잠시 침묵)

이의 없으시면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재심의 절차를 밝아, 오후 회의에서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재심의를 소위원회에서 역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3.1991년도 행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1991년도 행정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조사소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결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혁봉 사회대로 나옴)

○ 권혁봉 위원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지방교육 자치를 실시하고 처음으로 개최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정기회에서 집행기관인 충청북도교육청 등에 대한 교육위원회에 교육행정 감사를 실시하고, 그 감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감회가 새로움을 느낍니다.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충청북도교육청과 제천·청주교육청을 감사하면서, 충북교육행정에 대하여 배우고 느끼며, 교육위원 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활동을 하시느라 우리 감사·조사소위원회 위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 하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면 그간의 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하고자 합니다.

세부 보고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별첨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참조)

감사결과 보고서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처리의견은 그동안의 감사 결과를 권장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집행기관인 충청북도교육청에 서면으로 보내어, 그 처리 결과를 보고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권장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천교육청의 『인간교육 프로그램』, 청주교육청의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와 충청북도교육청의 『바르고 글센 어린이』 등의 책자가 전 도에 보급되어 활용 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또한, 청주교육청의 『상설특별반 운영』 등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확산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재 및 지진아가 아닌 "중위권 학생"에 대한 학력제고·기술지도·소질개발 신장 등을 위한 예산확보 및 구체적 지도방

안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두번째, 행정재산 외의 각종 교육재산, 특히 임야에 대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세번째, 바른 학력관, 자기 학습력 신장을 위한 모범수업 및 연구수업의 구체적 내실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네번째, 학생 자치 활동 및 특별활동이 보다 알차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교사에 대한 구체적 특기지도 능력배양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 학교 신축에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교실 신·증축 공사명과 준공예정일자 현황을 회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교원 호봉 산정시 농업에 종사한 경력을 '농지소유증명'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관계기관과 협의되어야겠습니다.

일곱번째, 학생 교외생활지도를 위하여 지도인원을 증원하고, 학부모 조직을 활용하거나, 일정시간 이후 우범지역 배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내실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학교공사 감독에 있어서 일선 교장 등 관계자가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 요령을 교육토록 하고, 설계도·시방서 등의 관계 도면이

공사 현장에 비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사립학교 자체 재정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입금 확보, 기본재산의 수익성 증대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학생 배정 조정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번째, 미등기 재산에 대한 조속한 등기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의 수립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주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장을 전분직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정원 확보에 노력하여야겠고, 사립학교 연금 및 의료보험금 부담액에 대한 조속한 지원이 요망되며, 아울러 공·사립 학교간 교사 현원의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국가의 장래가 발전 지향적인 국민정신의 결집 여하에 달려 있음을 감안, 교직원 및 학부모 정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성 있는 연수교육 확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바, 특히 실천 및 행동에 역점을 들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겠습니다.

세번째, 학교안전 공제회 운영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일선 교직원의 의구심 해소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번째, 증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로 학교수업 결손의 해소와 다양한 학교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섯번째, 전교조 관련교사의 임지 변경 시에는 단양등 농촌 오지지역에의 배치가 지양되어야 겠고, 일선 교사들의 건의나 애로사항에 대한 적극적 수용태세와 해결책 제시를 위한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섯번째, 보충수업 폐지에 따른 제 문제점의 보완과 지속적 개선이 필요함은 물론, 학생 생활지도에 따른 소요경비의 현실화 및 증액이 요망됩니다.

일곱번째, 사설학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내실있는 사회교육 기관으로 육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공사의 조기 발주 및 완공을 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아홉번째,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에 있어서는 직급별 지급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요망되고, 특히 장학사가 6급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번째, 예·체능 전담 지도 등을 위한 파견교사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의 강구가 필요하고, 학교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가 적기 송금으로 학교 경영에 애로가 없도록 노력이 요망됩니다.

아울러, 잠재적으로 활동중인 전교조성향 또는 의식화 교사 등은 유능한 관리자와 동일 학교에 근무하도록 하여 능동적 근무자

세를 갖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교사들의 긍정적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등 교직원 융화, 단결책이 모색되어야 하며, 특정지역 특히 음성·단양 등에 이들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충청북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 의정 김영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열분 위원님 모두가 짧은 일정동안에도 수고 많으셨음을 압니다.

다소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충북교육 발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보고서는 위원여러분 모두가 소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의결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행정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11시 40분)

○ 의장 김영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소위원회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권혁
풍위원의 재심요구의 의안이 제안되어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성립된 재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예산소위
원회에 재심할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예산소위원회에 재심청구
할 것을 찬성하시는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전원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전원일치로 예산소위원회 재심할 것
을 결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소위원회에서 재심하는 시간을 위해
서 1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12시 05분)

○ 의장 김영세 :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재심안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일 사회대로 나눔)

○ 이상일 위원 : 본회 의결에 따라 재
심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심사를 요구한 배경과 같이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규정한 조례제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경비만 계상한 것은 분
계가 있으므로 여건이 성숙되면 추경에 반
영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사항은 기치 보고드린 보고
서 내용과 동일하고, 다만 본청의 기타사업
비에 계상된 지방교육발전위원회 예산 8백
9십4만8천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
상키로 수정하였습니다.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공무원 재해보상금
1억원과, 지방교육발전위원회 예산 8백9십4
만8천원, 계 1억8백9십4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고, 이에 수정안을 제
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 본 안에 대하여 재수
정안이 제안되었으므로 재수정동의안과 원
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먼저, 재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
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장의 9명 거수)

그러면 표결결과 재수정안에 찬성하신 분
이 10분 위원이 찬성하셨습니다.

따라서,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소위원회 계수정 동의안과 같이 세입·세출 각 3,399억 9,091만5천원으로 계수정 통과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교육위원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열린 정기회 회기동안 여러위원님, 그리고 유성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회기를 잘 마치게 된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기회기중에 다루어진 내용중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예의 검토하시어 '92년도 교육시책을 추진함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도의회에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되도록 설명하여 수정없이 통과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한편, 주도면밀

한 계획아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위원 모두도 이번 회기 동안 배우고 느낀 점을 토대삼아 충북교육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정기회 본회를 폐회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폐회)

○ 출석위원수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이재희·홍신희·김응복·이근수·김사수·박병해·권혁풍·장충호.

○ 출석공무원 : 17명

부교육감 정인영,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신택희,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찬, 행정관리담당관 정현동, 총무과장 이근수,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교직과장 김제성,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중등교직과장 심택섭, 과학기술과장 진택식,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행정과장 엄갑도, 재무과장 고일영, 시설과장 박성근.

○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 별첨 15.

○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별첨 16.

제 1 차 예 산 소 위 원 회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

1991년 10월 24일(목요일) 11시11분

의 사 일 정

1. 경과보고
2.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경과보고
2. 위원장(김사수), 간사(이상일) 선임

(11시11분 개의)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이영규 : 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차 본회의에서 '92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한 사회는 최연장 교육위원이신 김사수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북도교육위원회 제1차 예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는 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각 1인씩 두되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 예, 좋습니다.

○ 이재희 위원 : 위원장과 간사는 9월 26일 임시회의시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당시 위원장과

(11시13분)

2. 위원장, 간사 선임

○ 임시위원장 김사수 : 지금부터 충청

간사 직무를 맡아 수고해 주신 김사수위원
과 이상일위원 두분이 그대로 위원장과 간
사직을 맡아서 수고해 주실 것을 바라므로
이 두분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김사수 : 그러면 위원장
에는 저를, 그리고 간사에는 이상일위원
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김사수위

원이 간사에는 이상일위원이 만장일치로 선
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막중한 책무를 두번씩이나 맡겨주셨는데
소임을 다할지 염려가 됩니다만, 여러위원
님들과 협조하여 '92년도 예산안 심사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1차 예산소위원회를 산회합니
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위원수 : 5명

위원장 김사수, 간사 이상일, 위원 김응복·이근수·이재희.

제 2 차 예 산 소 위 원 회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

1991년 11월 7일(목요일) 10시33분

의 사 일 정

1. 제안설명
2. 질의답변

부 의 된 안 건

1. 제안설명(행정과장 엄갑도)
2. 질의·답변(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김사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소위원회의 일정은 우선 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국·과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내일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심의에 임해 주시되, 특히 일선 교단지원과 학생들의 학습에 뒷 받침 하는데 예산이 투자되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산심사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법정 기준경비 준수.

2. 소모적경비 가급적 억제.
3. 각종 일반사업비, 특별판공비 등 작년도 수준 편성.
4. 학교교육의 내실을 위한 학교운영비 상향 지원.

그럼 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10분 35분)

1. 제안설명

○ 행정과장 엄갑도 : 제안설명(유인물에 의거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개요 및 과별·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설명)

(11시 24분)

2. 질의·답변

○ 위원장 김사수 :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응복 위원 : 기타사업비가 작년도에 비하여 79.3% 증액된 주요 요인은 ?

○ 행정과장 엄갑도 : 명예퇴직수당이 '92년도에는 중등까지 확대되어 4억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공무상 재해보상금이 3억정도 증액 계상되었는데, 위의 두가지 사업은 '91년도까지는 시·군에 계상되었던 것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시행 후 본청 예산에 총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 이재희 위원 : 시·군 행정자문위원회의 운영비, 차량비, 체력단련비 등이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바, 그 원인이 무엇인가 교육청으로 하달된 예산편성 지침서가 있다면 그 지침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 행정과장 엄갑도 : 이미 배포해 드린 내용중 부표가 지침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사수 : 10분간 정회후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3분)

(11시 45분)

○ 위원장 김사수 : 속개합니다.

세입에 의존사항 질의요망.

○ 이재희 위원 : 6개 농교의 실습수입은 감액되었는데, 매년 물가등은 상승하는데

수입이 증가되지 않는 못하고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된 주원인은 무엇인가 ?

○ 행정과장 엄갑도 : 이는 100% 그 해당 학교로 환원되는 경비로 당초 예산 편성시 학교에서 제출하는 추정내용 대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인데 학교에서 추정시 실지보다 약간 적게 잡고 있기 때문임.

○ 이재희 위원 : 그렇다면 당초에 그 수입액 계산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에 배포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 행정과장 엄갑도 : 요즘 농업이 사양 산업화 되고 있고, 특히 충주농교의 가두리 양식장 문제는 콜레라의 확산으로 판로가 어려워 그 수입을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바, 어떤 기준을 정하여 주기는 곤란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추정토록 하고 있으며, 추후 수입이 증가되면 추경에 반영하고 있음.

○ 위원장 김사수 : 수업료의 인상료가 7%인데,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

○ 행정과장 엄갑도 : 인문고 1급지가 39,500원, 1급지 나 28,900원, 2급지가 27,900원, 2급지 나 24,900원, 본도에 3급지는 없으며, 사립은 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 위원장 김사수 : 예, 됐습니다.

다음에 포토 만들어 주시고, 수업료 납부 실적은 어떤가요 ?

○ 행정과장 엄갑도 : 예산에 계상시, 일반계는 95%, 실업계는 85% 수준으로 계상하며, 결손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 위원장 김사수 : 재산수입증 진천농고 농장매각은 들어 갔는가요.

○ 행정과장 엄갑도 : 계상되지 않았음.

○ 간사 이상일 : 충주 삼원국교 매각대금은 ?

○ 행정과장 엄갑도 : 매각이 확실시된 후 예산에 계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 갔습니다.

○ 이근수 위원 : 재산매각시 매각대금은 전액 시·군에 환원됩니까? 특히 주민들이 기부한 재산중 학교의 돼교 등으로 재산매각시 이 매각 대금의 사용은 ?

○ 행정과장 엄갑도 : 전액 해당 시·군에 환원되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일부 조정이 됩니다.

또한 기부된 재산은 기부된 지역 학교에 사용되도록 전액 환원됩니다.

○ 간사 이상일 : 기부금은 대개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

○ 행정과장 엄갑도 : 문의국 급식소 시설은 학부형이 2천 만원을 기부하여 여기에 부족액을 자체예산으로 보조하여 시설하였고,

충주농고에는 동창회에서 강당을 지어 달라고 일부 기부한 것 등이 있는데, 이런

경우 확보된 예산은 없고하여 곤란이 많습니다.

○ 김응복 위원 : 사학에 보조금이 많은데 전입금의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엄갑도 : 과거에는 국가에서 학교를 설립할 여력이 부족하여 사학설립을 권장하다보니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기준 수량만 확보되면 인정하여 설립허가 해준 것이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이 적어 학교법인 부담금 실적이 저조한 것이며,

지금은 학교병준화 시책으로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배정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 해줄 수 밖에 없으며 특히 교육환경개선은 공립수준으로 개선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지원이 불가피함.

○ 간사 이상일 : 요즘 설립하는 사학은 어떻습니까 ?

○ 행정과장 엄갑도 : 현재의 규정도 기준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보조가 예상 됩니다.

현재 충현고등학교만 보조치 않고 있으나 '92년도 부터는 보조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함.

○ 위원장 김사수 : 더 질의사항 없으시

면 세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2시 00분)

(12시 11분)

○ 위원장 김사수 : 속개선언,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각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
습니다.

(공보담당관실)

○ 김응복 위원 : 기관운영판공비의
기준은 ?

○ 행정과장 엄갑도 : 과장은 월 50,000
원이고 직원들은 연 25,000원입니다.

○ 간사 이상일 : 교육홍보 광고는 어떤
내용인가 ?

○ 공보담당관 선택희 : 국경일 등에
신문사에 광고를 내 주는 것입니다.

○ 이재희 위원 : 전면 광고는 얼마인가?

○ 공보담당관 선택희 : 단가가1,100,000
원이며, 예산내용에는 지방지 광고료, 연감
대금, 월간지 등이 포함된 내용임.

○ 이재희 위원 : 광고비를 적게 책정할
용의는 ?

○ 공보담당관 선택희 : 예전부터 관행
으로 되어 있는것이라서 곤란하며, 일반회
계에 비하여는 매우 적은 것임.

○ 위원장 김사수 : 교육월보는 1,940
부인데 어디에 보내는 것인가 ?

○ 공보담당관 선택희 : 본청 5급 이상

1부, 장학사 이상 1부씩, 교육청 6급 이상
1부씩, 그리고 각급학교에 학급수에 따라
적의 배포하고 있음(10학급 미만 2부, 10-
20학급 3부, 30-40학급 4부, 50학급 이상
5부씩) 이책은 편집자가 교육부 관계자이며
부당가격이 640원으로 저렴한 것이며, 내용
이 상당히 좋은편입니다.

○ 김응복 위원 : 간혹 일선에 보면
교육월보를 안 읽고 사장시키는 경우가
많던데, 배포 부수를 줄일 용의는 ?

○ 행정과장 엄갑도 : 내용이 가격에
비하여 매우 충실하며, 우리 교육관계자에
게 매우 유익한 책이기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됨.

○ 간사 이상일 : 교육홍보용품 구입중
응집세트 구입은 ?

○ 공보담당관 선택희 : 기자실 응집세
트 구입임.

○ 간사 이상일 : 교육홍보 활동비중 교
육홍보비의 기자간담회 항목이 너무 많은데
그 구체적 내용은 ?

○ 공보담당관 선택희 : 교육활동비는
정보비이고, 교육홍보비는 특별판공비 입니
다.

그리고 언론기관간담회는 교육감이 주관
하는 기자와의 간담회 이고, 현안문제 관련
기자 간담회는 중앙기자와의 간담회이며,
출입기자 월례간담회는 매월 1회 출입기자

와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임.

○ 위원장 김사수 : 교육활동비중 정보비는 무엇에 사용합니까 ?

○ 공보담당관 신태희 : 출입기자에 대한 증식 접대비입니다.

○ 간사 이상일 : 언론기관 간담회 항목이 너무 많은데 도의회에서 심사시 문제가 되지 않게 납득이 가도록 연구해 보시지요. 사실 내용은 어떠한 예산은 너무 적습니
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

○ 이재희 위원 : 일용잡급은 일손이 부족하여 쓰는 것인가,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로 부족한가 ?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찬 : 예,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교육행정자료 교육통계연보 등은 주산 3·4단 자격증 기능자 2-3명이 1달 이상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용잡급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김사수 : 교육시책 추진비는 어떤내용 인가요 ?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찬 : 교육계획 수립이며, 대통령에 보고사항, 교육위원회 또는 도의회 업무보고 자료로 수정이 9-10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작성하는 인쇄비입니다.

○ 위원장 김사수 : 교육시책 추진지역 간담회는 어떻게 하는가 ?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찬 : 교육감님이 지역에 나가서 간담회를 하는 것임.

○ 위원장 김사수 : 감사활동 여비와 감사활동비는 어떻게 불린가 ?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찬 : 감사담당 공무원이 임명되면 월 30,000원의 정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감사활동비이며, 감사활동여비는 감사출장시 실비보상 여비임.

○ 이재희 위원 : 감사여비가 감사시 적지 않은가요 ?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찬 : 적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쓰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유지가 됩니다.

○ 이재희 위원 : 상당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실비가 너무 적은데 가능하다면 넉넉하게 계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찬 : 고맙습니다. 참고로 이번 교육부 감사시 교육부 감사관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식비와 간식비까지 감사관들이 지급하고 갔음.

예전과는 많이 불려 졌습니다.

○ 김응복 위원 : 교육계획 보고회 여비의 산출기초는 ?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찬 : 4명이 11개

교육청에 출장가는 여비임.

- 간사 이상일 : 위원 출석 보상공은?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찬 : 지역교육발전위원회 위원 출석보상공으로 이는 교육감 자문기관이며 아직 구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없으나 예산은 교육부 지침에 의거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사수 : 지역교육발전위원회는 어디 어느 규정으로 되었나?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찬 : 아직 규정은 없으며, 예산현성 지침에 의거 예산만 계상하였음.
- 행정과장 엄갑도 : 시·군은 교육감 자문기구로 행정자문위원회를 두고, 교육감 자문기관으로 지역교육발전위원회를 두도록 예산회의시 지시된 내용임.
- 간사 이상일 : 지역교육발전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들이 자료요구 및 학교시찰 등을 할 텐데, 이는 구성이 안되면 좋겠음.
- 예산계장 김홍목 : 교육부 시책으로 전국적인 내용이라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사수 : 교육위원회도 있고 한데 자꾸 이런기구만 생기는데 기구조직의 필요성이 꼭 있는건가?
또, 조직도 없고 예산만 계상할 필요가 있는가?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찬 : 성격상 교육위원회는 자문기구가 아닙니다.

○ 간사 이상일 : 지방자치 실시 이후 기존있던 기구중 도는 도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였는데 우리는 없던 기구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는가.

고려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사수 : 기획감사실에 대한 추가질의사항 없으면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음.

(행정관리담당관실)

○ 행정관리담당관 정현동 :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예산내용 설명

(세항 설명서에 의거 설명)

○ 이재희 위원 : 기관운영판공비 25,000원은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경비인가?

○ 행정관리담당관 정현동 : 과의 공동경비로 사용합니다.

○ 위원장 김사수 : 충북교북 통계연보 부당 단가는?

○ 행정관리담당관 정현동 : 5,000원입니다.

○ 위원장 김사수 : 행정소송업무 추진비는?

○ 행정관리담당관 정현동 : 행정소송이 현재 4건이 소송 계류중이며, 이에 대한 필요경비임.

○ 간사 이상일 : 손해배상공은 안전공제회비와 관련은 없는가?

○ 행정관리담당관 정현동 : 안전공제회

보상시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므로 왜소시 손해배상금이 필요함.

○ 위원장 김사수 : 행정소송 변호사비 등 업무추진 내역과 그 판결시기는 ?

○ 행정관리담당관 정현동 : 보은 이석국 기능직 사망에 따른 민사소송과 관련, 소송 청구액의 30%를 계상하였고, 판결시기는 금년말 또는 '92년도로 예상됨.

○ 간사 이상일 : 삼원국교 건은 변호사비를 계상 안해도 되는가요 ?

○ 행정관리담당관 정현동 : 저의과 소관이 아니라서요.

○ 위원장 김사수 : 행정소송비는 예측 경비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정현동 : 예.

(총무과)

○ 간사 이상일 : 회계장부 구입비가 13,790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몇 권인데 이렇게 많은가 ?

○ 행정과장 엄갑도 : 각과 것을 일괄 구입 하는 것이며, 기타 도서구입비, 타자기 수정리본구입비, 화물운송료, 마스타지, 신문용지, 복사기 토너구입비, 침구세탁, 방석카바세탁비 등이 묶여서 표현된 것입니다.

○ 총무과장 이근수 : 정원 관리 용품 구입건 등도 여러 항목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 위원장 김사수 : 설명이 되도록 다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간사 이상일 : 교육시책추진 활동비와 교육시책 추진 간담회비는 어떻게 불린가?

○ 총무과장 이근수 : 교육시책추진 활동비는 교육감 정액정보비이며, 교육시책추진 간담회비는 특별판공비 성격입니다.

○ 위원장 김사수 : 표현을 달리 할 수 없는가 ?

○ 행정과장 엄갑도 : 각 사업 내용을 사실적으로 방라한 것입니다.

○ 총무과장 이근수 : 참고로 교원 학생 간담회비는 교육감이 벽지학교 방문시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 김응복 위원 : 25페이지의 경우 내용 중 유사한 것은 묶는 것이 어떤가요.

○ 간사 이상일 : 교원 학생과의 대화 간담회로 묶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요.

○ 행정과장 엄갑도 : 그러면 설명이 충분하고, 또 묶을 경우 그 사업에 금액이 너무 많은 바, 조금 조정하여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사수 : 교육시책 추진 활동비를 교육시책 추진 정보비로 하면 어떤가요.

○ 간사 이상일 : 행사격려비와 기타 협의회비는 묶어서 행사격려비로 표현하면

중겠음.

○ 위원장 김사수 : 건물유지비는 예산 편성 단가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 예산계장 김홍묵 : 예.

○ 위원장 김사수 : 강당 보수경비중 꼭 필요치 않은 부분은 없는가?

○ 총무과장 이근수 : 여기에는 본관 청사수리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최소한의 경비임.

○ 위원장 김사수 : 행정관리담당관실의 홍보 활동비와 총무과의 홍보 활동비는 어떻게 틀린가, 한 곳으로 묶으면 안 됩니까?

○ 총무과장 이근수 : 홍보 활동비로 과가 틀려, 각각 계상해야 합니다.

○ 간사 이상일 : '91년도 공무상 재해 보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 행정과장 엄갑도 : 시·군 예산으로 편성 되었었는데 통합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3억정도 편성했으며, '91년도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사수 : 본청에 계상된 교육감 특별판공비는 총 얼마나 되는가?

별도 자료로 해 주시지요.

○ 행정과장 엄갑도 : 내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 이재희 위원 : 문우회·삼락회 지원금은 같은 항목일 것 같은데, 왜 따로 세웠

는가요?

집행하는 과가 틀려서 인가요?

○ 총무과장 이근수 : 예.

○ 이재희 위원 : 조금 쉬었다 합니다.

○ 위원장 김사수 : 예,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5시 06분)

(15시 21분)

(초등장학과)

○ 위원장 김사수 : 속개합니다.

○ 이재희 위원 : 장학지도 여비 외에 사업별 여비가 있는데 이는 중복 계상이 아닌가?

○ 행정과장 엄갑도 : 사업추진 부서는 사업에 필요한 실비보상여비를 계상합니다.

○ 김응복 위원 : 초등장학과 예산이 금년대비 53,987천원 감액된 이유는?

○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 기자재도입을 위한 사업비가 감소되었고, 편성 장학관 및 장학사 기관운영판공비 일괄 계상분을 각과 별 구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 이재희 위원 : 해외시찰연수 여비는 어느 지역에 연수가는 것인가?

○ 예산계장 김홍묵 : 이는 일반직 모범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남아로 연수하는 것임

○ 위원장 김사수 : 연수여비는 실비를 주는가?

그리고 일반직·교원은 동일 수준인가?

○ 예산계장 김흥묵 : 전국이 같은 형편으로 '91년도에는 교원이 1일 10,000원 이었는데 '92년도에 15,000원으로 인상되어 일반직과 동일하며, 자격 연수시도 동일하나 자격연수시 대상자가 계획보다 많은 경우 1인당 금액은 적어짐.

○ 간사 이상일 : 국교교사 선발 문제지는 직접 출제하는가 ?

○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 예.

○ 김응복 위원 : 해외연수에 많은 교직원 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과 국고지원 실태는 ?

○ 예산계장 김흥묵 :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고 해외연수 후의 근무자세가 발전적으로 변화되는 등, 애국심·사명감 등의 고취에 긍정적이고 교원해외연수의 경우 국고 50%, 지방비 50%로 충당하고 있음.

○ 김응복 위원 :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선발 수당은 ?

○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 교감으로서의 품성이 적합한가를 가려내는 면접심사위원 수당임.

○ 김응복 위원 : 명예퇴직자 확정여부

○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 예정자이나 거의 확정적이며, 신청자를 다 못해 주는 실정임.

○ 간사 이상일 : 명예퇴직수당은 금액

이 같은가 ?

○ 예산계장 김흥묵 : 대상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남은 퇴직연수에 따라 불림.

○ 위원장 김사수 : OECF 교육차관 기자재 도입내역 및 도입국은 ?

○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 일본해외협력기금으로 특수학교 교육기자재 구입에 따른 경비이며, 교육부에 요청 공동구입 인수하는 것임.

○ 위원장 김사수 : 초등장학과 소관 행사중 불필요한 것은 없는지, 또는 각종 응변대회(통일안보·교육감기 등)를 통합할 수 없는지.

○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 현재로서는 꼭 필요한 행사만 하고 있고, 응변대회는 그 성격과 시기가 달라 통합이 어려움.

○ 김응복 위원 : 교육방송 관계자는 누구인가

○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 교육방송시범학교 교감, 담당교사와 각 시·도별 교육방송연구회 회원임.

○ 위원장 김사수 : 국교에서 실시하는 다국어 구화대회의 효과는

○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 영어·일어·중국어 등을 내용으로 하며, 상당히 성과가 큼.

내년도에는 교육위원님들을 초청하여

보여드릴 예정임.

○ 간사 이상일 : 유아교육자료개발 보급내용은

○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 기본생활습관 지도내용 등, 유치원 운용자료, 현장 연수 자료 등 공동제작 경비임.

(초등교직과)

○ 위원장 김사수 : 국외연수 1인당 금액과 여행지는

○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 주로 동남아이며, 1인당 백만원 정도임.

○ 이재희 위원 : 인솔은 어떻게?

○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 교육부에서 30명씩 조편성하여 인솔하며, 교육부에서 여행사에 의뢰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김응복 위원 : 단재교육상 시상금 내역은

○ 행정과장 엄갑도 : 사도상·학문상·공로상은 1인당 백만원씩 지급되고 학생은 면학·충효 봉사상에 대하여 1인당 30만원씩 지급함.

○ 김응복 위원 : 심사위원은 어떤분들로 구성 되는가

○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 각계 각층의 여러분들에게 위촉하고 있음.

(중등장학과)

○ 위원장 김사수 : 고교 입시관리 경비를 시험검정비, 일반계 고교, 입시관리비,

실업계 고교 입시관리비 등으로 나누어 계상한 이유?

○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 학교에서는 원서접수와 시험을 관리하고, 채점 및 학교 배정은 도교육청에서 담당하므로 도교육청서 집행하는 것과, 각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구분됨.

○ 간사 이상일 : 장학지도 여비가 과별 1인당 금액이 틀린 이유는?

○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 과별 인원수가 틀리고, 또 장학사·일반직의 여비 단가가 틀리기 때문임.

○ 이재희 위원 : 고교입시 관리 문제 편집 수당은 3명의 수당이 3,450,000원인가

○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 그것은 미스프린터임.

15,000원×29명×8일임.

○ 위원장 김사수 : 채점수당과 관리수당은 어떻게 틀린가.

○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 채점수당은 채점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고, 관리수당은 이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임.

○ 이재희 위원 : 광산공고 합주반 운영 지원 예산 내역은

○ 예산계장 김흥묵 : 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악기교체 보수등의 경비임.

- 간사 이상일 : 국립묘지 참배 대상은
- 중등장학과정 윤혁중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대전 국립 묘지를 참배함.

(중등교직과)

- 위원장 김사수 : 국외연수는 총 몇 명인가
- 중등교직과장 심태섭 : 교육부에서 지정함.
- 이재희 위원 : 선발기준은 있는가? 이에 대한 일선교사들의 불평은?
- 중등교직과장 심태섭 : 기준에 의거 선발하지만, 더러 불평하고 있는 교사도 있으나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음.
- 이재희 위원 : 증치교사를 해외연수 시 우선 선발 한다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 중등교직과장 심태섭 : 증등은 증치 교사가 없고, 초등에만 있음.
- 간사 이상일 : 문제 출제 인쇄 부담금은?
- 중등교직과장 심태섭 : 3개 시도가 공동경비 부담하는 것임.
- 이상일 위원 : 교원연수 전체 인원은 몇 명인가 자료 요구.

(사회교육체육과)

- 위원장 김사수 : 보상금 2,500,000원은 어디에 주는 것인가?
-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 청소년

5개 단체 행사지원 및 격려금임.

- 간사 이상일 : 그러면 사회단체지원 5개 기관은 어떤 단체이며, 얼마씩 지원하는가?
-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 청소년연맹,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적십자사 해양소년단 등 5개기관에 100만원씩 5백만원을 지원함.
- 위원장 김사수 : 종사원 급식비, 지도교사 연수강사 수당은?
-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 야영시 강사 급식비와 강사 수당임.
- 김응복 위원 : 직원체육대회는 어떤 직원인가?
- 행정과장 엄갑도 : 도 교육청 본청 직원 체육대회임.
- 간사 이상일 : 독학학위 취득 경비의 재원은?
-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 전액 국고 보조금임.
- 위원장 김사수 : 소년체육대회는 내년부터 부활되는가?
-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 부활됨.
- 간사 이상일 : 체육부 보조는 없는가?
-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 일부 됨.
- 위원장 김사수 : 선수훈련비 지원은?
-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 소년체전은 개인종목 1일 6,000원씩 10일분이고,

단체종목은 1일 5,000원씩 7일분이며, 전국 체전은 20일간 개인종목 7천원, 단체경기 6천원씩 지원 해주고 있음.

○ 김응복 위원 : 훈련경비가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 각종 찬조금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음.

○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 부족하기 때문에 방학때와 훈련전 몇일 합숙훈련 하고 있는 실정임.

○ 이재희 위원 : 선수 스카웃 열풍은 없는가?

○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 있으나 도내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함.

○ 위원장 김사수 : 전국체전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되는데, 부족하지 않나.

○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1천만원을 보태었음.

○ 위원장 김사수 : 퇴근시간이 거의 되었음.

내일 더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들의 의견은 ?

(위원일동: 이의 없음)

○ 위원장 김사수 : 그럼 이만 제2차 예산소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6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 수 : 5명

위원장 김사수, 간사 이상일, 위원 이재희·김응복·이근수

○ 출석공무원 수 : 10명

공보담당관 신태희,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찬, 행정관리담당관 정현동, 총무과장 이근수,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중등교직과장 심태섭,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행정과장 엄감도.

- 별첨 : 1.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제안 설명.
2.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개요.
3.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과별·사업별 예산편성현황.

- 별책부록 : 1.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안).
2.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세항별 설명서.
3.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부표.

제 3 차 예산소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당당관실

1991년 11월 8일(금요일) 10시12분

의사일정

1. 질의답변(계속)

부의된 안건

1. 질의답변(계속)
2.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동의안 결의

(10시 12분 개의)

소관은 과별·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11페이지입니다.

1. 질의·답변(계속)

○ 위원장 김사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 소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1992년도 충북교육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어제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한 후, 예산 소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 위원장 김사수 : 과학기술과장님이 나와 계십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 과학기술과

○ 위원장 김사수 : 교원 연수시 강사수당은 지급액이 동일하게 지급되는지요

○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 일률적으로 동일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외래강사료 교수를 초빙할 때는 3만5천원, 교사는 1만 원을 지급합니다.

○ 위원장 김사수 : 컴퓨터 보유 현황과 구입비·연수경비 등 컴퓨터 교육을 위한 총 경비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요.

○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 '81년도 부터 컴퓨터 보급 및 교육 실시로 추적 조사는 어려움이 있어, 총 경비에 관한 자료제출은 관련합니다.

○ 위원장 김사수 : 그러면 컴퓨터 보유 현황은 지금까지의 전체 현황을 제출하고, 경비는 금년도 예산에 대한 것만 제출할 수 있는지요.

○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 현재까지의 컴퓨터 보유 현황과 금년도 연수경비에 관한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이재희 위원 : 각급학교 컴퓨터 구입 방법은 도에서 일괄 구입하는지, 아니면 각 학교에서 직접 구입을 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 국민학교에 지원하는 컴퓨터는 전액을 통신공사에서 지원 구입을 해 주고, 중·고등학교는 일괄 구매 형태로 이루어져 있지만 전자산업 육성 측면에서 바람직 하다고 보며, 조달청에서 단체 수의 계약 후 시·도별로 업체를 지정 하여 줍니다.

○ 이재희 위원 : '92년도 컴퓨터 교육 지원과 관련된 해외연수 대상자는

○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 컴퓨터 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 주관으로 전국을 통합 실시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국·중·고 교사 각 1명, 전문직 1명 입니다.

○ 위원장 김사수 : 차관기자재 관리 예산 활용은 불가능 한 것이 아닌지.

또한, 예산 반영시 차관기자재의 수선이

가능한지.

그리고 차관기자재를 도입 후 조작법도 미숙하고 하여, 미활용 되고 사장되는 경우는 없는지.

또, 필요없는 차관기자재가 들어오는 경우는 없는지.

○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 교육부 주관으로 전국적인 기자재 정비로 불용물품은 불용 결정후 폐기처분 하고 있고, 수선은 개방대학 등에서 주로 수선하며, 자체수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종전의 도입방법과 달리 품목 선정 자체를 교장들이 직접하므로 사장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 김사 이상일 : 교육차관기자재 구입 및 수선과 관련하여 기자재 활용도는 어떠 하고, 부품구입은 용이한지.

○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 종전과 달리 최근에는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도입 연도가 10여년이 지난 기자재가 많은 바, 학교 자체 수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서울 산업대 등에 의뢰하여 수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사수 : 교사들의 컴퓨터 교육 이수 후 담임, 수업 등의 이유로 사후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 되는데 예산 투자에 비하면 그 성과는 어떠한지.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96년까지 초·중·고에 대한 컴퓨터 보급이 완료되므로 지도교사 양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컴퓨터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부 지시로 국민학교 교사 전원이 컴퓨터 교육을 이수토록 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은 3단계로 기본과정 30시간, 전문과정 60시간, 심화과정 120시간으로 교원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이수자는 약 60%에 달하고, 전국적으로 컴퓨터 담당장학사의 정원을 확보한 곳은 우리도 뿐임.

○ 김응복 위원 : 각 시·군 교육청에 컴퓨터 담당 장학사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앞으로 배치할 계획임.

○ 간사 이상일 : 컴퓨터 연수(부전공) 30명의 연수 내용은.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컴퓨터 교사 자격증 보유자가 금년도 신규채용자는 7명뿐이며, 종전에 상과 자격증 보유교사가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여 과목의 전공성을 살릴 수 없었던 바, 충북대 전산과에서 360시간 이수후 부전공으로 자격이 부여되어 그 효과가 높음.

○ 간사 이상일 : 폐수처리시설 대상학교가 3개교인데 이 학교에만 폐수가 많이 나오는 까닭이 있는가.

○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 실험실습 보유하고 있는 17개 학교중 화공과가 설치되어 폐수처리 시설이 시급한 부강공고, 보은농공고, 단양공고등 3개교에 우선 계상함.

○ 위원장 김사수 : 국민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있는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초자·시약·기타재료 등 소모성 재료비의 산출 자료는 있는지.

○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 국민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있는 실험실습 소요예상비용은 저희들이 산출해 놓은 것이 있으나, 현재 이자리에는 없는 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음.

○ 위원장 김사수 : 연간 실험실습 재료비가 25,000원정도 뿐이 안되는데 무슨 실험을 하겠는가, 좀더 확충할 방안은.

○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 과학기술과 예산은 거의가 국고보조로 이루어 지는데 앞으로 과학의 진흥을 위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과학기자재보내기 운동을 실시하여 금년도 12월까지 5억원을 목표로 하여, 우리 교직원 일동도 1인당 1만원이상씩 모금을 하였고, 교육부 산하에서 부터 이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과학진흥을 도모하고자 노력중임.

○ 간사 이상일 : 농·공·실교생 장학금의 연간 지급액 및 대상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 1인당 연간 10만원씩 지급하며, 대상자는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 결정함.

○ 이재희 위원 : 원월국교 종합생활관 사업은 투자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활용 효과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학교마다 생활관 신축시 많은 예산 투자에 비하여 활용은 2-3개월 정도로 예산낭비 요인이 있어 생활관 보유 비율이 낮은 북부지역 중·고등학생이 공동 이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남는 기간을 그 지역의 자모·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제공코자 하며, 참고로 지역별 생활관 보유 비율을 말씀드리면 북부 20%, 중부 80%, 남부 60%임.

○ 간사 이상일 : 거리면이나 교통편의 면에서 현재 위치가 활용키 어려운 면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저희들이 많은 장소를 물색해 보았으나, 현재 위치가 가장 적격지로 판단이 되서 그 곳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무과)

○ 김응복 위원 : 농어가 자녀 학비지원 신청자 조사 여비가 13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

○ 재무과장 고일영 :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1·2학기 2회에 걸쳐 확인·조사

하는 직원의 순수 여비이며, 1ha미만 경작 농가의 자녀, 면소재지 중학교 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농수산부로부터의 지원자금임.

○ 김응복 위원 : 조사활동을 시·군 교육청에 맡겨서 실시 할 수는 없는지.

○ 재무과장 고일영 : 고등학교까지 조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군 교육청에 맡길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김응복 위원 : 에너지절약 추진 및 물품관리 현장 점검 방법은.

○ 행정과장 엄갑도 : 에너지 절약 추진 실적 확인점검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교육청 산하 모두 일선기관을 점검하는데 내용연수 5년 미만인 물품의 폐기시 3백만원이상은 현품 확인등 조사자 의견을 반영함.

○ 간사 이상일 : 공업계고교 배치를 위한 토지매입 추진현황은 어느 정도 상태인지, 또한 연말안에 시설결정이 가능토록 업무추진이 될 수 있는지.

○ 재무과장 고일영 : 매수자가 70여명인데 현재 34명으로부터 매도 승락을 받았고, 시설결정을 위하여는 85%의 매도승락서를 받아야 하나, 60명정도 매도승락을 받으면 시청과 협의하여 시설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또한, 건설부소유 18필지 1500평은 대청

덤과 천안간 용수로 통과 지역으로 그 원형을 살려가면서 사용토록 관계기관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매도승락을 빨리 받고자 노력하고는 있으나 감정평가 금액으로 승락을 받으려고 하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머지 지주들에게도 매도 승락을 받도록 하여 빠르면 금년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시설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사수 : 차입금이자 상환에 대한 예산 절감 방법은.

○ 재무과장 고일영 : 금년도 지급 상태가 상당히 좋아짐.

또 자금의 적기 송금과 여유자금을 고수익성 예금에 예치하여 차입이자를 절감토록 노력하겠음.

내년도에도 지급사정이 금년도와 같다면 이 예산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예측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사수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문은 어느정도 된 것 같은데 이상으로 끝내고 정회를 하였다가 잠시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5분)

(11시 20분)

(시설과)

○ 위원장 김사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질문하세요.

○ 간시 이상일 : 시설비는 교육부에서 차후에 추가배정 되는지

○ 시설과장 박성근 : 추가배정은 없을 것으로 봄.

○ 위원장 김사수 : 체육고 기숙사 보수비 삭감이후 그 대책은.

○ 시설과장 박성근 : 도청·시청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체육고 본관 및 기숙사 신축 사업을 추진 하겠음.

○ 위원장 김사수 : 체육고등학교 설계도 진척사항은 어떤지.

○ 시설과장 박성근 : 현재 교사 부분만 2층까지 설계를 완성해 놓고 그 위에 기숙사는 기본설계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사수 : 동절기 공사는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 해동되면 바로 건축이 추진되도록 하셔야겠는데.

○ 시설과장 박성근 : 기초문제는 도청 소유의 땅이 일부 들어 있는데 그 문제만 해결되면 금년에 기초공사만이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사수 : 도유지 땅에 대하여 사용승락서 만이라도 받아서 할 수는 없는지.

○ 시설과장 박성근 : 그간의 건축협회가 잘 안되어서 그런데 요즘와서 사용승락

서 만이라도 해달라고 얘기중에 있습니다.

재무과 관계계와 협의하여 바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간사 이상일 :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은 계속 되는지.

○ 시설과장 박성근 :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한시법으로 '92년에 그 사업이 종결되며 재량권이 없는 등 모순점이 있어 교육부에서 다른 방법을 마련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임.

○ 위원장 김사수 : 해화학교 위치는 결정되었는지.

○ 시설과장 박성근 : 기계공고와 같은 곳으로 이전 예정임.

○ 위원장 김사수 : 청주교육청 기술적인 건축기사등은 부족하지 않은지.

다른 교육청에 비하면 사업량이 많다고 생각 되는데.....

○ 시설과장 박성근 : 다른 시·군에 비하여 사업량은 많으나 공사 현장면에서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됨.

특히, 타시·군의 경우는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있으나 청주의 경우는 대형공사로 집중되어 있음.

○ 위원장 김사수 :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보면 제일 시급한 문제가 2부제수업 해소라고 할 수 있는데, 2부제 수업의 해소를 위한 공사 조기발주 추진대책 마련은

○ 행정과장 엄갑도 : 학생수용 계획 수립

시 학교신설 3교, '91 추경시 교실증축(30실) 예산을 확보하여 2부제수업 해소 예정이며, 공사 조기착공으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음.

○ 위원장 김사수 :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한 공사는 시설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 시설과장 박성근 : 예.

(사업소)

○ 위원장 김사수 : 사업소에 관련된 예산도 오전중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이상일 : 중앙도서관 운영의 연료비 계상에 있어서 본청과 같은 종류의 유류를 동일기간 동안 사용하는데 본청은 1인당 2.5톤이고, 중앙도서관은 1인당 1.5톤으로 오히려 용량이 작는데, 더 많은 금액을 계상한 이유.

○ 행정과장 엄갑도 : 본청에는 105일에 8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하여 계상한 것이고, 중앙도서관은 학생들이 야간까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같은 105일에 15시간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용량은 작아도 유류 소모량이 본청보다 더 많아서 계상액이 많게 되었습니다.

용량에 표시되는 1.5톤, 2.5톤은 하루에 쓰는 량을 표시한 것입니다.

○ 간사 이상일 : 학생종합야영장 운영 예산중 차량관리비에 2대가 있고, 또 차량

구입비로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엄갑도 : 학생종합야영장에 승용차 1대와 버스 한대가 있는데, 금년도에 승용차가 5년 만기가 되어서 차량 교체비를 계상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차량교체비로 계상된 곳은 단계교육원, 학생종합야영장, 진천교육청, 괴산교육청입니다.

○ 이재희 위원 : 충북학생회관에 승용차 구입예산액과 타기관에 승용차 구입예산액에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급 차종으로 구입할 수 없는지.

○ 행정과장 엄갑도 : 신설되는 충북학생회관에 계상된 것이 액셀 구입으로 계상되어 차이가 나는데 전에도 사업소에는 액셀로 구입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것인데, 동급 차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위원장 김사수 : 학생회관 사업비 내역을 보면 운영비가 적게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지장은 없는지.

○ 행정과장 엄갑도 : 기본적인 운영비는 요구대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됨.

○ 간사 이상일 : 중앙도서관에 도에서 부터 얼마간의 보조가 없는지요.

전기료만해도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도

서에 보조를 많이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행정과장 엄갑도 : 보조비 지원은 전혀 없으며, 시·군에 따라 도서를 구입해서 주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많은량은 아닙니다.

○ 이재희 위원 : 중앙도서관의 이동도서관의 운영 효과는.

○ 행정과장 엄갑도 : 아파트 단지 등을 방문하여 도서를 대출하여 주는데 주로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 상당히 효과가 큼

○ 김응복 위원 : 학생종합야영장 운영비중 학생수련 인솔자 간담회나 유관기관 간담회는 어떤 내용인지.

○ 행정과장 엄갑도 : 야영 활동을 할 때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활용할 때 쓰는 간담회 비용입니다.

○ 위원장 김사수 : 사업에 대하여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0분)

(13시 45분)

○ 위원장 김사수 :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교·급당경비 편성 기준은 다른도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교육부에서 기준이 내려오는 것인지.

○ 행정과장 엄갑도 : 기준은 없고, 저희도에서는 교당경비는 '91년도에 629만원이고, '92년도에는 692만원이며, 급당경비는 '91년도에 60만원이고, '92년도에는 66만원으로 10% 인상 하였습니다.

타도에 편성기준을 보면 급당경비만 10% 올린데도 있고, 교당경비만 10% 올린데도 있으나,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사수 : 학교운영비를 더 지원 할 수는 없는지.

○ 행정과장 엄갑도 : 교·급당경비 이외에 업무용 교통비, 건물유지비, 수세식변소 관리비, 대교경비, 운동회 경비 등이 학교별로 지원되며, 예산집행의 편의를 위해 학교교육비로 과목을 통합해서 지원하고 있음.

○ 간사 이상일 : 학교운영비 보조 127,500천원이 내역은 각 학교에 동일금액을 나눠서 지급하는 것인지.

○ 행정과장 엄갑도 : 육성회 부실교, 소규모학교의 학교운영비 부족분 지원경비로 재정이 부족한 학교만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사수 : 업무용 교통비 지급은.

○ 행정과장 엄갑도 : 업무용 차량이 없는 학교에 매월 30만원씩 지원으로 교사의 품위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 간사 이상일 : 예산서 및 예산설명자료 인쇄비로 3천5백6십1만6천원의 내역은

○ 행정과장 엄갑도 : 예산편성 관리지침, 예산심의자료, 예산 설명자료, 예산서 인쇄 등에 필요한 비용인데 작년도에 비하여 인쇄부수도 배이상으로 증가되고, 예산도 도교육청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부피도 상당히 늘어나서 많이 소요되는데 그것에 대한 인쇄물비입니다.

그리고 종전과는 달리 인쇄물 단가 계산 방식대로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 위원장 김사수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등학교분)

○ 위원장 김사수 : 실고생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농고학생의 80-90%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국고에서 지원하여 저희 6개 농고 학생들이 전액 수업료를 면제받고, 농·어촌 자녀, 영농후계자, 농산부 지원 등 장학금 지원으로 거

의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이재희 위원 : 공고학생들이 국고에서 지원받는 장학금의 내역은.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공고는 작년 부터 지원받아 년 10만원씩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사수 :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지급되는가.

○ 행정과장 엄갑도 : 교장·교감 선생님들의 정보비 성격으로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지급하는 것으로 교장 20만원, 교감 15만원씩 매월 지급됩니다.

○ 위원장 김사수 : 고등학교 실험실습비 지원은.

○ 행정과장 엄갑도 : 실험실습비는 별도로 지원되며, 육성회비에서 5%이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별 어려움 없음.

○ 간사 이상일 : 컴퓨터가 발달되면서 타자기는 퇴조된다고 판단되는데.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타자 기능 교육을 지금까지 권장을 하고 있는데, 졸업후 취업시 타자 3급이상 자격증 취득한 자를 우선 채용하기 때문에 수동타자기에 대한 실무능력을 먼저 배우고 난 뒤에 전자타자기, 워드프로세서 등 현대 사무기기 등 조작성을 배울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상일 : 부속시설 관리비가 청주농고의 5개교에 있는데, 이것은 무슨

부속시설을 관리하는 것인지.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부속시설 관리비란 농고에 농산물 매각대를 환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전액을 다시 학교로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사수 : 교원업무 경감 행정장비 지원 내역은.

○ 행정과장 엄갑도 : 노후 복사기 교체 비용 및 워드프로세서, 운전등사기 등의 지원 경비임.

(하급교육청)

○ 위원장 김사수 : 하급 교육청의 예산 편성 지침은 별도로 있는 것인지.

○ 행정과장 엄갑도 : 교·급당 경비, 행정비 및 사업비는 예산 기준대로 편성하며, 하급교육청의 특색사업 경비는 자율성을 인정하여 요구대로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김응복 위원 : 교육행정자문위원회 예산편성 기준은 무엇이며, 시·군마다 예산액 격차가 심한데 합리성이 없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 행정과장 엄갑도 : 교육행정자문위원회 예산은 교육청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요구한대로 편성하였으며, 수당·여비 등은 교육청 별로 동일하고, 특별판공비는 교육장이 자율적으로 계획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따라 다르나 도에서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하기 어려우며, 전체적으로 보면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봄.

○ 간사 이상일 : 교육행정자문위원회 예산이 교육청별로 다른데,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어느정도 기준을 잡아서 조정할 수는 없는지.

○ 행정과장 엄갑도 : 청주교육청 예산편성안대로 200만원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간사 이상일 : 시·군교육청 예산은 대체적으로 시·군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계획해서 편성된 것 같은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심의할 것을 건의함.
(위원일동: 찬성)

○ 위원장 김사수 : 그럼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

(16시 45분)

2.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인수정동의안 결의

○ 위원장 김사수 : 지금까지 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학교, 시·군 교육청까지 전반에 걸쳐 예산을 살펴보고, 공금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한 결과 삭감

할 것이라든지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예산이 있으면 과목과 대상사업, 금액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응복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지역교육발전위원회 운영비 예산 8백9십4만8천원 전액과, 총무과 소관 공무상 재해보상금 3억원중 2억원,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행정소송 업무추진비 6천3백만원중 5천만원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김사수 : 김응복위원의 동의에 전원 찬성을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예산심의 기본 방침으로 내세운 사업정보비, 특별판공비의 '91년도 예산 대비 증액분도 삭감대상으로 넣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의견들은 어떠신지요.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교육발전위원회 운영비, 공무원재해보상금, 행정소송업무추진비, 사업정보비, 특별판공비의 '91년도 대비 증액분이 네가지 사업을 삭감 대상으로 정하고,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서의 의견을 들어 본후 삭감 여부를 확실히 결정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떤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행정관리담당관 정현동 : 현재 계류 중인 사건도 거의 재판이 다 끝나고, '92년

도 상반기에 지불예정이 예상되는 바, 선처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사수 : 공무원제해보상금으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년에 이것이다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예정 금액으로 예비비 성격이 있는 것으로 2억원 삭감해도 무리는 없는지.

○ 행정과장 엄갑도 : 학교등에서 공무원의 사고가 발생되었을때 공상으로 판단되면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인데, '91년도 지불 실적은 1억5천만원정도이나, 현재 계류중인 사건도 있고 하여 앞으로의 소요금액은 추정키 어렵기 때문에 1억이상의 삭감은 곤란합니다.

또한 수용비, 보상금 및 사업정보비, 특별판공비 등이 일부과에 증액 계상된 것이 있으나, 그것은 시·군분을 통합하였거나 신설된 과로 많이 소요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된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수준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삭감치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 관리국장 김근학 : 지역교육발전위원회 운영비는 교육부의 예산편성 지시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삭감하게 된다면 앞으로 교육부와의 모든 관계가 어려워 질 문제가 있고, 또 관리국장 회의시에도 제차 지시가 있었던 사항으로 교육행정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교육감의 자문역할을 할 분

들로 구성되는 위원회 설치 예산인 만큼 예산 삭감을 보류하고 예산상으로나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사수 : 예산심의가 삭감만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하여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행정소송업무추진비 6천만원과 정보비, 특별판공비등은 삭감이 어려울 것 같으니 공무원 제해보상금의 삭감액과 지역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예산액 삭감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 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 좋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이재희 위원 : 지역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예산도 교육청 관계자와 교육부와의 업무 타협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삭감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 삭감하지 않는 것이 좋고, 제해보상금을 1억원만 삭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간사 이상일 : 이계획위원 동의에 찬성하며, 제해보상금 1억원 삭감과 지역교육발전위원회 설치예산은 삭감하지 않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 이근수 위원 : 재청입니다.

○ 위원장 김사수 : 정식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 제가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후 종합하여 결정토

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6시 52분)

(16시 54분)

○ 위원장 김사수 : 위원님들의 가부 의견을 물어본 바, 김응복위원만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나머지 전원이 찬성하여 재해보상금 1억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고, 삭감되는 1억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며 추후 국민학교 실험실습재료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께서는 본 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예산소위원회 제3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소위원회를 폐회합니다.

(16시 55분 폐회)

○ 출석위원수 : 5명

위원장 김사수, 간사 이상일, 위원 이재희·김응복·이근수.

○ 출석공무원 : 15명

의사국장 민병수, 의사과장 이영규 외 2명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관리국장 김근화, 행정관리담당관 정현동,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행정과장 엄갑도, 재무과장 고일영,

시설과장 박성근, 예산계장 김홍복 외 3명

○ 별정 : 1.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과별·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 별책부록 : 1.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세항별 설명서.

제 4 차 예 산 소 위 원 회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

1991년 11월 11일(월요일) 11시 50분

의 사 일 정

- 1. 예산소위원회 예산안 심사보고서 제심사

부 의 된 안 건

- 1. 예산소위원회 예산안 심사보고서 제심사

(11시 50분 개의)

○ 위원장 김사수 : 예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본청에 계상된 지방교육발전위원회 예산 8,948,000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에 의거 제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 이재희 위원 : 조례제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경비만 계상한 자체는 잘못이지만, 교육부의 지시에 의거 계상한 것이니까 우리가 집행기관을 도와 주는 뜻에서 그대로 계상해 주자는 의견 강력히 요구.

○ 이상일 위원 : 예산서상의 내용으로 보면 자료수집 및 학사시찰 이라던가, 회의

비 및 학사시찰 간담회 등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바, 그렇다면 교육위원의 업무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며, 집행기관으로서는 양쪽에 자료 협조 등 번거로울 것 같은데 이런 종류의 기구가 과연 필요한가, 의문시됩니다.

다만, 순수한 교육감 자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사수 : 교육부에서 규정도 없이 예산을 편성토록 한 것은 잘못임.

그러나 지방교육발전위원회가 교육위원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은 아님.

제 생각은 교육부의 추후 규정이 보완된 후 추경에 반영해 주도록 하고, 이번에는 삭감하여 예비비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 이근수 위원 : 제 생각도 같습니다.

○ 김응복 위원 : 하여튼 우리가 교육이 잘 되도록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모든 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사수 : 교육부의 성급함, 이에 의한 집행부서의 예산 편성 등 재심이 요구되어 재심하는 것인 바, 그러면 지방교육발전위원회 예산 8,94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키로 수정하여 본회에 보고 하고자 합니다만,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 이재희 위원 : 저는 반대입니다.

○ 위원장 김사수 :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4, 반대 1)

○ 위원장 김사수 : 표결결과 찬성 4, 반대 1로, 지방교육발전위원회 예산 8,948,000원은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키로 수정하기로 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추경에 반영하여 주도록 의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본회에서 재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재 심사를 요구한 배경과 같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규정한 조례 제

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경비만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여건이 성숙되면 추경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사항은 기 보고 드린 보고서 내용과 동일하고, 다만 본청의 기타사업비에 계상된 지방교육발전위원회 예산 8,948,000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키로 수정하였습니다.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공무원 재해보상금 1억원과 지방교육발전위원회 예산 8,948,000원, 계 1억8백9십4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고, 이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바 입니다.

이와같이 재심사한 내용을 본회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하기로 결정하고 이상으로 제4차 예산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폐회)

○ 출석위원수 : 5명

위원장 김사수, 위원 이근수·김응복·이재희·이상일.

부 록

1.	교육위원 의석 배치도.....	131
2.	교육위원 윤리강령.....	132
3.	의사일정안.....	133
4.	'92 교육시책.....	135
5.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	145
6.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	160
7.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계획협의자료.....	175
8.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3
9.	충청북도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190
10.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8
11.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5
12.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	216
13.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개요.....	225
14.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과별·사업별 예산편성현황.....	243
15.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69
16.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92
17.	교육행정업무보고(충청북도재천교육청).....	310
18.	1991년도 주요업무보고(충청북도청주교육청).....	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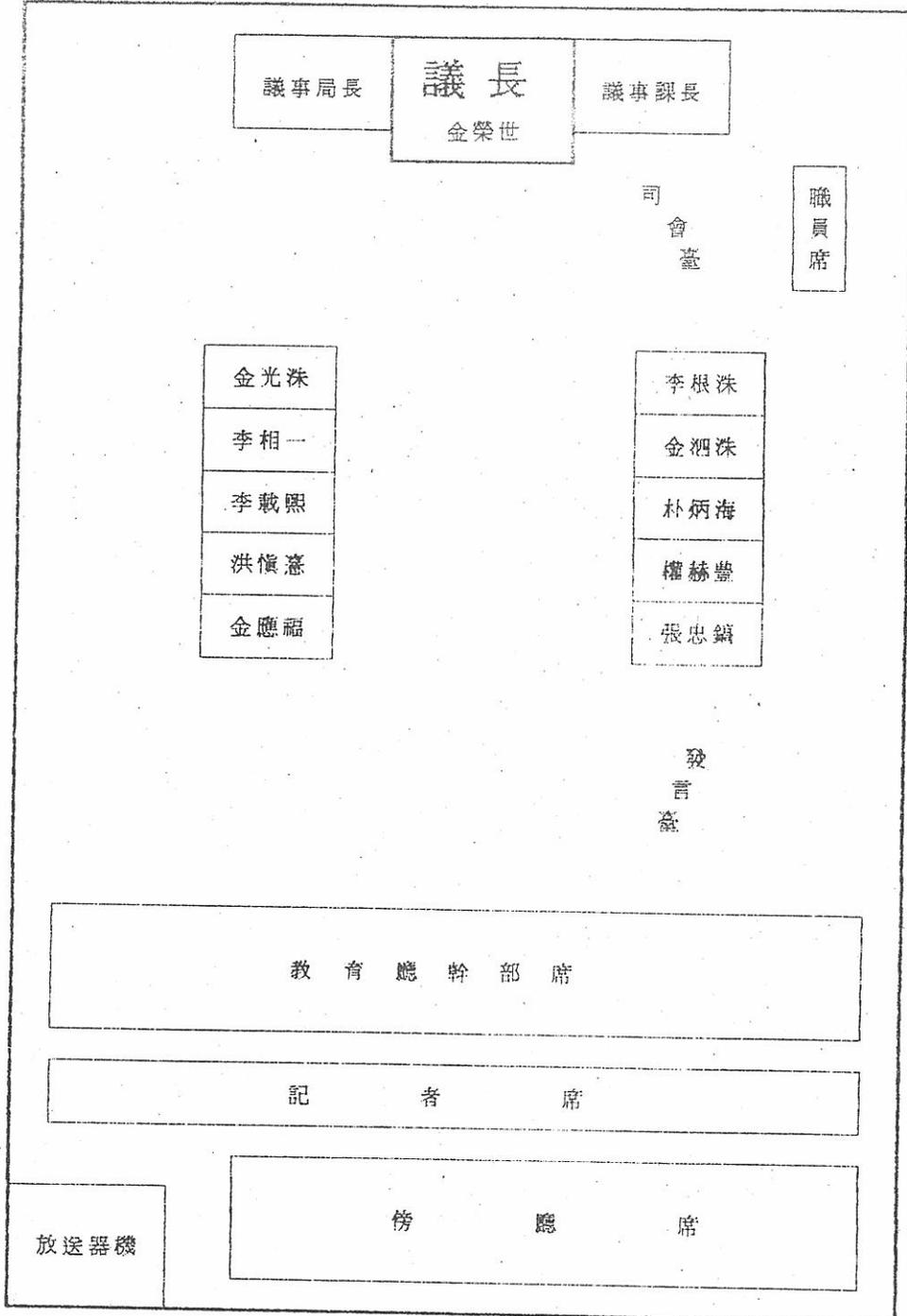
※ 별책부록

-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안)
-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세항별 설명서
-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 부표

(별첨 1)

教育委員 議席 配置圖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별첨 2)

教育委員 倫理綱領

地方教育 自治의 參與 精神속에 初代 民選 教育委員으로 選출된 우리는 教育이 國家와 民族 繁榮의 礎石임을 깊이 인식하고 教育에 대한 住民 代辯者로서 教育委員의 職務를 良心에 따라 誠實히 遂行할 것을 엄숙히 다짐하면서 우리가 遵守할 倫理綱領을 制定한다.

- 一. 우리는 教育自治의 참 뜻을 받들어 住民의 의사가 教育 전반에 걸쳐 충실히 反映될 수 있도록 진력하며 教育行政이 올바르게 遂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一.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後世들이 健全한 價値觀과 道德性을 함양할 수 있도록 全人教育의 內實化에 全力을 다한다.
- 一. 우리는 教育의 中立性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政治的 偏頗性도 教育에 부당하게 干渉함을 排擊한다.
- 一. 우리는 對話와 理解를 바탕으로 하여 모든 事案을 適法한 절차에 의해 처리함으로써 원만하고 건전한 委員會의 風土를 造成한다.
- 一. 우리는 教育委員으로서의 品位를 유지하며 清廉하고 儉素한 生活을 率先垂範한다.

1991년 11월 1일

忠清北道 教育委員 一同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11. 2(토) - 11. 9(토)	(본회의 휴회)	소위원회 활동	
소 위 원 회 활 동 세 부 일 정	11.2(토) 09:30	※ 제3차 감사·조사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감사	감사·조사소위원 회 활동
	11.4(월) 10:30	※ 제4차 감사·조사소위원회 충청북도재천교육청 감사	
	11.5(화) 10:00	※ 제5차 감사·조사소위원회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감사	
	11.6(수) 09:30.	※ 제6차 감사·조사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감사 종합강평	
	11.8(금) 14:00	※ 제7차 감사·조사소위원회 감사보고서 채택	
	11.7(목) 10:30	※ 제2차 예산소위원회 '92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	예산소위원회활동
	11.8(금) 10:30	※ 제3차 예산소위원회 '92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	
	11.9(토)	※ 감사·조사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정리 인쇄 ※ 예산소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 정리 및 인쇄	
	11. 11(월) 10:30	(제2차 본회의) 1.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 2.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안 심의 의결 3. 1991년도 행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폐 회)	

(별첨 4)

1991. 11. 1.

忠清北道教育委員會

'92 教 育 施 策

忠清北道教育廳

'92 教 育 施 策

지금부터 '92年度 忠淸北道教育廳의 教育施策 方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教育自治制 實施와 함께 우리 教育은 새로운 轉機를 맞게 되었습니다.
住民의 積極的인 參與와 支援으로 地域의 特性을 살리는 教育을 期待할 수 있게 되었으며,
教育財源 確保를 위한 地方議會의 노력에도 期待를 걸고 있습니다.

따라서 教育施設의 擴充, 건전한 環境造成, 優秀教員 確保 등 教育與件 改善을 위하여
地域住民의 보다 積極的인 參與와 支援이 要請되는 터입니다.

'92年度 本道教育廳 教育施策의 基本方向은 첫째, 教育 本質을 追求하는 教育. 둘째, 未
來 指向的인 教育. 셋째, 平生教育의 基盤을 造成하는 教育. 넷째, 漸進的인 教育體制 改編
을 推進하는데 重點을 두겠습니다.

이러한 教育施策의 基本方向 아래 本道教育廳에서 推進하고자 하는 '92年度 主要 教育事業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學校運營의 自律化
2. 教育課程 正常運營 및 教授·學習方法의 轉換
3. 教育與件의 改善
4. 基本生活習慣 指導
5. 科學·技術教育의 強化
6. 進路教育과 高等學校 教育體制 改編
7. 高等學校 平準化制度와 秀越性 追求
8. 學校周邊 環境淨化
9. 私學 育成을 위한 支援 擴大
10. 教員綜合對策

위 事業을 具體的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學校運營의 自律化

教育은 目標 指向的이고, 未來 指向的인 活動이기 때문에 學校運營은 그 專門性에 더한 높은 自律性이 保障되어야 합니다.

學校運營의 自律性과 民主化는 教師들이 相互 協力하고 參與하는 속에서 學校教育活動의 主要事項에 대하여 集團思考를 통한 意見收斂過程을 거쳐 教育課程運營, 人事 및 財政管理를 하는 過程입니다.

따라서 學校長의 指示行政이나 管理 爲主의 行政方式을 止揚하고 校長, 校監, 教師들이 서로 尊敬하고 協力하는 人間關係 속에서 이루어지는 家族的인 學校行政 즉, 民主行政을 實現토록 하겠습니다.

教員에 대한 人事原則이나 學校 豫算 編成의 內容과 執行 結果 등도 모든 教職員에게 公開하여 教師들이 教育活動과 關聯되는 豫算의 計劃과 執行에 直接·間接으로 參與토록 하겠

으며, 各種 協議會의 機能을 活性化시켜 學校內의 各種 協議會가 教育目的 達成에 이바지하고, 問題解決을 위한 集團思考의 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教育課程 正常運營 및 教授·學習方法의 轉換

'94學年度부터 適用될 大學入試制度의 改善은 課外공부, 入試爲主 教科書 暗記 등의 學習方法을 排除하고 未來社會에 對備하여 모든 教育方法에서 普通教育을 正常化하기 위한 政策的 構圖입니다.

따라서 本道教育廳에서는 教育課程의 正常運營을 통한 學生들의 多樣한 學習活動이 이루어지도록 持續的인 獎學行政을 推進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學習內容의 接近方法과 方向轉換 및 特性을 考慮한 指導方法의 摸索을 위하여 '91學年度에 3회의 教授·學習方法 轉換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고, '92學年度에도 教師를 對象으로 繼續 推進하겠습니다.

둘째, 多樣한 學生會活動과 特別活動의 運營으로 學生들의 素質啓發과 個性 伸張에 最善을 다하도록 教育課程을 正常運營토록 하겠습니다.

3. 教育與件의 改善

教育의 質을 높여가는 課題는 무엇보다도 普通教育을 하고 있는 初·中等教育의 質을 어떻게 改善하느냐에 그 關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學校教育은 敎員과 學生의 만남에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만남이 學校라고 하는 場 속에서 다양한 學習指導와 實驗·實習活動을 통하여 全人的 人格形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教育與件의 改善은 學校教育에서 必須的인 課題라고 할 수 있습니다.

敎員과 學生들간의 만남의 機會를 넓혀주기 위해서는 學校規模가 작아야 되고, 學級當 學生數가 적어야만 합니다. 學級當 學生數가 적은 가운데 다양한 教授·學習方法을 實現할 수

있는 初·中等學校의 教育與件을 만들기 위하여, 年次的으로 過密學級 解消, 過大規模 學校 分離 등을 위해 努力하고 있습니다만 現在의 財政規模로는 필요한 學校施設을 確保하기가 매우 어려운 實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問題들이 短期間에 解決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豫想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에 隨伴되는 財源을 마련하여 學校教育의 質을 높이고, 都·農間의 均衡있는 教育發展을 위해 繼續 努力하겠습니다.

4. 基本生活習慣 指導

어린이는 나라의 장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일찍이 祖上代代로 어린이를 所重하게, 그리고 嚴格하게 教育하여 슬기롭고, 착하고, 節制하는 生活 姿勢를 만들어 주는 文化와 傳統을 가져 왔습니다.

한 人間의 人格的인 들은 어린 時節에 家庭과 學校에서 學習한 價値觀이나 習慣을 어떻게 定着시켜 주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平生의 길잡이가 됩니다.

요즈음 어린이들은 옛날에 비하여 몸집도 크고, 깨끗하고, 自己 主張이 분명하고, 아는 것이 많은 肯定的인 면이 많지만, 버릇이 없고, 씹씹이가 해프고, 작은 어려움도 못 견디고 挫折해 버리는 柔弱함을 보이는 問題點을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하여 本道教育廳에서는 過保護에서 節度를, 過消費에서 節約을, 無規制에서 節義를 지키는 禮節教育, 經濟教育, 秩序教育을 習慣化하는 節制教育을 積極 推進해 나갈 것입니다.

'91年度에는 이를 위하여 "바르고 굳센 어린이" 冊字를 學校와 家庭에 普及하여 基本生活 習慣 指導에 努力해 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基本生活習慣 指導가 成功的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學校, 家庭, 教師, 學父母가 어린이의 行動을 理解하고, 바르게 指導하는 協力體制가 構築되어야 할 것이며, 地域社會의 健全한 生活文化를 回復시키는 努力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5. 科學·技術教育의 強化

科學·技術教育은 한 나라의 發展에 決定的인 役割을 擔當하고 있습니다.

科學·技術教育은 論理的 思考와 더불어 實證的 經驗이 絶실히 要請되는 領域입니다.

따라서 實效性 있고, 水準 높은 科學·技術教育이 이루어지려면 實驗·實習 設備의 擴充과 教育機器의 確保 등 科學·技術教育 條件 造成과 科學教師의 資質 向上, 科學 英才의 早期教育 등이 必要합니다.

이를 위하여 國民學校 剩餘教室을 科學室로 轉換시키고, 中·高等學校의 實驗·實習室 擴充과 함께 科學實驗補助員을 配置하여 科學實驗·實習 條件을 改善시키고, 各 教育廳별로 컴퓨터教育센터와 學校컴퓨터실을 擴大 設置하여 컴퓨터教育을 強化할 計劃입니다.

科學擔當教師들의 資質 向上을 위하여는 國民學校教師 事前實驗研修, 科學實驗 講師要員 研修, 科學教育 擔當教師 實驗研修, 教員 컴퓨터研修, 實科教師研修 등 國·中·高等學校 教師 3,130名을 研修시킬 計劃입니다.

科學英才教育을 위하여는 國·中學校 科學英才班, 中學校 科學教室, 高等學校 探究班運營 特別教育프로그램을 提供하는 方法으로 指導를 해 나가고, 靑少年 科學 競進大會, 數學·科學 競試大會 등을 開催하여 優秀學生에 대한 秀越性教育을 強化해 나가겠습니다.

6. 進路教育和 高等學校 教育體制 改編

그동안 우리나라는 高學歷 優待風土로 인한 지나친 大學 選好의 경향 때문에 實業系 高等學校보다는 一般系 高等學校 爲主의 教育體制로 運營되어 教育的인 면에서나, 産業人力 需給面에서 많은 問題點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教育課程運營이 斷片的 知識 爲主의 注入式教育으로 一貫되어 왔으며, 教科成績 爲主의 評價와 지나친 點數 競爭으로 인하여 非人間的 教育風土가 造成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問題

學生 및 非進學生에 대한 進路指導가 소홀히 되어 온 것이 事實이며, 지나친 大學 進學熱은 過熱 課外와 再修生 問題를 惹起시킨 반면에 産業體에서는 技能人力을 確保하지 못하여 많은 隘路를 겪고 있는 實情입니다.

本道教育廳에서 推進하고 있는 高等學校 教育體制 改編의 基本方向은 學生들의 能力과 適性에 따라 進路를 택할 수 있도록 進路教育을 體系化하겠으며, 實業系 高校를 늘리고, 內實을 기하여 무작정 大學으로 進學하려는 欲求를 緩和시키면서 就業 後에도 언제든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平生教育의 基盤을 造成해 나가겠습니다.

推進 內容을 具體的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國民學校 때부터 進路教育을 실시하여 學生들이 그들의 能力과 適性에 따라 自身の 進路를 選擇하도록 指導하고, 教育研究院에 進路教育部를 設置, 專門家로 하여금 各級 學校의 進路教育을 支援하도록 하며, 進路·職業 世界를 理解할 수 있도록 多樣한 教育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13個 一般系 高校에 職業課程을 設置하여 大學 進學을 希望하지 않는 學生에게 職業教育을 實施할 것입니다.

셋째, 實業系 高等學校로 進學하기를 希望하는 學生 全員을 收容하기 위하여 一般系 高校 5個校를 實業系 高校로 轉換하고, 實業系 學科를 13個 學校에 31學級을 新·增設하며, 尖端 產業 團地에 所要되는 技能人力을 供給하기 위하여 1個 工高를 新設할 것입니다.

이로써 現在 57 : 43의 一般系 高校 : 實業系 高校의 比率이 '93學年度에는 50 : 50이 되어 大學 過熱進學 現狀 緩和, 非進學者의 社會問題 解消 및 技能 人力 育成, 供給 등으로 産業體의 技能人力難 解消에 크게 寄與할 것입니다.

넷째, 現在 63.7%가 確保되어 있는 實業系 高校의 實習 施設을 '94年度 까지 67%로 擴充하고, 産業體의 技術發展에 따른 工高 教育現場의 適應力을 키우기 위하여 最尖端 實習機材 確保 및 老朽施設 代替事業에 注力할 것이며,

다섯째, 이외에 實業系 高校의 收容能力 擴充事業으로 私學도 積極 參與를 勸誘하고 있는 바, '93年度에는 賢都商業高等學校를 6學級 規模로 開校할 豫定입니다.

7. 高等學校 平準化制度와 秀越性 追求

1974年度부터 實施된 高等學校 平準化는 中學校 教育을 正常化시키고, 高等學校間 隔差를 줄였으며, 學生들의 體力을 向上시키고, 大都市 交通難을 解消하는데 크게 寄與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成果에도 불구하고 高等學校 教育의 秀越性 追求가 困難하고, 學生이 學校 選擇의 機會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같은 반에 있는 學生들의 學力差가 커서 教師들이 授業

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私立學校의 獨自性 追求가 困難한 點 등 問題點도 있어 平準化制度의 基本的인 骨格을 維持하되 未備點을 補完하여 나갈 必要가 強力히 提起되었습니다.

才能이 있는 學生들의 秀越性教育을 위하여 系列別로 高等學校 特性化를 推進; 能力과 適性에 맞는 教育을 받을 수 있는 機會를 擴大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淸州에서의 高校 平準化制度는 繼續 適用하되 科學系, 藝·體能系, 外國語系의 特性化로 英才教育을 實施하고, 實業系 高等學校를 擴充하여 職業教育을 強化하는 한편, 一般英才

를 위한 高等學校를 新設하여 다양하게 學校를 選擇할 수 있는 機會를 넓혀 주도록 推進하겠습니다.

8. 學校周邊 環境淨化

各級 學校 周邊의 非教育的인 有害 環境을 淨化하고, 快適한 學習秀團氣를 造成하여 學生의 健全한 心身 發達을 圖謀하고자 學校 環境衛生淨化地域을 設定하여 學校周邊環境의 管

理를 해왔습니다. 學校 環境淨化地域 안에서는 環境을 保健·衛生에 支障을 주는 行爲를 禁止시키고 있으며, 매월 첫째주 土曜日을 "環境 淨化日"로 指定하고, 學生, 學父母, 教職

員, 地域 人士 등이 함께 參與하여 周邊淨化와 環境 業所를 訪問 啓導하고, 違反 業所에 대하여는 強力한 行政措置를 취하고 있으나 이 일은 地域 住民의 理解와 協助에 의해서만 成果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9. 私學 育成을 위한 支援 擴大

우리道는 中學校의 19.9%, 高等學校의 34.6%가 私學에 依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私學은 財政的으로 學校 運營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教育與件면에서 國·公立學校 教育施設의 隔差가 날로 深化되어 가고 있는 趨勢입니다.

中等教育機關의 경우 中學校 無試驗 抽籤 規定 및 高等學校 平準化 施策이 實施됨에 따라 學生 納入金을 公·私立 學校間에 同一 水準으로 徵收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結果的으로 政府의 豫算 支援을 받는 公立學校에 비해서 財團이 零細한 대부분의 私立學校 財政 형편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構造的인 問題點을 안고 있습니다.

다행히 '80年度 이후 私立 中學校 및 高等學校를 대상으로 人件費 不足分에 대하여는 政府의 財政 補助가 實施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中等學校는 施設費 投資 餘力이 거의 없어 施設 確保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私學의 育成 없이 우리나라 教育의 均衡 發展을 期待할 수 없다는 점에서 私學에 대한 財政 支援 擴大는 必須的이기 때문에 私立 中·高等學校의 財政 缺陷 즉, 人件費 와 運營費

不足分에 대한 補助와 施設費 支援, 私立 特殊學校와 産業體 特別學級에 대한 支援, 私立 實業系 高校에 대한 實驗·實習費 支援을 擴大해 나가고 있습니다.

10. 教員 綜合 對策

教育의 質은 教育을 直接 擔當하고 있는 教員의 資質에 의해서 決定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教育發展을 위해서는 教員의 養成, 資格, 任用, 現職研修, 處遇改善 등 여러가지 問題가 關聯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問題는 教員의 專門性을 提高시키는 일입니다.

教科關聯 專門知識, 學生에 대한 理解力, 다양한 教授·學習方法의 技術, 人間의 精神과 삶의 崇高함에 대한 倫理的 價値觀의 定立, 國家·社會에 대한 올바른 認識과 責務感, 教育에의 召命感 내지는 獻身的 態度 등이 調和를 이루어야 합니다.

教職 適格者로서 優秀한 教員候補者를 確保하기 위하여 從來 學力 爲主의 選拔方法에서 面接考査와 教職適性이 反映되도록 하여 '57年度부터 施行하여 온 國立 師範系 大學 出身者의 無試驗 任用制度를 廢止하고, 公開銓衡을 통해 教員을 採用하고 있습니다.

教員의 質을 높이기 위해서 海外研修를 비롯한 各種 研修機會를 擴大하고, 教員의 士氣 昂揚을 위하여 教職 安定과 教育 發展을 促進하는 計劃을 樹立하여 年次的으로 推進해 나가겠습니다.

다가 올 21世紀의 未來 社會에 對備하는 教育을 위하여 民主市民 育成, 道德性 涵養, 教育의 民主性 提高, 教育體制와 課程의 多樣化, 教壇 支援體制의 確立을 위해서 最善의 努力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教育委員님께서 積極的으로 支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本道教育廳의 '92年度 教育施策을 말씀 드렸습니다.

感謝합니다.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 1991 . 10.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사유

농업기계 조작기능 신장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업기계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선진영농기술의 보급과 영농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배양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농업기계공동실습소 설치내용

설치교	위치	설치년월일	교육과정	교육인원	비고
청주농업 고등학교	청주시 내덕1동 322번지	1992.4.1	기당 2주	기당 30명	1년 9기운영예정

나. 조직

실습소에 연수과와 사무과를 두며, 청주농업고등학교 교장, 교감, 주임교사, 실과교사, 일반직원을 겸직하도록 함.

다. 입소자격 (교육대상)

- 1)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2) 농업계 실과교사 및 기능직 공무원

3. 재정근거 : 별첨(사본)

- o 교육부 회의자료(90. 3. 9 - 11,12,13쪽) 실업계고교 수용능력확충계획
- o 교육부 회의자료(90. 12. - 22,23쪽) '91 직업교육확충 세부추진계획
- o 교육부 실업 25330 - 95(90. 7. 13) 농.공고 공동실습소 실습기자재 지원

4. 예산상황 : o 소요재원중 실습기자재구입비 2억5천만원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지원
o '92 공동실습소 예산요구현황 : 17,445천원(재원별 별첨)

5. 조례안 : 별첨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

제 1 조 (목적) 충청북도 농업계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농업기자재를 공동활용하여 농업기계의 구조, 작동원리, 조작 및 정비에 관한 집중적인 실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업기계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선진농업기술의 보급과 영농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배양하고자 충청북도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치) 실습소의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내덕1동 322번지의 청주농업고등학교에 둔다.

제 3 조 (업무) 실습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업계고등학교 학생의 농업기계교육
2. 농업계 실과교사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연수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및 교육활동

제 4 조 (조직과 임무) 본 실습소의 조직과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습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을 두며, 소장은 설치학교의 교장이, 부소장은 교감이 겸임한다.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실습소의 직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실습소에는 연수과와 사무과를 두며, 연수과장은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사무과장은 설치학교의 사무책임자가 겸임한다.

제 5 조 (직원의 배치)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조 (연수과) 연수과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학생교육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실과교원 및 기능직연수에 관한 사항
3. 교재개발 및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4.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활동 업무에 관한 사항

제 7 조 (서무과) 서무과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인사, 복무, 보안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운영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3. 물품의 구매, 출납,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제 8 조 (교육대상) 교육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계고등학교 자영농과 2학년 재학생
2. 농업계고등학교 학생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도내에 근무하는 농업계 실과교사
4. 농업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

제 9 조 (수당) 실습소의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0 조 (재정) 실습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한다.

제 11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 고 자 료

충청북도농업기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관련서류

- '92 농업기계 공동실습소 예산 요구자료 (재원별)
- 실업계고교 수용능력 확충계획 (교육부 회의자료) 사본
- '91 직업교육확충 세부추진계획 (교육부 회의자료) 사본
- 농·공고 공동실습소 실습기자재지원 (교육부공문) 사본

'92 공동실습소 예산 요구 자료(채원별)

(단 위 : 전 원)

과 목 명	금 액	주 요 사 업 내 용
수 당	1,698	· 당직수당 : 일직 132 숙직 756 · 외래강사수당 : 810
피복비	2,550	· 침구류 : 2,240 · 명 찰 : 310
국내여비	1,890	· 농과교사 농기계 연수여비 : 1,890
학교교육비	6,601	· 공공요금 936 · 연료비 764 · 인쇄비 1,080 · 재료구입비 3,821
자산취득비	680	· 실습용 의자 240 · 공구실습대 440
보상금	1,026	· 수료식 시상 126 · 실습생 부상치료비 900
시설비	3,000	· 운전실습장 운전코스 콘크리트포장 3,000
합 계	17,445	

實業系高校收容能力擴充計劃

1990. 3.

文 教 部

V. 實業系高校 教育內實化

1. 推 進 方 案

가. 既存 實業高의 機資材 確保率 提高

- 機資材確保率 : 54.5 % ('89) → 67 % ('94)

나. 老朽機資材 代替 및 修理費 支援

- 老朽機資材의 80 %를 代替 :

老朽化率 22.5 % ('89) → 4.5 % ('94)

- 故障난 機資材의 修理費 支援

다. 實驗實習費 支援

- 所要經費의 30 % 水準 支援 ('89) → 100 % ('94)

라. 工高와 農高에 共同實習所 增設

- 工高 : 7 個所 ('90) → 16 個所 ('94)

- 農高 : 8 個所 ('94)

2. 推進方針

- 實驗·實習 教科運營에 活用 頻도가 높은 施設機資材의 取得, 代替 및 修理에 優先적으로 投資
- 産業自動化時代に 對備 컴퓨터 活用能力 培養을 위하여 컴퓨터 購入費 支援
- 高價의 最新 自動化 工作機械를 地域別로 共同 設置·活用, 施設投資의 效率性 提高
- 營農機械化에 따른 農機械教育을 強化하기 위하여 農機械 共同實習所 設置 支援

3. 年度別 推進計劃

가. 實驗·實習施設 擴充

(單位: 億원)

年度 區分	'90	'91	'92	'93	'94	計
確保率(%)	56.9	59.3	61.7	64.1	67	67
所要豫算	168	168	168	168	168	840

나. 老朽機資材 代替 및 修理

(單位：億圓)

年度 區分	'90	'91	'92	'93	'94	計
所要豫算	68	68	68	68	68	340

다. 實驗·實習費 支援

(單位：億圓)

年度 區分	'90	'91	'92	'93	'94	計
支援水準(%)	45	60	75	90	100	100
所要豫算	80	125	184	240	395	1,024

라. 工高·農高 共同實習所 設置

年度 區分	'90	'91	'92	'93	'94	計
設置	12	4	3	3	2	17
· 工高	4	2	2	1	-	9
· 農高	4	2	1	1	-	8

高等學校 教育體制改革을 爲한
'91職業教育擴充 細部推進計劃

1990. 12.

文 教 部

3. 실업계고교 교육내실화(공동실습소 설치)

[사업별 지원방침]

가. 능기계 공동실습소

- 도내 능고생의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자영능과성, 영능 학생을 우선 교육시킨다.
- 교당 지원액 3억원중 2억원은 능기계구입비(441목)로 1억원은 실습실 및 능기계 보관소 등 외곽시설 건축비 로 집행한다.
- 비품비 및 운영비는 교부금에서 자체 확보

나. 공고 공동실습소

- 시·도 기계과 학생의 실습 및 교사연수용으로 활용함.
- 타고생이 실습할 경우 채적교의 교사가 인솔, 생활지도 등 협조
- 기존 공동실습소를 답사하여 기자재 구입계획, 교육과정, 실습계획 등 수립
- 도내 교사중 적격자를 발령, 계획수립, 사전연수 등 사전준비
- 교당 지원액 5억원은 전액 기자재 구입비(441목)에 집행
 - 외곽시설 개보수비, 비품비 및 운영비 등은 교부금에서 자체 확보

※ 농기계 공동실습소 기자재(예시)

품 목	규 격	수 량
트랙터 및 작업기	22Hp, 32Hp, 58Hp	각 2대
경운기 및 작업기	6Hp, 8Hp	각 7대
이 앙 기	4조 산파	5대
바 인 더	2조 식	5대
콤 바 인	3조	3대
관리기 및 작업기	5Hp	3대
분무기	60A	3대
살분무기	배부형	4대
탈곡기	전자동	2대
농용엔진	5Hp	15대
공구세트	조	18조

*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은 문교부 교육시설극에서
 기 시달한 교육차관 기자재 활용관리지침
 "VI. 공동활용의 확대"를 참고 할 것.

교 육 부

실업 25338-95 (728-3334) 1991. 7. 13.

수신 수신처장조

참조 학무국장

제목 농·공고 공동실습소 실습기자재 지원

1. 실업25338-87('91.7.4)의 관련입니다.

2.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농고와 공고 공동실습소에 실습기자재 지원사업을 별첨과 같이 추진하고 있는 바, 각 교육청에서는 본 사업이 학생들의 추천을 수 있도록 재반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농·공고 공동실습소 실습기자재 지원계획 1부.
- 2. 전국경제인연합회 공문 사본 1부. 끝.



교 육 부 장

과학교육국장권결



수신처 : 다01-06, 10-12, 14, 15, 17.

농·공고 공동실습소 실습기자재 지원계획

○ 목적

전경련 사회복지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실업계(공·농고)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산업계 취업을 할 학생들에게 실습기회를 확대·보강해 주고자 기존 또는 설치 예정인 공동실습소에 실습용 기자재를 지원코자 함.

○ 지원대상 및 금액

지 원 대 상	금 액	용 도	비 고
공고 공동실습소 18개소	20억원	실습기자재구입	1개소당 2억
농고 공동실습소 설치 예정 4개소(경기, 강원, 충북, 전남)	18억원	"	1개소당 4.5억

○ 사업추진기간 : '91.7-12월

○ 지원조건

- 실습기자재에 한하며 실습건물등 부대시설용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실습비 및 기자재관리보전비는 자체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건

○ 시·도교육청 협조사항

- 지원대상교는 지원요청서(별첨서식)를 작성하여 7월 27일까지 교육부에 제출
- 농고 공동실습소 설치대상 교육청은 '92년 4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교사배치, 예산편성 등 각종 조치들 강구
-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및 지도

○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비 고
7.11	대상교 교장 간담회	전경전과 대상학교
7.27	기자재 지원요청서 제출	
8월중	협정서 교판	
8월-12월	기자재 구매 및 설치	
12월중	공고 기자재 기증식	
'92.4월중	농고 공동실습소 개소식	

○ 대상교

교육청	대상교
서울	경기기계공고
"	서울기계공고
부산	부산공고
대구	대구공고
인천	인천기계공고
광주	광주기계공고
대전	충남기계공고
경기	여주자영농고
강원	홍천농고
충북	청주농고
전북	이리공고
전남	강전농고
"	담양공고
경남	창원기계공고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2
----------	---

제출년월일 : 1991 . 10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개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 사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청소년 문예활동의 공간과 공연장(연극, 영화 등)을 제공하여 문화, 예술활동 등을 장려하고 인격도야를 위한 도서실육 운영함.
- 나. 조직으로 관장, 총무과, 운영과, 도서과를 두며, 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함
- 다. 학생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실비로 징수하되 회관의 설립목적에 상응하거나 관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라. 충청북도학생회관은 충청북도학생도서관을 흡수 통합하고 그의 권리, 의무 및 소속 공무원을 승계 함

3. 제안근거

- 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 (교육기관의 설치)
- 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에 의거한 교육부의 교육기관설치 승인
(교육부 교행 01210-355(1991. 9. 6) 교육기관설치 승인)

4. 조례안 : 별첨

5.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6.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현황 : 별첨

7. 각당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문 사본 1부
- 나. 학생회관설치승인 공문사본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개발, 정서순화 등 전인 교육에 기여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하에 충청북도학생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 2 조(위치) 회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영동 79번지에 둔다.

제 3 조(회관의 운영) 회관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청소년문예활동의 공간 제공
2. 연극, 영화 등 공연장 운영
3. 도서관 운영
4. 청소년에 대한 교육·문화활동 전개
5. 기타 제 1 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 조(관장) ① 회관에 관장을 두되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 한다.

제 5 조(직원) 회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조(하부조직) 회관에 총무과, 운영과, 도서과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원, 운영과장은 교육연구원, 도서과장은 지방행정사무원 또는 지방사서사무원으로 보한다.

제 7 조(총무과) 총무과에는 서무계, 관리계를 두며 과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관의 운영 및 기획
2. 관인관수, 문서관리 및 보안업무
3.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
4. 대관업무에 관한사항
5. 예산회계의 운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6. 후생시설관리 및 운영
7. 회관보전, 조경, 정비
8. 회관시설물, 설비의 작동 및 관리
9. 차량운전 및 관리
10.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 8 조(운영과) 운영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각종 행사의 기획
2. 청소년의 학술발표 개최
3. 연극·영화등을 위한 공연장과 강당등 운영
4. 청소년의 문예 및 교육활동 추진
5. 학생의 특별활동장으로서의 활용
6. 청소년의 여가선용장으로서의 활용
7. 전시실, 토의실, 음악실, 상담실, 회의실, 서예실 운영

제 9 조(도서과) 도서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도서관운영에 대한 계획수립
2. 도서관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
3. 도서관자료의 열람 및 대출
4. 시청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보자료실 운영
6.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7. 자료의 보수 및 재본에 관한 사항

제 10 조(재정) 회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하며 기타보조금 등으로 운영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

제 11 조(휴관일) ①회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1.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2. 매월 4번째 주 수요일

②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예고한 다음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제 12 조(운영시간 및 근무시간) ①회관의 운영시간은 계절과 요일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편의와 회관사정을 고려하여 관장이 정한다.
②회관에서 복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복수성을 고려하여 관장이 정한다.

제 13 조(회관의 사용) ①회관의 시설 및 설비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전에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회관내 도서관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1. 도서관사용자의 입·퇴관방법 및 절차
2. 도서 및 자료의 열람과 대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3. 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도서

③기타 회관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 14 조(사용대상) 회관은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학생과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 소속직원이 사용함을 위주로 하되 근로청소년, 단체(기관) 및 일반인으로 부터 사용신청이 있을때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회관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 15 조(사용시간) ①사용자는 [별표 2]에 의한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연장한 매시간 마다 소정 사용료의 2할을 가산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6 조(사용료) 회관의 시설 및 설비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7 조(사용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경우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충청북도교육청 및 교육위원회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2. 회관의 설치목적에 상응하는 청소년의 문예활동등과 기관의 행사

3. 관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기관 또는 단체)

4. 기타, 교육적차원에서 권장할만한 행사

② 제 1 항의 사용료 감면율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정한다.

제 18 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인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제 19 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관의 자료나 물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 분실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20 조(회관 사용의 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회관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실내 풍기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자

3. 정신병자

4.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기타 회관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관장은 회관사용자가 사용자준수사항을 이행치 아니할 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 21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타기관의 통합)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학생도서관은 학생회관에 흡수 통합된다.

③(권리 의무의 승계)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충청북도학생도서관장의 권리 의무는 이 조례에 의한 학생회관장이 이를 승계한다.

④(기관통합에 따른 소속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승계)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충청북도학생도서관의 업무 및 소속공무원은 학생회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별표 1)

학 생 회 관 사 용 신 청 서

=====

주 소 :

직 업 (기관 또는 단체) :

성 명 (기관장 또는 대표자명) :

전화번호 :

학생회관 조례와 규칙을 준수키로 하고 회관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용 목 적			
참 가 범 위	(인 원 : 명)		
사 용 대 상			
사 용 기 간	년	월	일
	년	월	일
사 용 기 간	시부터 (일간)		
사 용 기 간	시까지 (시간)		
목 별 설 비			
사용료 납부방법			
입관료 징수 유무	무	유	원
사 용 료	원		

[별표 2]

학 생 회 관 사 용 료

(단위 : 원)

사용구분	사 용 목 적	기 준	금 액	비 고
강 당 동	공연 및 문예 행사	1 회 (4시간 이내)	30,000	
	체육 활동	"	10,000	
	잡 회	"	20,000	
전 시 실 (내부)	전시, 선전, 홍보, 계몽	1 일	10,000	4월 - 10월 (09:00 - 20:00) 11월 - 3월 (09:00 - 18:00) ※관장이 허가시 사용기간을 연장할수 있음 ※외부전시실은 층별사용료 임
전 시 실 (외부)	"	"	8,000	
특별활동실	음악, 서예 등	1 회 (4시간 이내)	10,000	※ 각 실당 사용료 임
스 극 장	연극 공연 영화 상영 기 타 행 사	1 회 (4시간 이내)	20,000	
부속설비	피 아 노	1 회 (4시간 이내)	5,000	
	프로젝터	"	20,000	
	냉·난방시설			시중시가에 의해 징수
	조명시설			시중시가에 의해 징수

참 고 자 료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관련서류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47호., 1991. 3. 8)
- 학생회관사업계획 및 예산 현황
- 입법예고문 공고사본
- 교육기관 설치승인 (교육부공문) 사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1. 3. 8. 법률 제4347호)

제41 조 (교육기관의 설치) ①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교육감이 제 1 항의 교육기관을 당해 시·도의 조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생회관사업 및 예산현황

과 목 별	금 액	주 요 사 업 내 역	비 고
수당	7,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직관리비 2,370,000 · 시간외 근무 4,140,000 · 사회교육실운영 820,000 	
급량비	525	· 학생회관운영 525,000	
국내여비	2,840	· 학생회관 각종여비 2,840,000	
수용비및수수료	8,6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보,도보,법령집 330,420 · 각종수용비 및 수수료 8,271,580 	
정보비	7,800	· 학생회관운영 7,800,000	
기관운영관공비	3,350	· 학생회관운영 3,350,000	
특별관공비	2,000	· 학생회관운영 2,000,000	
공공요금	8,6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료 3,600,000 · 수도료 3,805,350 · 전화료 1,280,000 · 우표 30,000 	
제세공과금	514	· 학생회관운영 514,000	
차량비	1,722	· 업무용승용차 운영비 1,722,000	
연료비	3,518	· 난방비 3,518,000	
자산취득비	64,3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용차량 5,900,000 · 비디오영사기 30,000,000 · 애플사실(4식1조) 13,000,000 · 사구실질기구입 7,660,000 · 특별실질기 5,600,000 · 강당동질기 1,900,000 · 학생회관 운영비품 280,000 	
시설비	3,155	· 전화 설치비 5대 3,155,000	
물품구입비	19,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디오카메라1대 구입비 1,500,000 · V.T.R 2대 1,600,000 · 피아노 구입비 4,000,000 · 전화기 구입 5대 200,000 · 복사기 구입 3,000,000 · 팩시밀리 구입 1,700,000 · 라자기 구입 2대 1,200,000 · P.C셋 3대 6,000,000 	
계	133,612		133,611,380

기 타

◎ 충청북도교육청공고제 100 호

충청북도학생회관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일민예고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91년 9월 13일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일민예고

1. 제정취지

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순화, 심신단련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는 특별활동의 장을 제공하여 건전한 인격체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학생회관을 설치함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청소년문예·체육회동의 공간과 공연장(연극, 영화 등)을 제공하여 청소년에 대한 문화, 예술활동 등을 장려하고 도서실을 운영함
- 기구로는 3과 2계를 두되 관장의 직급은 지방서기관으로 함
- 일요일에는 회관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정기휴관일을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매월 19일로 함

-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할때는 사용예정일 5일 전에 허가를 받아 사용하되 그 사용료는 실비로 징수한다. 다만, 회관의 설립목적에 상응하거나 관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도내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공연료, 영화관람료, 열람실이용료 등)에는 무료로 함
- 충청북도학생도서관은 회관에 휴수 통합되고 그의 권리, 의무 및 소속공무원을 승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1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애고한 입법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전화 63-7726, 271-1441, 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유 부

교행 01210-355 (720-3316) 1991. 9. 6.
 수신 충청북도교육감
 제목 교육기관 설치 승인

1. 사회01210-647('91.8.14)으로 제출한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승인 신청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별첨과 같이 승인합니다.

2. 아을력 학생회관의 계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내부설비 확충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충청북도학생회관 설치 승인서 1부. "결"

선 결	교육감	결	교 주
접수일시	1991. 9. 6	이 편	중 등 교 주 국 장
처리과	사회교육계장	사 회 교 주 국 장	사 회 교 주 국 장

1991. 9. 06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발송 순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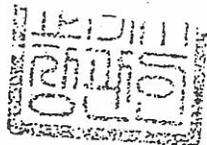
보 유 부

보통교육국장전결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승인서

구 분	승 인 내 용
○ 목 적	○ 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개발, 정서순화등 전인 교육에 기여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를 육성하고자 함
○ 명 칭	○ 충청북도 학생회관
○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영동 79번지
○ 시설규모	○ 부 지 : 3,240㎡ ○ 연건평 : 4,724㎡(지하1층, 지상5층)
○ 투자액	○ 총 1,968,000천원 - 국 고 : 550,000천원 - 자 체 : 1,418,000천원
○ 개관예정	○ '92년 1월경



(별첨 7)

충청북도학생회관 설치계획 협의자료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계획

1. 설립목적

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개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특별 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를 육성하고자 함

2. 시설규모

가. 위치 : 청주시 영동 79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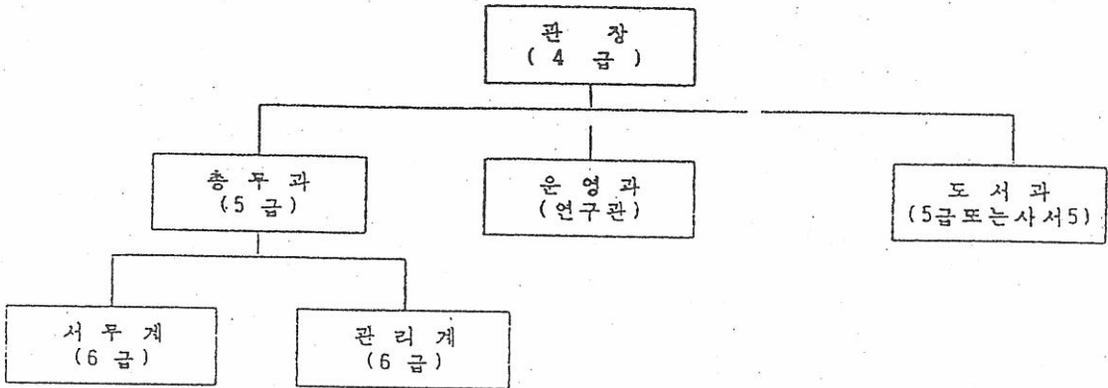
나. 부지 : 3,240㎡

다. 건물

(단 위 : ㎡)

구분	본 관 등		강 당 등		계
	용 도	면 적	용 도	면 적	
지하 1층	기계실 및 식당	263			350
	공용실(계단, 복도, 장고)	87			
1 층	관장실 및各科 사무실	380	체육, 부속 탈의, 샤워 무대 등	1,305	1,870
	공용실(외부전시실1로 활용)	185			
2 층	열람실 및 휴게실	427.5	관람석	150	728
	공용실(외부전시실2로 활용)	137.5	계단	14	
3 층	음악실, 전시실	427.5			565
	공용실(외부전시실3로 활용)	137.5			
4 층	복합실, 사회교육실 등	427.5			565
	공용실	137.5			
5 층	소극장, 부속실, 소회의실	466.5			540
	공용실	73.5			
옥 탑	물탱크실	59			106
	계단	47			
계		3,256	계	1,468	4,724

3. 기구



4. 정원확보 계획

구 분	일 반 직											전 문 직		합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기능직		연구관	연구사	
			행정	사서	행정	사서	전산	행정	사서	7등급	10등급			
인원	1	2	2	1	5	2	1	1	1	5	15	1	2	39

5. 업무추진방향

0 기본방향 :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체 형성을 위한 활동장 제공

0 주요사업내용 -연극, 영화 등 공연장 제공

-전시실 운영으로 문화욕구충족과 창작활동제고

-특별활동장 제공

-각종 문예활동 및 행사의 유치 또는 개최

-도서실 운영

-체육활동(배구, 핸드볼, 탁구, 배드민턴 등)

-사회교육(새예, 한문, 생활체육, 테크리에이션, 가족도서관 등)장 제공

-정서순화를 위한 휴식공간(음악감상실 등)제공

-건강 영화상영(매주 토, 일요일 무료입장)

-청소년을 위한 강연회 유치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기 간	내 용	비 고
'87.11.18	0 회관신설 예산 통보(문교부 생활25130-693)	
'88. 3.23	0 충북학생회관 건립계획 보고(사회25130-118)	
'88.12 - '89. 6	0 부지확보	
'89. 1 - '89. 8	0 설계완료	
'89. 9.19	0 학생회관 장기계속공사 계약	
'89.10.25 -'90.9.12	0 장기계속공사중 제1차본공사 준공 (본관동 2층, 강당등 골조)	학생도서관분
'90. 7.18	0 충청북도학생도서관 기관설치승인 획득	
'90.11.23 -'91.2.16	0 보일러 공사	
'91. 3. 4	0 충청북도학생도서관 개관	
'91. 5. 6	0 학생회관 마감공사 계약	
'91. 5.10	0 마감공사 착공	
'91. 8	0 학생회관 내부설비 및 집기구입용 예산확보 0 학생회관 설치 협의 0 기관설치 승인	관리과 관련과 교육부
'91. 9	0 조례 입법예고	도보계재
'91.10	0 법제심의 부의 0 교육위원회 조례제정안 부의 0 도 의회 조례제정안 부의 0 학생회관 마감공사 준공	시설과
'91.10 - '92. 1	0 학생회관 내부설비 및 집기구입	사회교육체육 과, 재무과
'91.11	0 장원확보	행정관리 담당관
'92. 1	0 개관	관련과

참고자료

0 타 시·도 비교표(규모 및 정원) : 별첨

0 사용료 비교표 : 별첨

타 시 . 도 비 교 표

시도	기관명	규 모			관 장	정 원																			합 계	비 고			
		부지 (m ²)	건물 (m ²)	형태		행 정 직 (급)					사 서 직 (급)					기 능 직 (등급)					전 산 직 7 급	전 문 직							
						4	5	6	7	8	소 계	5	6	7	8	9	소 계	7	8	9		10	소 계	교육 연구 관			교육 연구 사	소 계	
광주	광주학 생독립 운동기 념회관	3986	5318	지하 1층 지상 4층	지방 서기 관	1	1	1	1	1	5	1	3	2	5	1	12					26	26	1				45	
전북	전북학 생회관	4722	4371	지상 3층 공연 장	"	1	1	2	1		5		1		1			2	5			25	30		1	3	4	41	
제주	제주도 학생회 관	6016	2039	지상 3층 강당 등	"	1		1	1	1	4											5	5					9	
충북	충북학 생회관	3240	4724	지하 1층 지상 5층 강당 등 (체 육관)	"	1	2	2	5	1	11		1	2	1		4	5				15	20	1	1	2	3	39	.0 안은 학생도 서관 정원임

0 학생회관 사용료 비교표

(단위 : 원)

사용구분	사용목적	기준	금액	비교표			비고
				전북	광주	제주	
강당등	연극공연 영화상영	4시간 1회 (오전)	30,000	90,000	60,000 (1일)	30,000 (3시간)	
		오 후	"	100,000			
		저 녀	"	130,000			
	집 회	4시간 1회 (오전)	20,000	90,000	10,000 (3시간)	6,000 (3시간)	
		오 후	"	100,000			
		저 녀	"	130,000			
전시실 (내부)	전시 및 선전	1 일	10,000	50,000	9,000	30,000	4월-10월 (9시-20시) 11월-3월 (9시-18시)
전시실 (외부)	전시 및 선전	1 일	8,000	50,000 (복도 및 공간벽 사용)	6,000 (복도 및 공간벽 사용)	30,000 (복도 및 공간벽 사용)	4월-10월 (9시-20시) 11월-3월 (9시-18시)
특별활동 실	음악, 서예, 토 의, 연구, 회의 등	1일 1실	10,000	30,000			
소극장	연극공연 영화상영 기타행사	4시간 1회	20,000				
부속설비	앰 프	4시간 1회 (오전)		30,000			
		오 후		40,000			
		저 녀		50,000			

사용구분	사용목적	기준	금액	비교표			비고
				전북	광주	제주	
부속설비	피아노	4시간	5,000	10,000		4,000 (2시간)	
	프로젝터	4시간 1회 (오전)	20,000	30,000			
		오 후	"	30,000			
		저 녀	"	40,000			
냉·난방 시설	강당 및 극장	4시간 1회	시중시 가에 의 해 정 수	130,000	시중시 가에 의 해 정 수	한전고 시가격 에 의 해 정 수	전기료
조명시설	강 당	"	"	40,000	"	"	"
	소 극 장 및 각 실	"	"	30,000	"	"	"
영 화 관 램 트	국 교 생	1 회	무료		500		
	중 고 생	"	"		500		
	대학생 이상	"	"		500		
초청공연 시범발표 등의행사	국 교 생	"	"				
	중 고 생	"	"				
	대학생 이상	"	"				

학생회관 내부시설비

(단위 : 천원)

품 명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프로젝터	1 조	30,000	30,000	1관식
비디오카메라	1	1,500	1,500	
V T R	2	800	1,600	
앰프 시설	4식 1조	14,000	14,000	전관방송, 강당앰프 음악감상실, 소극장
피아노	1	4,000	4,000	
의 자	31	30	930	
책 상	31	50	1,550	
전화기	5	40	200	
전화설치	5	231	1,155	
인터폰셋	20회선 1조	1,000	1,000	
응답셋	3	400	1,200	
복사기	1	3,000	3,000	
팩시	1	1,700	1,700	
타자기	2	600	1,200	
P.C셋	3	2,000	6,000	
캐비넷	20	40	800	
서가	10	300	3,000	
칸막이	10	20	200	
접의자	100	9	900	
개구넷트	1 조	100	100	
핸드볼몰대	1 조	300	300	
탁구대	3 조	200	600	
의 자	80	20	1,600	특별활동실 (2실)
안락의자	100	40	4,000	음악감상실
계			80,535	

(별첨 8)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
----------	---

제출년월일 : 1991. 10.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개정사유

충청북도학생회관 설치에 따라 충청북도학생도서관이 흡수되고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사서직급의 명칭변경과 도서관진흥법 및 같은법시행령 제정에 의하여 도서관 사용료 징수 범위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충청북도학생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에서 충청북도학생도서관 관련부분을 삭제함.
- 나.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사서직급의 명칭변경(예, 지방사서관(5급)-지방사서사무원)다. '92년부터 도서관사용료가 면제예정됨에 따라 도서관사용료 범위를 재조정 하고자함.

3. 개정근거

-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13402호, 1991. 6. 27)
- 나. 도서관진흥법 제29 조(법률 제2352호 1991. 3. 8) 및 같은법시행령 제30 조와 부칙7 조 (대통령령 제13342호 1991. 4. 8)
- 다.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 관한 조례(안)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 조중 [별표 1] 의 "충청북도학생도서관"을 삭제한다

제4 조 제1 항중 "지방사서관(4급)"을 "지방사서서기관"으로, "지방사서관(5급)"을 "지방사서사무원"으로 "지방사서"를 "지방사서주사"로 한다.

제6 조 제2항중 "지방사서관(5급)"을 "지방사서사무원"으로 한다.

제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서관자료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데이터베이스 이용수수료
2. 개인연구실, 회의실등 이용수수료
3. 자료복사료

②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장이 정한다.

③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 조 ①항중 "충청북도중앙도서관과 충청북도학생도서관"을 "충청북도중앙도서관"으로 한다.

제10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관장은 도서관사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다.

1. 도서관 사용자의 입·퇴관 방법 및 절차
2. 도서 및 자료의 열람과 대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3. 관의로 대출할 수 없는 도서
4. 기타 도서관시설 사용에 필요한 사항

제 16조중 제2 항을 삭제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안)																																												
<p>제1 조(목적) 생 략</p> <p>제2 조(명칭 및 위치) 생 략</p> <p>[별표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도 서 관 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충청북도증암도서관 충청북도학생도서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소생략 "</td> </tr> <tr> <td>충주학생도서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충원도서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제천도서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청원도서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보은도서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유영도서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진천도서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괴산도서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음향도서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도 서 관 명	위 치	충청북도증암도서관 충청북도학생도서관	주소생략 "	충주학생도서관	"	충원도서관	"	제천도서관	"	청원도서관	"	보은도서관	"	유영도서관	"	진천도서관	"	괴산도서관	"	음향도서관	"	<p>제1 조(목적) (현행과 같음)</p> <p>제2 조(명칭 및 위치)</p> <p>[별표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도 서 관 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삭 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소생략 삭 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소생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도 서 관 명	위 치 삭 제	주소생략 삭 제	주소생략	"	"	"	"	"	"	"	"
도 서 관 명	위 치																																												
충청북도증암도서관 충청북도학생도서관	주소생략 "																																												
충주학생도서관	"																																												
충원도서관	"																																												
제천도서관	"																																												
청원도서관	"																																												
보은도서관	"																																												
유영도서관	"																																												
진천도서관	"																																												
괴산도서관	"																																												
음향도서관	"																																												
도 서 관 명	위 치																																												
. 삭 제	주소생략 삭 제																																												
.	주소생략																																												
.	"																																												
.	"																																												
.	"																																												
.	"																																												
.	"																																												
.	"																																												
.	"																																												
.	"																																												
<p>제3 조(업무) 생 략</p> <p>제4 조(관장) ①도서관에는 관장을 두되 충청북도증암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관(4급)으로, 충청북도학생도서관장과 제천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관(5급)으로 보하고, 기타 도서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로 보한다.</p> <p>② 생 략</p> <p>제5 조(정원) 생 략</p> <p>제6 조(하부조직) ① 생 략</p> <p>②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사서과장 및 열람과장은 지방사서관(5급)으로 보한다.</p>	<p>제3 조(업무) (현행과 같음)</p> <p>제4 조(관장) ①</p> <p>.</p> <p>지방사서서기관으로, 제천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하고,</p> <p>. 지방사서주사로</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 조(정원) (현행과 같음)</p> <p>제6 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 지방사서사무관으로</p>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안)
<p>③ 생 략</p> <p>④ 생 략</p> <p>⑤ 생 략</p> <p>제7 조(사용료) ①도서관자료를 열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어린이(국민학교학생 이하)가 이용하는 경우</p> <p>2. 관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3. 교육감이 도서관 복수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p> <p>③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p> <p>제8 조(휴관일) ①충청북도중앙도서관과 충청북도학생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과 같다.</p> <p>1.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p> <p>2. 매월 17일</p> <p>② 생 략</p> <p>③ 생 략</p> <p>제9 조 생 략</p> <p>제10조(도서관 사용) ①도서관사용자는</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제7 조(사용료) ①도서관자료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p> <p>2. 개인연구실, 회의실 등 이용 수수료</p> <p>3. 자료복사료</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장이 정한다</p> <p>③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④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p> <p>제8 조(휴관일) ①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과 같다.</p> <p>1.</p> <p>2.</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 조 (현행과 같음)</p> <p>제10조(도서관 사용) 관장은 도서관사용에 관</p>

신 ·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안)
<p>사용료를 납부하고 "별표3"의 입관표를 받아 입관하여야 한다.</p> <p>② 관내에서 도서 및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5"의 관내대출표를 교부받아 소정사항을 기입한 후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관외대출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별표5"의 관외대출표를 교부받아 소정사항을 기입한 후 관장이 정하는 절차를 밟아 도서관관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도서는 관장이 정한다.</p> <p>⑤ 도서관시설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p> <p>제11조 - 제15조 생략</p> <p>제16조(복수시설의 이용)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연구실등 복수시설의 이용은 유료로 하며, 그 이용료는 교육감이 승인을 얻어 관장이 정한다.</p> <p>제17조(시행규칙) 생략</p>	<p>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사용자의 입·퇴관 방법 및 절차 2. 도서 및 자료의 열람과 대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3. 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도서 4. 도서관시설 사용에 필요한 사항 <p>제11조 - 제15조 (현행과 같음)</p> <p>제16조(복수시설의 이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삭제</p> <p>제17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 1. 1.부터 시행한다.</p>

참 고 자 료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관련서류

- 지방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302호., 1991. 6.27)
- 도서관진흥법 제29조 (법률 제2352호., 1991. 3. 8) 및 동법시행령령 제30조
-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 부칙 제2항, 3항, 4항

관계법령(부분)발췌서

○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대통령령제1302호 1991.6.27)

· 【별표1】

직렬	직류	계			급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사서	사서				지방 사서 서기 관	지방 사서 사무 관	지방 사서 주사	지방 사서 주사 보	지방 사서 서기	지방 사서 서기 보

○ 도서관진흥법제29 조(법률제2352호.1991.3.8) 및 동법시행령30조

· 제29 조(사용료)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도서관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한다.

· 동법시행령제30 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법 제29 조의 규정여 의하여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회의실등 이용 수수료
3. 자료 복사료
4. 장기간 강습·교육참여에 대한 수수료
5. 입관료 사립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 부칙제7 조(대통령령제13342호.1991.4.8)(국·공립공공도서관의 입관료에 관한 경과조치) 국·공립공공도서관의 입관료는 제30 조제5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 이를 받을 수 있다.

○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 부칙제2항,3항,4항

· 제2항(타기관의 통합)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학생도서관은 학생회관에 흡수 통합한다.

· 제3항(권리의부의 승계) 이 조례시행 당시의 충청북도학생도서관장의 권리의부는 이 조례에 의한 학생회관장이 이를 승계한다.

· 제4항(기관통합에 따른 소속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승계) 이 조례시행 당시의 충청북도학생도서관의 업무 및 소속공무원은 학생회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충청북도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
----------	---

제출년월일 : 1991. 10.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1. 개정사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47호: '91. 3. 8) 시행으로 종전의 각 시·군교육청 표창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산하교육청등 각급교육행정기관에서 등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의거 위임 또는 규정한 표창에관한 각종 사항을 정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제개편(대통령령 제13451호: '91. 8. 16)에 따른 보조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골자

- 가. 제명을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로 함.
- 나. 표창권자를 "교육감에서 각 기관장"으로 변경함으로써 표창권자를 확대함.
- 다. 표창추천권자에도 본청의 각 담당관을 추가함.
- 라. 표창 및 표창추천 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표창권자 소속하에 두는 각 기관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명시 함.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근거법령

- 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1991. 3. 8., 제4347호)
- 나.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1991. 8. 16., 대통령령 제13451호)
- 다. 정부표창규정 (1984. 12. 13., 대통령령 제11559호)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예산조치 : 해당없음.

충청북도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감표창조례"를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로 한다.

제1조중 "교육감"을 "충청북도 교육행정기관에서"로 한다.

제5조 제3호중 "당 교육청"을 "본도 교육행정기관"으로 한다.

제6조 제4호중 "교육감"을 "기관장"으로 한다.

제7조 제3항중 "교육감"을 "기관장"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표창권자) 표창은 각 기관장이 행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표창추천)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추천은 본정의 각 국장, 담당관 및 각과장(교육장 표창인 경우 교육청 각과장포함)과 산하기관장 및 유관기관장(의뢰기관장 포함)이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표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표창 및 표창추천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표창권자 소속 하에 공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 교육청에는"충청북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위원은 각 국장, 담당관 및 각 과장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총무과 인사계장이 된다.
2. 하급교육청에는 "충청북도○○ 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를 두며 소속공무원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하는 5인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 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소속공무원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위원장 부재시에는 위원중 상위직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 사항을 표장권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중 "충청북도교육감"을 표장을 수여하는 각 기관장 명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 문 대 비 표

현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충청북도교육감이</u>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에서</u>
제2조 - 제4조 (생략)	제2조 -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5조(감사장)
1. 본도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경우	1. -----
2. 본도 교육행정 수행에 적극협조 또는 공헌한 경우	2. -----
3. 대외적으로 <u>당교육청의</u> 명예를 높이 선양한 경우	3. ----- <u>본도 교육행정기관의</u> -----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6조(상장) -----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4. 기타 <u>교육감이</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 <u>기관장이</u> -----
제7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② (생략)	제7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패 및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u>교육감이</u> 정한다.	③ ----- <u>기관장이</u> -----
제8조(표창권자) <u>표창은 교육감이</u> 행한다.	제8조(표창권자) <u>표창은 각 기관장이</u> 행할 수 있다.
제9조(표창추천)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 추천은 본청의 <u>각 국·과장</u> 과 산하 기관장 및 유관기관장(의뢰기관장 포함)이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u>교육감에게</u> 추천 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추천) ----- ----- <u>각 국장, 담당관</u> 및 <u>각 과장(교육장표창인 경우 교육청 각 과장포함) 과</u> ----- ----- <u>표창권자에게</u> 제출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 및 표창추천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

현행	개정(안)
<p>대상자를 심사. 결정 하기 위하여 <u>교육감 소속하에 공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②위원회는 각 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및 각 과장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장은 학무국장이 된다.</p> <p>④위원장 부제시에는 위원중 상위직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p> <p>⑤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인사계장이 된다.</p> <p>⑥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⑧위원장은 위원회 위결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표창권자</p> <hr/> <hr/> <hr/> <p>1. 도 교육청에는 "<u>충청북도교육청공직심사위원회</u>"를 두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위원은 각국장, 담당관 및 각과장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총무과 인사계장이 된다.</p> <p>2. 하급 교육청에는 "<u>충청북도○○교육청공직심사위원회</u>"를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한다.</p> <p>②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p> <p>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결의를 하게할 수 있다.</p> <p>④위원장 부제시에는 위원중 상위직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p> <p>⑤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표창권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p>
<p>제11조 - 제13조 (생략)</p>	<p>제11조 - 제13조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참 고 자 료

충청북도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관련서류

-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공포 법령 (대통령령 제13451호., 1991. 8.16)
- 정부표창규정 (대통령령 제11550호., 1984.12.13)

대통령령 제13451호(1991. 8.16)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부분발취)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영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교육행정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부교육감) 서울특별시의 부교육감은 관리관 또는 장학관으로, 직할시 및 도의 부교육감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 3 조(공무원의 정원)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 2 장 서울특별시 및 부산직할시교육청 : 생 략

제 3 장 대구직할시·인천직할시·광주직할시·대전직할시 및 도의 교육청

제 13 조(하부조직) ① 대구직할시·인천직할시·광주직할시·대전직할시 및 도의 교육청에 총무과·초등교육국·중등교육국 및 관리국을 둔다.

② 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 1인을, 부교육감 밑에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제 14 조(공보담당관) ① 공보담당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

대통령령 제 11559호 (1984.12.13.)

정부표창규정 (부분발췌)

제10조 (표창권자) 표창은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기관의 장이 행한다.

- 제13조 (각기관공적심사위원회) ① 전조 (중앙공적심사위원회) 이외의 표창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각표창권자 소속하에 그 기관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전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
----------	---

제출년월일 : 1991. 10.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1. 개정사유

행정동의 분리 및 봉의 신설에 따른 중학교학교군(구)의 조정과 면의 명칭 변경에 의한 해당 지역 학구명의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이 필요

2. 주요골자

가. 행정동의 분동으로 인한 학교군(구)의 조정

0 가경·복대동 : 복대1동과 가경·복대2동으로 분동

0 봉명·송정동 : 봉명1동과 봉명2·송정동으로 분동

나. 행정동 신설에 따른 학교군(구)의 조정

다. 면 명칭 변경(영동군 황금면→영동군 추풍령면)에 따른 소속지역 학구명 변경

3. 제안근거

가. 청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91. 8.23. 조례 제1635호)

나. 청주시봉·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90.12.28. 조례 제1585호)

다. 영동군면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91. 7. 5. 조례 제1332호)

4. 조 례 안 : 별 첨

5. 기타 참고사항

0 신구조문 대조표 : 별 첨

0 예산상황 : 해당 없음

0 공고문 사본 : 별 첨

0 관계법령 부분발해서 : 별 첨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학교군 및 중학구)의 별표중

청주시 1.2.3학교군, 영동군 추풍령중학구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가. 학교군 및 중학구별 일람표

교육청별	중학군(구)	중학교명	학 군 (구) 소 속 지 역		비고
			지 역 명	해 당 지 역	
청 주 시 정 원 군	청주시 제1학교군	청주남중	청 주 시	문화동, 북문로 1가, 서운동, 남문로 1가, 2가, 서문동, 남주동, 석교동, 탑동, 대성동	
		청주동중 새 광 중 운 호 중 청주여중 충북여중 일신여중 정 은 중	정 원 군 남 일 면 남 이 면 남 성 면 가 덕 면 분 의 면	문화동, 북문로 1가, 서운동, 남문로 1가, 2가, 서문동, 남주동, 석교동, 탑동, 대성동 사직 제2동, 모충동, 영운동, 금천동, 용담동, 명암동, 산성동, 용암·용정·방서동, 산·미·분·수곡동, 성화·개신·죽림동(1,2,4,6-12봉), 사창동(1-6,11 19,23 25-28,39-41,46봉)	
청주시 제2학교군	청주시 제2학교군	청주중	청 주 시	영동, 북문리2가,3가, 사직 제1동, 은천동, 신봉동, 수동, 우암동, 내덕 제1동,2동, 율향동, 사천동, 강서 제2동, 사창동(8-10, 20-22,31-35,38,42-45봉), 봉명1동	
		주 성 중 대 성 중 중 앙 중 중 앙 여 중 대 성 여 중 봉 명 중	분 의 면	등동리(위등골)	
				영동, 북문리2가,3가, 사직 제1동, 은천동, 신봉동, 수동, 우암동, 내덕 제1동,2동, 율향동, 사천동, 강서 제2동, 사창동(8-10, 20-22,31-35,38,42-45봉), 봉명1동(18-20,22봉 제외), 봉명2 송정동(1,2 봉 제외), 오근장동	

교육청별	중학군(구)	중학교명	학 군 (구) 소 속 지 역		비 고
			지 역 명	해 당 지 역	
영 동 군	청주시 제3학교군	서원중 충북대학 교사범 대학부속 중학교 가경중	청원군 북일면	목방리,구성리,국동리,원봉리(숲안, 청애원,봉천),은곡리1구	(봉산면 광천리) :김천시 학군과 공동학구
			청주시	강서제1동(12,26봉 제외),북대1동, 가경·북대2동,성화·개신·죽림동 (3,5,13-17봉),봉명1동(18-20,22봉), 봉명2송정동(1,2봉),사창동(7,24,29, 30,36,37,47봉)	
			청원군 강내면	연정리	
			청원군 남이면	구암리,상발리	
	추풍령 중학구	추풍령중	영동군 추풍령면	전지역	
			경북 금통군		
			봉산면	광천리	
			경북 상주군		
			묘동면	반계리(반징개)	

신 · 구 대 조 표

현 행					변 경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 군 (구) 소 속 지 역		비고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 군 (구) 소 속 지 역		비고
			지역명	해 당 지 역					지역명	해 당 지 역	
정주시	정주시	정주남중	정주시	문화동, 북문로1가, 서운동, 남문로1가,							
청원군	제1학교군	정주동중		2가, 서문동, 남주동, 석교동, 탑동, 대성							
		새 광 중		동, 사직재2동, 모충동, 영운동, 금천동,							
		일신여중		용담동, 명암동, 산성동, 용암 · 용정 ·							
		정주여중		방사동, 산 · 마 · 분 · 수곡동, <u>성화 · 개</u>							
		은호중		<u>신 · 죽림동(1,2,4,6-8통)</u> , 사창동							
		충북여중		(1-6, 11-19, 23, 25-28, 39-41, 46통),							
		청은중									
			청원군								
			남일면	송암리, 효촌리, 쌍수리, 신송리,							
				가중리, 가산리, 화당리, 고은리,							
			남이면	팔봉리, 석실리, 석판리, 가마리,							
				양촌리, 가좌리, 대현리, 척북리,							
				사동리, 척산리, 수대리, 외천리,							
				문동리							
			남성면	삼산리, 현암리, 갈산리, 무성리,							
				인경리(마전, 인경)							
			가덕면	상대리							
			문의면	등동리(위등골)							

현					경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 군 (구) 소 속 지 역		비고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 군 (구) 소 속 지 역		비고
			지역명	해 당 지 역					지역명	해 당 지 역	
청주시	청주시	청주중	청주시	영동·북문로2가·3가·사직제1동,은천동,신봉동,수동,우암동,내덕제1동,2동,을량동,사천동,강서제2동,사창동(8-10,20-22,31-35,38,42=45통),봉명·송정동(7,8,18-20,42통 제외),오근장동							
청원군	제2학교군	주성중 대성중 중앙중 중앙여중 대성여중 봉명중	청원군 북일면	묵방리,구성리,국동리,원봉리(숲안,청애원,봉천),은곡리1구							
청주시	제3학교군	서원중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청주시	강서제1동(12,26통 제외),가경·복대동,성화·개신·죽림동(3,5통),봉명·송정동(7,8,18-20,42통),사창동(7,24,29,30,36,37,47통)				가경중		복대1동,가경복대2동,성화·개신·죽림동(3,5,13-17통),봉명1동(18-20,22통),봉명2송정동(1,2통)	
			청원군 강내면 남이면	연정리 구암리, 상발리							

현					경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 군(구) 소 속 지 역		비고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 군(구) 소 속 지 역		비고
			지역명	해 당 지 역					지역명	해 당 지 역	
영동군	추풍령중학 구	추풍령중	영동군 황금면	전 지 역			
			경 북 금릉군 봉산면	광천리					
			경 북 상주군 묘동면	반계리(반징개)					

참 고 자 료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관련서류

-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
- 청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공포조례 사본
(청주시조례 제1635호., 1991. 8.23)
- 청주시봉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공포 사본
(청주시조례 제1585호., 1990.12.28)
- 영동군면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공포 사본
(청주시조례 제1332호., 1991. 7. 5)

기 타

◎ 충청북도교육청공고제101호

충청북도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1년 9월 20일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 행정동의 분리 및 통 신설에 따른 학군(구)를 조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행정동의 분동

1) 가경·복대동 : 복대 1동

가경·복대 2동

(청주시 제3학교군 조정 변경없음)

2) 봉명·송정동 : 봉명 1동

봉명 2 송정동

○ 신·구대조표

현		변	
학교군(구)	해 당 지 역	학교군(구)	해 당 지 역
청 주 시 제 2 학군	봉명·송정동 (7, 8, 18-20, 42통 제외)	청 주 시 제 2 학교군	봉명1등(18-20, 22통 제외) 봉명2 송정동(1, 2통 제외)
청 주 시 제 3 학군	봉명·송정동 (7, 8, 18-20, 42통)	청 주 시 제 3 학교군	봉명1등(18-20, 22통) 봉명2 송정동(1, 2통)

나. 행정통의 신설

1) 학교군 변경없는 통의 신설

동 명	현 행 통 수	개정(신설)	비 고
내 덕 2 동	1-33	34-37	
울량·사천동	1-26	27-34	
탐·대성동	1-36	37-38	
산,미,분,수곡동	1-59	60-70	
가경·복대동	1-64	65-71	
봉명·송정동	1-55	56	위 2의 가 2)에 의한
강 서 1 동	1-33	34-38	학교군 변경

2) 학군 변경있는 통의 신설

동 명	통의신설		학 군 (구)	
	현행	신설	현	개 정
성 화 개 신 죽림동	1-8	9 17	성화,개신,죽림동 (1, 2, 4, 6, 7, 8) 청주시 제 1 학군	성화,개신,죽림동 (1, 2, 4, 6-12통) 청주시 제 1 학군
			성화,개신,죽림동 (3, 5통) 청주시 제 3 학군	성화,개신,죽림동 (3, 5, 13-17통) 청주시 제 3 학군

다. 신설중학교(가경중)학군 : 청주시 제3학교군

- 해당지역 : 강서 제1동(12, 26통 제외), 복대1동, 가경·복대 2동, 성화, 개신, 죽림동(3, 5, 13-17통), 봉명 1동(18-20, 22통), 봉명 2 송정동(1, 2통), 사창동(7, 24, 29, 30, 36, 37, 47통), 청원군 강내면 연정리, 청원군 남이면 구암리, 상발리

3. 의결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주민은 '91.10. 4 까지 의견서를 충청북도교육청(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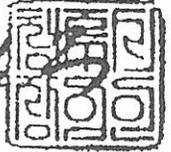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청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를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주 시 장

이석우



1991년 8월 29일

청주시 조례 제 163호

청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청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행정운영 동의의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별표중 "기정복내동 및 봉명송정동"의 행정운영동의 명칭·관할 구역및 동장의정수를 별지의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대 조 표

현				개			
행정동명	동장정수	행정운영동명	구역	행정동명	동장정수	행정운영동명	구역
	생		략		생		략
가경동 부대동	1	가경 부대동	가경동. 부대동 일원	부대동	1	부대1동	부대동 7의1~47의12, 56의3~78의33, 82의1~95의91, 산100의2, 100의15, 104의1, 115의2, 132의2~137의14, 142의1~149의1, 153~158의3, 173의1~174의2, 190의2~198의1, 203의1~55의17, 625의1~637의4, 781의1~781의16, 826의1~836의9, 839의4~839의16, 841의2~841의5, 843의1~843의3, 844, 845의1~845의7, 847의4~847의7, 848의1~848의11, 881의1~981의15
				부대동	1	가경. 부대2동	부대동 산47, 48의1~53의4, 산72산73의6, 산78의16, 80, 산83의9, 산96, 119의1~131의8, 139의1~139의10, 150의11~151의1, 160의1~172의2, 177의1~177의24, 180, 201~202, 624의10, 694의2~779, 788~824의15, 837의2~837의27, 840의6~840의8, 842, 849의1~980, 982~2398
				가경동			가경동 일원
봉명동 송정동	1	봉명 송정동	봉명동. 송정동 일원	봉명동	1	봉명1동	봉명동 167~172의9, 176~198의30, 200~216, 218~233의24, 235~236, 242~248의16, 277, 754~1285
				봉명동	1	봉명2. 송정동	봉명동 1~17, 77~78의7, 83~85, 90의4~128, 산3, 산7, 산16산19, 산26, 산33의3, 산35의1, 산36의2, 산47의1, 237의20, 240의20, 268, 286~287의4, 315, 328의4~339, 353의5, 378, 417~414의4, 460~753, 1286~1839
				송정동			송정동 일원
	생		략		생		략

충청북도지사의승인을얻은청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주 시 장



1990년 12월 28 일

청주시조례제 158호

청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청주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통반의명칭및 관할구역) 별표중 우암동, 내덕1동, 내덕2동,

울랑사천동, 탑대성동, 영은동, 용담명암산성동, 사직2동, 사창동, 모충

동, 은천신봉동, 산미분수곡동, 성화개신죽림동, 가경복대동, 봉명송정동

강서1동의 통반의 명칭및 관할구역 일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행정동의 신설

등 명	현행동수	개정(신설)	계	증감(봉)	비 고
성화·개선·죽림동	1-8	9-17	1-17	9	
가경·북대동	1-64	65-71	1-71	7	
봉명·송정동	1-55	56	1-56	1	
강서 1동	1-33	34-38	1-38	5	
내덕 2동	1-33	34-37	1-37	4	
읍량·사천동	1-26	27-34	1-34	8	
탑·대성동	1-36	37-38	1-38	2	
산·미·분·수곡동	1-59	60-70	1-70	11	
계	314	47	361	47	

() 분동후에 봉

현 행			개 정			비 고
행정 운영 동명	봉	반	행정 운영 동명	봉	반	
가경·북대동	71	327	북대 1동	26	120	
			가경·북대 2동	45	207	
봉명·송정동	56	261	봉명 1동	23	106	
			봉명 2·송정동	33	155	

영동군의회에서 의결된 영동군면 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1991년 7월 5일

영동군수 김광기 ㉑

영동군 조례 제 1332 호

영동군면 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영동군면 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내무부 지기 02121-5451
'91. 6. 7) 영동군 황금면의 명칭을 " 추풍령면 " 으로 변경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조례의 개정) ① 현행 모든 영동군 조례의 제명과 각
조의 내용중 " 황금면 " 을 " 추풍령면 " 으로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명칭을 변경할 조례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발표)

면 명칭을 변경할 조례

- 영동군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영동군이장정원조례
- 영동군반설치조례
- 영동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 관한조례
- 영동군청사위치에 관한조례
- 영동군보건소조례
- 영동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 영동군세조례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안 번호	6
----------	---

제출년월일 : 1991. 10.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교육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 충청북도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2. 주요골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188,059천원, 지방교육양여금 57,628,000천원, 전입금 839,970천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26,839,396천원, 재산수입 209,134천원, 기타수입 1,286,356천원 등 총 세입재원 339,990,915천원으로 '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적의 편성하여 교육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함.

3. 예산안 : 별 첨

4. 예산편성 부표등 참고자료 : 별 첨

(별첨 12)

1991. 11. 1.

'92年度 忠清北道教育費特別會計

豫算(案)提案說明

忠清北道教育廳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2年度 忠淸北道教育費特別會計 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榮光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提案說明을드리기 전에 1992年度 豫算編成 基本方針을 말씀드리고 '92年度 忠淸北道教育費特別會計 豫算案 規模와 施策別로 主要事業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年度 豫算編成 基本方針으로는

- 健全財政 基調維持
- 硬直性 經費의 增加要因 抑制
- 公·私立學校의 均衡發展
- 直接教育費 優先投資 등에 두고

'92年度 豫算의 主要 重點 施策 事業으로는

- 첫째, 科學·技術教育의 振興

- 둘 째, 實業敎育의 強化
- 셋 째, 社會敎育體育의 強化
- 넷 째, 特性化 敎育의 定着
- 다섯째, 幼兒敎育 및 特殊敎育의 振興
- 여섯째, 敎育與件의 改善
- 일곱째, 公·私立學校 均衡的 發展의 推進입니다.

먼저 1992年度 忠淸北道敎育費特別會計 總 歲入歲出 豫算規模는 3,399億 9,091萬5千원으로 '91年度 豫算 2,998億2,916萬9千원보다 401億6,174萬6千원이增額된 豫算으로 編成하였습니다.

歲入에 있어서는,

地方敎育財政交付金 2,531億 8,805萬9千원, 地方敎育 讓與金 576億2,800萬원, 國庫補助金 2億1,854萬1千원, 寄附金 1千원, 轉入金 8億3,997萬원 등 依存收入이 3,118億7,457萬1千원으로 92%이며.

財産收入 2億913萬4千원, 使用料및 手數料 268億3,939萬6千원으로 授業料7%를 引上, 計上하였으며 實習收入 8億5,139萬7千원, 그리고 雜收入 2億1,641萬7千원 等 自體收入은 281億1,634萬4千원으로 8%입니다.

歲出에 있어서는,

人件費가 2,642億2,513萬원으로 全體豫算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學校運營費는 434億1,129萬원으로 12%이고 現場中心의 教育投資를 위하여 學校基本運營費를 10% 引上 計上하였고, 教育環境改善費는 139億7,305萬원으로 4%, 施設費는 71億4,942萬원으로 2.7%, 教育事業費는 44億 5,496萬원으로 1.3%, 教育行政費는 行政需要의 增加 및 物價 引上 등의 增額要因이 있으나 最大限의 節減을 目標로 33億6,462萬원으로 1%를 計上하였고 豫備費는 34億1,240萬원으로 1%를 計上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重點施策 事業別로 말씀드리면,

첫째, 科學·技術教育의 振興을 위하여

初, 中, 高等學校에 컴퓨터 購入費 3億1,180萬원을

計上하였으며, 5個 教育廳에 컴퓨터教育센터 設置運營費로 1億3,032萬원을 計上하였고 敎員의 컴퓨터研修 1,322名을 計劃하여 教育에 內實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基礎科學敎育의 充實을 기하고자 11個 教育廳에 8,227萬원을 投入 科學資料室을 運營하고 初, 中學校의 科學 및 視聽覺機資材 購入費 1億322萬원, 實驗實習材料費 2億3,054萬원을 投入하는 等, 總 30個 事業에 14億5,232萬2千원을 計上하였습니다.

둘째, 實業敎育의 強化를 위하여

實業系高校에 實驗實習費 3億1,119萬원, 實高生 獎學金 2億6,880萬원을 支援코자 하며, 6개 農高에 附屬施設管理費支援으로 生産物 賣却代 8億5,139萬원을 全額還元하여 自立農高 基盤을 構築하고, 實業系高校 15個校에 實習用 公共料金 1億6,471萬원을 支援하고, 實業敎育에 內實을 기하고자, 總 13個 事業에 18億819萬원을 計上하였습니다.

셋째, 社會敎育體育을 強化코자

全國少年體典 26個 種目 및 全國體典 29個 種目 訓練費支援 및 參加經費로 1億 9,204萬원을 投入코자 하며, 國庫補助事業으로 淸州에서 開催되는 全國體育高等學校 體育大會經費로 15個 種目に 5,333萬원을 計上하고, 14個 種目の 候補選手 育成 및 特別育成 種目を 支援코자 巡廻코치 人件費로 1億2,865萬원을 計上하였습니다.

國民學校 缺食兒童 中食費로 9,103萬원을 支援코자 하며, 特히 國民學校 學生의 給食을 擴大 實施코자 10億2,300萬원을 計上하였고, 大學 非進學者들에 대한 學位取得 試驗經費 2,309萬원 등, 總 39個事業에 11億5,348萬원을 計上하였습니다.

넷째, 高等學校 特性化 教育으로는

英才들을 위한 秀越性教育을 위하여 忠北科學高 運營費로 7,558萬원, 體育選手들의 系列化 및 精銳化를 위한 忠北體育高 運營費로 4億3,730萬원, 語學系列 및 藝能系列의 英才教育을 위한 淸州中央高 運營費로 8,578萬원, 美國 및 日本 등에 學生, 教師 交換研修 1億378萬원과 각 教育廳의 才能教室 및 外國語 教室運營費

1,500萬원, 그리고 國民學校의 藝·體能 教師 專擔制 運營費 502萬원 等, 總 7個 事業에 7億2,247萬원을 投入코자 합니다.

다섯째, 幼兒教育 및 特殊教育의 振興을 위하여

幼兒教育 資料를 開發 普及코자 1,436萬원을 計上하였으며, 373學級の 幼稚園專任講師 人件費 및 運營費로 9億6,367萬원, 資料購入費 1億8,047萬원과 轉入金事業으로 67個 새마을 幼稚園運營費 5億627萬원을 計上코자 計劃하였습니다.

公立特殊學校運營費와 私立特殊學校의 人件費 및 運營費로 22億1,879萬원을 支援코자 하며 學校給食에 따른 給食費 및 施設費로 1億1,157萬원을 投入하는 등, 特殊教育에 總 5個事業 23億3,512萬원을 計上하였습니다.

여섯째, 教育與件改善을 위하여

學生收容施設을 確保코자, 不足教室 66室 增築費 19億2,044萬원, 肢體不自由兒를 위한 惠花學校 移轉費로

13億4,940萬원, 體育高新築費로 15億원을 投入코자하며, 敎員便宜施設로는 敎務室擴充 31室 8億9,280萬원, 休憩室 20室 6億1,800萬원, 舍宅 新·改築 53棟 13億4,800萬원, 敎室煖房改善 2,367室 9億4,740萬원 등 總 40個 事業에 270億 7,205萬원을 計上하였습니다.

일곱째, 公·私立學校의 均衡的 發展을 도모코자

私立中·高等學校 40個校에 153億1,472萬원을 支援코자 합니다.

以上으로 1992年度 忠清北道 敎育費 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아무쪼록, 國庫依存度가 92%에 달하는 우리 敎育費 特別會計의 貧弱한 財源을 勘案하시어 急增하는 財政 需要에 能動的으로 對處하여 敎育의 效果를 높일 수 있

도록, 早速한 時日내에 審議・議決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附 錄 13)

1992 年 度

忠清北道教育費特別會計豫算(案)概要

忠 清 北 道 教 育 廳

目 次

I. '92 豫算 編成 方針	227
II. 財 政 現 況	231
III. 財 源 別 歲 入 · 歲 出 豫 算 編 成 現 況	233
IV. 歲 入 · 歲 出 豫 算 性 質 別 調 書	236
V. 歲 出 豫 算 性 質 別 編 成 內 譯	237

I . '92 豫 算 編 成 方 針

◎ 基 本 方 針

- 建全財政 基調維持
- 硬直性 經費 增加要因 抑制
- 公・私立學校 均衡發展
- 直接教育費 優先投資

◎ 主要事業

○ 科學·技術教育의 振興

- 科學 및 컴퓨터 教育
- 科學資料室 運營
- 컴퓨터 普及 및 센터 運營

○ 實業教育의 強化

- 職業教育課程 運營
- 高校體制 改革
- 實高生 獎學金 支給
- 實高 電算室 運營

○ 社會教育·體育의 強化

- 全國體典
- 全國少年體典

- 獨學學位 取得試驗實施

- 青少年 活動支援

- 特性化 教育의 定着

- 科學 高

- 體育 高

- 中央 高

- 幼兒教育 및 特殊教育의 振興

- 併設 幼稚園 運營

- 새마을 幼兒園 運營

- 特殊學校 運營

- 教育與件의 改善

- 學生收容施設 擴充

- 中·高 教室 增築

- 惠花學校 移轉

· 教員 便宜 施設 擴充

- 教務室 擴充

- 休憩室

- 水洗式 化粧室 擴充

- 教員 舍宅

- 老朽教室 改築

- 教室 暖房

o 公・私立學校の 均衡發展

II 財 政 現 況

◎ 歲 入

(單位：千圓)

款 別	豫 算 額	'91 豫 算 額	增 減 額
1. 財 產 收 入	209,134	1,497,995	Δ 1,288,861
2. 使用料 與 手數料	26,839,396	24,344,101	2,495,295
3. 實 習 收 入	851,397	901,521	Δ 50,124
4. 地方教育 財政交付金	253,188,059	216,432,391	36,755,668
5. 地方教 育 讓 與 金	57,628,000	46,093,000	11,535,000
6. 補 助 金	218,541	1,768,704	Δ 1,550,163
7. 寄 附 金	1	325,230	Δ 325,229
8. 過 年 度 收 入	2	6,064	Δ 6,062
9. 轉 入 金	839,970	1,231,671	Δ 391,701
10. 地 方 教 育 債	1	1	0
11. 雜 收 入	216,413	4,836,930	4,620,517
12. 移 越 金	1	2,391,561	Δ 2,391,560
合 計	339,990,915	299,829,169	40,161,746

◎ 歲 出

(單位:千 元)

款 別	豫 算 額	'91 豫算額	增 減 額
1. 教 育 委 員 會 費	251,225	189,071	62,154
2. 教 育 行 政 費	19,347,985	14,030,143	5,317,842
3. 教 育 事 業 費	4,874,967	3,692,301	1,182,666
4. 學 校 費	290,946,456	206,293,680	84,652,776
5. 施 設 費	7,149,429	12,768,826	△ 5,619,397
6. 教 育 環 境 改 善 費	13,973,058	17,721,896	△ 3,748,838
7. 過 年 度 支 出	7	139	△ 132
8. 轉 出 金	0	12	△ 12
9. 償 還 金	35,384	27,400	7,984
10. 自 治 團 體 에 對 한 交 付 金	0	40,216,414	△ 40,216,414
11. 豫 備 費	3,412,404	4,889,287	1,476,883
合 計	339,990,915	299,829,169	40,161,746

Ⅲ. 財源別 歲入 · 歲出 豫算 編成 現況

예산액 339,990,915

세출액 339,990,915

(단위:천원)

세 입			세 출		
구 분	내 역	금 액	구 분	내 역	금 액
	세 입 합 계	339,990,915		세 출 합 계	339,990,915
1. 국고보조금		185,541	1. 국고보조금사업		185,5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교수 학습방법의 연구 8,000 o 결식아동중식비 지원 91,030 o 대입예체능 특기자 심사 483 o 독학학위 시험경비 23,099 o 순회코치 운영 6,890 o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42,039 o 소년체육대회 10,000 o 급식연구학교 운영비 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교수 학습방법의 연구 8,000 (청주시 3,000, 연구원 5,000) o 결식아동 중식비지원 91,030 o 대입예체능 특기자 심사 483 o 독학학위 시험경비 23,099 o 순회코치 운영 6,890 o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42,039 o 소년체육대회 10,000 o 급식연구학교 운영비 4,000 	
2. 실습수입		851,397	2. 실습수입사업		851,3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생산물매각대수입 (6교) 851,3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생산물 매각대 환원 (농고 6교) <li style="padding-left: 20px;">. 청주농고* 124,944 . 충주농고 289,970 <li style="padding-left: 20px;">. 제천농고 129,745 . 보은농공고 63,179 <li style="padding-left: 20px;">. 영동농공고 128,588 . 진천농고 114,971 	
3. 교육환경개선교부금		13,973,058	3. 교육환경개선사업		13,973,0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교육환경개선교부금 13,973,0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본 청 3,033,763 o 교 육 청 10,939,295 	

세 입			세 출		
구 분	내 역	금 액	구 분	내 역	금 액
4. 전 입 금		839,970	4. 전입금 사업		839,970
	o 자영농과 학생기숙사 식비			o 자영농과 학생기숙사 식비	
	. 내 무 부	18,719		. 내 무 부	18,719
	. 농 립 수 산 부	12,479		. 농 립 수 산 부	12,479
	o 일반회계 전입금	300,000		o 보은 농공고 강당신축 1동	300,000
	o 일반회계 전입금 (시.군)	508,772		o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지원	508,772
5. 가 용 재 원		324,140,949	5. 자 체 사 업		324,140,949
가. 재산수입	o 재산수입	209,134	가. 본청 예산	o 본청, 직속기관, 고등학교	90,179,955
나. 사용료 및 수수료	o 사용료 및 수수료	26,839,396	나. 교육청 예산	o 재원배분 (11개교육청)	229,653,649
	. 입 학 금	161,101		o 교육청 자체사업	894,941
	. 수 업 료	26,403,674	다. 예 비 비		3,412,404
	. 재수수료 및 기타사용료	274,621			
다. 교 부 금	o 교 부 금	239,215,001			
	. 보통교부금	239,215,000			
	. 특별교부금	1			
라. 지방교육 양여금	o 양여금	57,628,000			
마. 부 담 금	o 산업체 특별학급 부담금	33,000			
바. 잡 수 입	o 잡 수 입	216,413			
	. 생산물 매각대	31,478			
	. 변상금 및 위약금	21,038			
	. 예금이자	158,896			
	. 잡 수 입	5,001			

세 입			세 출		
구 분	내 역	금 액	구 분	내 역	금 액
사. 기타수입	o 기타수입	5			
	. 기 부 금	1			
	. 과년도수입	2			
	. 지방교육채	1			
	. 이 월 금	1			

IV. 歲入 · 歲出 性質別 調書

◎ 歲 入	339,990,915
○ 依存收入	311,874,569 (92%)
○ 自體收入	28,116,346 (8%)
◎ 歲 出	339,990,915
○ 人件費	264,225,130 (78%)
○ 行政費	3,364,629 (1%)
○ 教育事業費	4,454,967 (1.3%)
○ 學校費	43,411,298 (12%)
○ 教育環境改善費	13,973,058 (4%)
○ 施設費	7,149,429 (2.7%)
○ 豫備費	3,412,404 (1%)

V. 歲出豫算性質別編成內譯

가. 人 件 費

(單位:千 元)

區 分	豫 算 額	比 率 (%)	備 考
合 計	264,225,130	100	
본 직 고 특 소	청 관 교 교 계	7 5 86 2 100	
교 유 국 중 소	육 치 민 학 교 계	4 2 64 30 100	

나. 行政費

(單位:千원)

區 分	豫 算 額	備 考
합 計	3,364,622	
교 육 위 원 회	136,957	0 법정경비 634,329 포함
공 보 담 당 관	92,197	(정액정보비, 일직수당,
기 획 감 사 담 당 관	74,097	공공요금등)
행 정 관 리 담 당 관	125,300	
총 부 과	395,257	
초 등 장 학 과	38,112	
초 등 교 직 과	19,917	
중 등 장 학 과	57,808	
중 등 교 직 과	12,246	
과 학 기 술 과	16,808	
사 회 교 육 체 육 과	11,764	
행 정 과	58,439	
재 부 과	69,092	
시 설 과	16,748	
교 육 연 구 원	222,507	
과 학 교 육 원	106,842	
단 계 교 육 원	174,100	
도 서 관	168,881	
학 생 회 관	53,077	
학 생 종 합 야 영 장	102,158	
소 계	1,952,307	
11 개 교 육 청	1,412,315	0 법정경비 포함 449,142 일직수당, 공공요금 등)

다. 教育事業費

(單位:千원)

區 分	豫 算 額	備 考
合 計	4,454,967	
기 획 감 사 담 당 관	22,815	
총 무 과	1,643,136	
초 등 장 학 과	110,297	
초 등 교 직 과	165,011	
중 등 장 학 과	109,426	
중 등 교 직 과	392,165	
과 학 기 술 과	365,845	
사 회 체 육 과	415,330	
행 정 과	72,844	
계 부 과	49,965	
소 계	3,346,834	
11개 교육청	1,108,133	

라. 學校費

(單位:千圓)

區 分	校級當基本經費	學校運營費	計	備 考
合 計	8,283,988	35,127,317	43,411,305	
고 등 학 교	1,295,748	12,451,646	13,747,394	
북 수 학 교		2,307,913	2,307,913	
소 계	1,295,748	14,759,559	16,055,307	
유 치 원		1,650,426	1,650,426	
국 민 학 교	5,524,810	8,977,216	14,502,026	
중 학 교	1,463,430	9,740,116	11,203,546	
소 계	6,988,240	20,367,758	27,355,998	

마. 施設費

(單位:千圓)

區 分	豫 算 額	備 考
合 計	7,149,429	
본 청	93,441	
직 속 기관	661,382	
고 등 학 교	2,809,370	
북 수 학 교	1,349,400	
소 계	4,913,593	
교 육 청	55,600	
국 민 학 교	344,299	
중 학 교	1,835,937	
소 계	2,235,836	

바. 教育環境改善費

(單位:千圓)

區 分	豫 算 額	備 考
합 計	13,973,058	
고 등 학 교	3,033,763	
국 민 학 교	7,536,541	
중 학 교	3,402,754	
소 계	10,939,295	

사. 豫備費

(單位:千圓)

區 分	豫 算 額	備 考
합 計	3,412,404	
본 청	3,155,620	
교 육 청	256,784	

1992 年度

忠清北道教育費特別會計

課別・事業別豫算編成現況

忠清北道教育廳

目 次

I. 課別 豫算 編成 總括

II. 課別, 事業別 豫算編成 現況

III. 歲出 豫算 性質別 調書

I. 課別豫算編成總括

가. 人件費

(單位:千圓)

區 分	豫 算 額	比 率 (%)	備 考
合 計	264,225,130	100	
본 청	5,144,242	7	
직 속 기 관	3,457,018	5	
고 등 학 교	55,303,270	86	
특 수 학 교	1,372,520	2	
소 계	65,277,050	100	
교 육 청	8,238,712	4	
유 치 원	5,226,777	2	
국 민 학 교	128,253,547	64	
중 학 교	57,229,044	30	
소 계	198,948,080	100	

나. 行政費

(單位:千원)

區 分	豫 算 額	備 考
합 計	3,364,622	
교 육 위 원 회	136,957	0 법정경비 634,329 포함
공 보 담 당 관	92,197	(정액정보비, 일직수당,
기획감사담 당 관	74,097	공공요금등)
행정관리담 당 관	125,300	
총 부 과	395,257	
초 등 장 학 과	38,112	
초 등 교 직 과	19,917	
중 등 장 학 과	57,808	
중 등 교 직 과	12,246	
과 학 기 술 과	16,808	
사 회 교 육 체 육 과	11,764	
행 정 과	58,439	
재 무 과	69,092	
시 설 과	16,748	
교 육 연 구 원	222,507	
과 학 교 육 원	106,842	
단 계 교 육 원	174,100	
도 서 관	168,881	
학 생 회 관	53,077	
학 생 종 합 야 영 장	102,158	
소 계	1,952,307	
11 개 교 육 정	1,412,315	0. 법정경비 포함 449,142 일직수당, 공공요금 등)

다. 教育事業費

(單位:千 원)

區 分	豫 算 額	備 考
합 計	4,454,967	
기획 감사 담당 관 총 무 과 초 등 장 학 과 초 등 교 직 과 중 등 장 학 과 중 등 교 직 과 과 학 기 술 과 사 회 체 육 과 행 정 과 재 무 과	22,815 1,643,136 110,297 165,011 109,426 392,165 365,845 415,330 72,844 49,965	
소 계	3,346,834	
11개 교육청	1,108,133	

라. 學校費

(單位:千圓)

區 分	校級當基本經費	學校運營費	計	備 考
合 計	8,283,988	35,127,317	43,411,305	
고 등 학 교	1,295,748	12,451,646	13,747,394	
부 수 학 교		2,307,913	2,307,913	
소 계	1,295,748	14,759,559	16,055,307	
유 치 원		1,650,426	1,650,426	
국 민 학 교	5,524,810	8,977,216	14,502,026	
중 학 교	1,463,430	9,740,116	11,203,546	
소 계	6,988,240	20,367,758	27,355,998	

마. 施設費

(單位:千圓)

區 分	豫算額	備 考
合 計	7,149,429	
본 청	93,441	
직 속 기 관	661,382	
고 등 학 교	2,809,370	
부 수 학 교	1,349,400	
소 계	4,913,593	
교 육 청	55,600	
국 민 학 교	344,299	
중 학 교	1,835,937	
소 계	2,235,836	

바. 教育環境改善費

(單位:千圓)

區 分	豫 算 額	備 考
合 計	13,973,058	
고 등 학 교	3,033,763	
국 민 학 교	7,536,541	
중 학 교	3,402,754	
소 계	10,939,295	

사. 豫備費

(單位:千圓)

區 分	豫 算 額	備 考
合 計	3,412,404	
본 청	3,155,620	
교 육 청	256,784	

Ⅰ. 課別, 事業別豫算編成現況

(단위:천원)

과 별	사 업 명	과 목			예 산 액	세항별 설명이 되지
		관	항	세 항		
의사담당관					136,957	
	교육위원회 운영	교육 회 비	교육 회 비	교육 위 원 회 운 영	82,912	11
	의사담당관 운영	교육 회 비	교육 회 비	의사 담 당 관 운 영	54,045	12
공보담당관					92,197	
	일반 사무관리	교육행정비	본청운영비	기획감사행정	4,226	16
	교육 홍보 활동	교육행정비	본청운영비	기획감사행정	87,971	17
기획 감사 담 당 관					96,912	
	일반 사무관리	교육행정비	본청운영비	기획감사행정	27,176	16
	교육시책 추진	교육행정비	본청운영비	기획감사행정	6,553	19
	민원 진정서 처리	교육행정비	본청운영비	기획감사행정	1,119	19
	교육행정 감사	교육행정비	본청운영비	기획감사행정	39,249	19
	교육계획 추진 및 행정제도 개선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 비	기타사업비	9,957	96
	기강감사업무추진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 비	기타사업비	3,910	96
	지역교육 발전 위원회 운영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 비	기타사업비	8,948	96
행정 관 리 담 당 관					125,300	
	일반사무 관리	교육행정비	본청운영비	기획감사행정	13,846	16

(단위:천원)

과 별	사 업 명	과 목			예 산 액	세항별 설명서 페이지
		관	항	세 항		
	교육행정 업무 전산화 추진	교육행정비	본청운영비	기획감사행정	17,066	20
	충북교육정책연보 발간	교육행정비	본청운영비	기획감사행정	7,616	20
	자치법규집 관리	교육행정비	본청운영비	기획감사행정	4,520	21
	의사업무 추진	교육행정비	본청운영비	기획감사행정	15,321	21
	주요업무추진계획	교육행정비	본청운영비	기획감사행정	3,931	21
	행정소송업무추진	교육행정비	본청운영비	기획감사행정	63,000	21
총 무 과					2,131,834	
	일반사무 관리	교육행정비	본청운영비	총무 행정	287,084	22
	청사관리				129,079	
		교육행정비	본청운영비	총무 행정	35,638	27
		시 설 비	기타 시설	본청 시설	93,441	129
	직원체육 및 후생 복지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체육사업비	5,653	66
	차 량 관 리	교육행정비	본청운영비	총무 행정	47,707	27
	각종행사 추진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기타사업비	37,125	83
	연금 및 의료보험 업무추진	교육행정비	본청운영비	총무 행정	7,230	28
	문우회 보조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사회교육비	3,000	63

(단위:천원)

과 별	사 업 명	과 목			예산액	세항별 설명서 페이지
		관	항	세 항		
	일반직공무원공채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시험검정비	1,276	78
	일반직공무원교육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재교육비	85,319	72
	새생활 실천운동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기타사업비	3,140	83
	공무상 제해보상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기타사업비	300,000	83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기타사업비	1,207,623	83
	민원실 운영	교육행정비	본청운영비	총무 행정	4,870	28
	비상대비및민방위	교육행정비	본청운영비	총무 행정	12,728	28
초등장학과					148,409	
	장학사무 관리	교육행정비	본청운영비	초등교육행정	38,112	29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사회교육비	6,500	63
	교원 연수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재교육비	34,000	73
	연구시험학교운영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기타사업비	24,000	84
	교육차관 기자재 인수경비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기타사업비	5,905	84
	학생경시 대회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기타사업비	11,862	84
	벽지학교방문격려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기타사업비	1,300	85
	특수학교교육과정 편성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기타사업비	2,280	85

(단위:천원)

과 별	사 업 명	과 목			예 산 액	세 함 별 설 명 서 페이지
		관	항	세 항		
	유아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육사업비	교육채사업비	기타사업비	14,360	85
	새질서·새생활 실천계획추진	교육사업비	교육채사업비	기타사업비	4,200	86
	여교사 협의회 연수 운영	교육사업비	교육채사업비	기타사업비	890	86
	장학자료발간	교육사업비	교육채사업비	기타사업비	5,000	86
초등교직과					604,928	
	장학사무 관리	교육행정비	본청운영비	초등교육행정	19,917	29
	교원 연수	교육사업비	교육채사업비	재교육비	138,413	74
	교감 면접 고사	교육사업비	교육채사업비	시험검정비	548	78
	국교사 임용시험	교육사업비	교육채사업비	시험검정비	8,967	78
	유치원교사 임용 시험	교육사업비	교육채사업비	시험검정비	7,683	79
	단체교육상 시상	교육사업비	교육채사업비	기타사업비	5,720	82
	교육공무원 포상	교육사업비	교육채사업비	기타사업비	3,680	83
	명예퇴직 수당	교육사업비	교육채사업비	기타사업비	420,000	82
중등장학과					362,378	
	장학사무 관리	교육행정비	본청운영비	중등교육행정	57,808	31
	고등학교입시관리				100,390	

(단위:천원)

과 별	사 업 명	과 목			예 산 액	세 항 별 설 명 서 페이지
		관	항	세 항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시험검정비	64,150	79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일반계고	22,034	100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계고	14,206	108
	고교특성화 입시 제도개선세미나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기타사업비	720	86
	학생 생활 지도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기타사업비	15,380	86
	학생선도학부모 교실운영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기타사업비	5,800	87
	방송통신고등학교	학 교 비	학교운영비	기타 학교	136,496	119
	연구시범학교운영				16,000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기타사업비	2,000	84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일반계고	12,000	101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계고	2,000	109
	민주시민교육연구 회 지원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기타사업비	2,000	87
	제2외국어 특별 교실운영				5,408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일반 계고	4,056	101
		학 교 비	사학 지원	고등 학교	1,352	125
	고등학교 외국어 학력경시대회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기타사업비	5,342	87
	대입학력 고사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시험검정비	2,764	79
	조국순례 대행진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기타사업비	1,850	87
	진로교육 담당자 연수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계 교 육 비	680	75

(단위:천원)

과 별	사 업 명	과 목			예 산 액	세 할 별 처 설 명 서 태 이 지
		관	항	세 항		
	교수·학습방법 전환 세미나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 비	기타사업비	2,350	88
	합주반 운영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 계고	3,000	109
	대학 수학능력 실험평가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 비	기타사업비	3,390	88
	국립 묘지 참배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 비	기타사업비	3,000	88
중등교직과					554,411	
	장학사무 관리	교육행정비	본청운영비	중등교육행정	12,246	31
	중등 교원 연수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 비	재 교육 비	255,867	75
	고입고졸검정고시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 비	시험검정비	20,874	80
	중등교원임용시험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 비	시험검정비	35,160	81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 비	시험검정비	260	82
	한·미교사 학생 교환 연수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 비	기타사업비	80,004	88
	명예퇴직 수당	학 교 비	급여관리	일반 계고	150,000	97
과학기술과					3,175,586	
	장학사무 관리	교육행정비	본청운영비	중등교육행정	16,808	31
	교원 연수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 비	재 교육비	134,202	76
	교육차관기자재 관리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 비	기타사업비	15,781	92

(단위:천원)

과 별	사 업 명	과 목			예 산 액	세 항 별 설 명 서 페이지
		관	항	세 항		
	전국기능경기대회	교육사업비	교육제사업비	기타사업비	12,250	89
	컴퓨터 경진대회	교육사업비	교육제사업비	기타사업비	1,617	89
	과학주간 행사	교육사업비	교육제사업비	기타사업비	3,395	89
	청소년과학경진대회	교육사업비	교육제사업비	기타사업비	948	90
	수학·과학 경시대회	교육사업비	교육제사업비	기타사업비	4,765	90
	한국우주소년단지원	교육사업비	교육제사업비	기타사업비	1,000	91
	상고 실무능력평가회	교육사업비	교육제사업비	기타사업비	2,354	91
	모범영능 학생 해외연수	교육사업비	교육제사업비	기타사업비	1,650	91
	실과교사 선진시 견학	교육사업비	교육제사업비	기타사업비	450	91
	과학실험실저수조 설치	교육사업비	교육제사업비	기타사업비	27,000	91
	가사실 생활관 내부시설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 계고	2,300	109
	'92 컴퓨터 교육 지원				150,380	
		교육사업비	교육제사업비	기타사업비	51,960	91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일반 계고	75,840	101

(단위:천원)

과 별	사 업 명	과 목			예 산 액	세 항 별 설 명 서 페이지
		관	항	세 항		
		학 교 비	사 학 지원	고 등 학 교	22,580	125
	연구시범학교운영				36,000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기타사업비	30,000	84
		학 교 비	학 교 운영비	일 반 계 고	6,000	101
	상고 전산실 운영				36,603	
		학 교 비	학 교 운영비	일 반 계 고	19,103	102
		학 교 비	사 학 지원	고 등 학 교	17,500	125
	영농학생전진대회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기타사업비	7,536	92
	컴퓨터유지비지원				11,189	
		학 교 비	학 교 운영비	일 반 계 고	7,189	102
		학 교 비	학 교 운영비	실 업 계 고	4,000	109
	상고타자기 구입 관리	학 교 비	학 교 운영비	일 반 계 고	7,000	102
	학과개선에 따른 실험실습실 시설	학 교 비	학 교 운영비	일 반 계 고	10,000	102
	생활관중심학교 운영	학 교 비	학 교 운영비	일 반 계 고	3,000	103
	실고실험실습비				311,190	
		학 교 비	학 교 운영비	일 반 계 고	7,590	103
		학 교 비	학 교 운영비	실 업 계 고	303,600	109
	실고생 장학금				268,800	

(단위:천원)

과 별	사 업 명	과 목			예 산 액	세항별 설명서 페이지
		관	항	세 항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일반계고	61,900	103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계고	129,200	110
		학 교 비	사학지원	고등학교	77,700	125
	부속시설 관리비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계고	851,397	110
	기숙사 운영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계고	54,281	111
	자연농과 운영비 및 기숙사 식비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계고	61,916	111
	폐수처리장 운영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계고	6,000	112
	산학협동현장실습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계고	7,800	112
	농고자립채채추진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계고	12,000	112
	농기계구입비지원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계고	12,000	112
	청원산림보호직 경비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계고	16,310	113
	농업기계공동실습 실 운영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계고	17,445	113
	실고내부시설비	시 설 비	학교시설	고등학교시설	318,000	127
	기숙사내부시설	시 설 비	학교시설	고등학교시설	19,000	127
	종합생활 건립	시 설 비	기타시설	교육지원기관 시설	661,382	129
	농고목장인부관리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계고	900	110

(단위:천원)

과 별	사 업 명	과 목			예 산 액	세 항 별 서 제 이 지
		관	항	세 항		
	교육차관기자재 인 수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 비	기타사업비	70,937	84
사회 교육					691,020	
체 육 과	장학사무 관리	교육행정비	본청운영비	중등교육행정	11,764	31
	청소년 활동				16,242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 비	사회교육비	15,069	64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 비	계 교 육 비	1,173	77
	학원 운영 지도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 비	사회교육비	2,450	65
	도서관 업무지도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 비	사회교육비	1,386	65
	독학 학위취득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 비	사회교육비	23,099	65
	법인지도 감독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 비	사회교육비	1,220	66
	충북소년체육대회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 비	체육사업비	36,810	66
	전국소년 체전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 비	체육사업비	97,584	67
	전국체전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 비	체육사업비	94,460	68
	교육감기대회지원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 비	체육사업비	3,100	69

(단위:천원)

과 별	사 업 명	과 목			예 산 액	새 항 별 설 명 서 페이지
		관	항	세 항		
	육상경기대회지원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체육사업비	2,000	69
	각종전국대회출전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체육사업비	4,000	70
	학교체육연구논문 심사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체육사업비	250	70
	상급학교입시내신 체력 검사				10,400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체육사업비	2,645	70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일반 계고	6,105	103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 계고	1,650	113
	학교간 경기대회				14,114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체육사업비	4,614	71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일반 계고	5,500	103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 계고	2,000	114
		학 교 비	사학지원	고등학교	2,000	125
	학교보건및 급식 관 리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체육사업비	9,110	71
	국교중식아동급식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체육사업비	91,030	72
	교원 연수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재교육비	11,330	77

(단위:천원)

과 별	사 업 명	과 목			예 산 액	세 항 별 설 명 서 페이지
		관	항	세 항		
	연구시범학교운영				18,000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체육사업비		14,000	72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일반계고		2,000	103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계고		2,000	109
	학교체육활동지원				7,400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일반계고		5,000	103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계고		1,200	114
	학 교 비	사학지원	고등학교		1,200	125
	전국체육고교체육대회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일반계고	53,335	104
	학교음료수 관리				2,400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일반계고		960	104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계고		1,440	114
	특수학교급식운영				111,577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계고		51,986	117
	학 교 비	사학지원	특수학교		59,591	126
	순회코치 운영				67,959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일반계고		53,396	104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계고		14,563	114

(단위:천원)

과 별	사 업 명	과 목			예 산 액	세항별 설명서 페이지
		관	항	세 항		
행 정 과					78,608,331	
	인 건 비				64,707,050	
	교육 위원 회 비	의사담당관 운영	급여관리		114,268	12
	교육행정비	본청운영비	급여관리		4,459,974	15
	교육행정비	교육 지원 기관 운영	급여관리		3,457,018	36
	학 교 비	급여관리	일반계고		55,303,270	97
	학 교 비	급여관리	특수학교		1,372,520	98
	교금당 경비				959,820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일반계고		634,600	105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계고		314,340	114
	학 교 비	학교운영비	기타학교		10,880	120
	기관운영비				335,928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일반계고		220,080	105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계고		103,848	114
	학 교 비	학교운영비	기타학교		12,000	121
	업무용 교통비				129,600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일반계고		82,800	105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계고		39,600	115

(단위:천원)

과 별	사 업 명	과 목			예 산 액	세 항 별 설 명 서 페이지
		관	항	세 항		
		학 교 비	학교운영비	기타학교	7,200	121
	기관차량운영비				23,364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계고	20,028	115
		학 교 비	학교운영비	기타학교	3,336	121
	실습용 공공요금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계고	164,714	115
	육성회 수당				67,977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일반계고	6,532	108
		학 교 비	학교운영비	특수학교	24,725	118
		학 교 비	학교운영비	기타학교	36,720	121
	건물유지비				489,654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일반계고	246,817	105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계고	232,330	116
		학 교 비	학교운영비	기타학교	10,507	122
	수세식변소 관리				136,203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일반계고	95,578	106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계고	38,786	116
		학 교 비	학교운영비	기타학교	1,839	122
	실험실습비				193,864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일반계고	60,764	107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계고	132,066	115
		학 교 비	학교운영비	기타학교	1,034	121
	영세 학교운영비 보조				37,634	

(단위:천원)

과 별	사. 업 명	과 목			예산액	세항별 설명서 페이지
		관	항	세 항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일반계고	14,802	106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계고	22,832	117
	노후책결상 교채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일반계고	4,046	106
	사립고 계정결함 보조	학 교 비	사학지원	고등학교	7,360,381	125
	사립특수학교운영	학 교 비	사학지원	특수학교	2,147,368	126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				642,843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일반계고	24,633	106
		학 교 비	사학지원	고등학교	618,210	125
	공립 특수학교 부상 교과서	학 교 비	학교운영비	특수학교	4,754	
	체육고 운영	학 교 비	학교운영비	기타학교	437,300	122
	과학고 운영	학 교 비	학교운영비	기타학교	75,586	123
	중앙고 운영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일반계고	85,787	107
	혜원학교 운영	학 교 비	학교운영비	특수학교	49,032	118
	혜화학교 운영	학 교 비	학교운영비	특수학교	22,393	119
	일반사무 관리	교육행정비	본청운영비	관리행정비	58,439	33
	교북계정 운영	교육사업비	교육제사업비	기타사업비	51,296	93

(단위:천원)

과 별	사 업 명	과 목			예 산 액	세 항 별 설 명 서 페이지
		관	항	세 항		
	사학기관 운영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기타사업비	4,595	93
	벽지학교조정업무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기타사업비	2,660	94
	학교설폐업무추진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기타사업비	14,293	94
	학교운영비 보조				183,750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일반계고	127,500	108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계고	56,250	117
	교재·교구구입비				98,000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일반계고	68,000	108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계고	30,000	117
	교원 업무경감 행정장비 지원				120,000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일반계고	75,000	108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계고	45,000	117
재 무 과					150,745	
	일반사무 관리				29,853	
		교육행정비	본청운영비	관리행정	29,253	33
		교육사업비	교육재사업비	기타사업비	600	94
	재해복구공제회비				36,143	
교육행정비		본청운영비	관리행정	4,455	36	

(단위:천원)

과 별	사 업 명	과 목			예 산 액	세 항 별 설 명 서 페이지
		관	항	세 항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일반계고	14,092	108
		학 교 비	학교운영비	실업계고	17,596	117
	교육재산 관리	교육사업비	교육재산업비	기타사업비	24,500	95
	농어가 자녀학비 지원	교육사업비	교육재산업비	기타사업비	1,320	95
	에너지 절약 및 물품관리	교육사업비	교육재산업비	기타사업비	2,100	95
	일시차입금 이자	상 환 금	상 환 금	상 환 금	35,384	132
	청주권역 공업계 학교 재배치	교육사업비	교육재산업비	기타사업비	21,445	95
시 설 과					6,872,281	
	일반사무 관리	교육행정비	본청운영비	관리행정	16,748	33
	'92고등학교 교실 증축	시 설 비	학교시설	고등학교	261,100	128
	체육고 신설	시 설 비	학교시설	고등학교	1,500,000	128
	혜화학교 이전	시 설 비	학교시설	특수학교시설	1,349,400	129
	보은농고강당신축	시 설 비	학교시설	고등학교	300,000	128
	기타학교 시설	시 설 비	학교시설	고등학교	411,270	128
	교육환경개선사업				3,033,763	

(단위:천원)

과 별	사 업 명	과 목			예 산 액	세항별 설명서 페이지
		관	항	세 항		
		교육 환경 개선비	학교시설	고등학교시설	1,928,443	130
		교육 환경 개선비	사학지원	고등학교	1,105,320	131
사 업 소	교육연구원 운영	교육행정비	교육 지원 기관 운영	교육연구원 운영	222,507	37
	과학교육원 운영	교육행정비	교육 지원 기관 운영	과학교육원 운영	106,842	45
	단체교육원 운영	교육행정비	교육 지원 기관 운영	단체교육원 운영	174,100	49
	중앙도서관 운영	교육행정비	교육 지원 기관 운영	중앙도서관 운영	168,881	53
	충북학생회관운영	교육행정비	교육 지원 기관 운영	충북학생회관 운영	53,077	57
	학생종합야영장 운영	교육행정비	교육 지원 기관 운영	학생종합야영 장 운영	102,158	59

Ⅲ 歲出豫算性質別調書

(단위:천원, %)

구분	예산액	인건비		행정비		교육사업비		학교비		교육환경개선비		시설비		기타 (존치과목)	예비비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합계	339,990,915	264,225,130	78	3,364,622	1	4,454,967	1.3	43,411,298	12	13,973,058	4	7,149,429	2.7	7	3,412,404	1
본청	97,734,474	65,277,050	68	1,952,307	2	3,346,834	3	16,055,307	16	3,033,763	3	4,913,593	5		3,155,620	3
청주	54,679,227	44,883,149	82.1	183,146	0.3	174,601	0.3	6,257,882	11.4	1,676,674	3.1	1,467,183	2.7		36,592	0.1
충주	33,668,328	27,378,405	81.3	144,965	0.4	115,277	0.4	4,061,925	12	1,607,695	4.8	330,434	1		29,627	0.1
제천	24,634,870	20,409,839	82.8	174,041	0.7	100,893	0.4	2,795,967	11.3	1,073,177	4.4	53,734	0.2		27,219	0.1
청원	22,352,258	19,351,999	86.5	109,081	0.5	87,689	0.4	1,902,385	8.5	772,794	3.5	106,752	0.5		21,558	0.1
보은	14,192,504	12,096,543	85.2	100,705	0.7	64,120	0.5	1,373,364	9.7	506,396	3.6	35,844	0.3	1	15,531	0.1
옥천	15,987,418	13,645,041	85.3	123,762	0.8	113,981	0.7	1,344,238	8.4	740,076	4.6	5,000		1	15,319	0.1
영동	15,217,365	11,614,749	76.3	106,433	0.7	89,421	0.6	2,540,284	16.7	812,411	5.3	35,600	0.2		18,467	0.1
진천	12,455,758	10,414,783	83.6	114,982	0.9	77,478	0.6	1,051,861	8.4	687,338	5.5	89,193	0.7		20,123	0.2
괴산	22,087,956	17,593,090	79.6	144,861	0.6	107,072	0.5	2,500,605	11.3	1,666,176	7.5	43,422	0.2	4	32,726	0.1
음성	14,810,403	11,474,213	77.5	109,710	0.7	103,901	0.7	2,210,278	14.9	852,584	5.8	35,000	0.2		24,717	0.2
단양	12,170,354	10,086,269	82.8	100,629	0.8	73,700	0.6	1,317,202	10.8	543,974	4.5	33,674	0.3	1	14,905	0.1

(별첨 15)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1991. 11. 8.)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소위원회

목 차

1.	심사경과.....	271
2.	제안설명의 요지.....	271
3.	질의 및 응답요지.....	271
4.	토론요지.....	271
5.	심사보고 요지.....	271
6.	수정안의 요지.....	275
7.	심사결과.....	275
8.	소수의견 요지.....	275
첨부	1. 1992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	276
	2. 질의 및 응답요지.....	279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1991년 11월 8일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1년 10월 23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1년 11월 1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 제4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정기회 제2차 예산 소위원회 상정 및 질의 (1991년 11월 7일)
○ 제3차 예산 소위원회 질의·수정안 제안설명 및 의결(1991년 11월 8일)

2. 제안설명의 요지: 본회의 제안 설명후 세부사항 소위에서 추가 설명 받음

3. 질의 및 응답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 의 자	요 지	질 의 자	요 지
	별	첨	

4. 토론요지: 질의와 병행 진행

5. 심사 보고 요지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건전재정 기초유지,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 억제, 공·사립간 균형있는 투자, 직접 교육비에의 우선 투자 등을 심의 기본원칙으로 하여, 합리적 예산편성 여부를 심의 하였음.
- 총 예산 339,990,915천원중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예산편성 기본 방향에 의거 인건비에 78%, 행정비에 1%, 교육사업비에 1.3%, 학교운영비에 12%, 교육환경개선비에 4%, 시설비에 2.7%, 예비비에 1%를 계상하여 건전하게 편성되었음.
-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컴퓨터 구입비 3억 1,180만원, 5개 교육청 컴퓨터 교육센터 설치운영비로 1억 3,032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과학 충실을 위하여 11개 교육청에 8,227만원, 초·중학교 과학 및 시청각 기자재 구입비 1억 322만원, 실험실습재료비 2억 3,054만원을 투입하는 등 총 30개 사업에 14억 5,23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당년 25,000원의 국민학교 실험실습 재료비로는 기초 과학 진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 학생수용시설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 내용을 확인한 바, 부족교실(66실) 증축비 19억 2,044만원을 계상하여 '92년도 학생수용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 학교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검토한 바, 교·금당 경비외에 업무용 교통비, 건물유지비, 수세식변소관리비, 대교간경기경비, 운동회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고, 예산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학교 교육비로 통합 지원 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음.
- 판공비, 정보비, 보상금 등 소모성 경비와, 수용비 등 경상비는 소모성 경비 억제 및 과소비 추방운동의 일환으로 과다한 계상분에 대하여는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전년도 예산에 미치지 못하게 계상되었음.
-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하여 폐수 처리시설 대상 학교에 대한 환경보존시설 설치비는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는 17개 학교중 화공과가 설치되어 폐수처리 시설이 시급한 부강공고, 보은농공고, 단양공고 등 3개교에 대하여 우선 계상하였는 바, 추후 예산증액시 다른 실험실 보유 학교에 대한 환경보존시설 설치비의 확보가 요구됨.

○ 교원연수시의 여비 지급액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편성하였는지를 검토한 바, 일당 15,000 원씩(비봉근 지역) 계상한 것을 확인 하였는바, 교원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삭 감 액: 1억원

○ 삭감내역

- 기타사업비중 공무상 재해보상금 1억원
계 1억원

○ 삭감사유

공무로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재해보상금은 공무원 연금법상 공무상 재해 부조금 지급, 장해보상금 지급 등의 제도가 있고, 재판에 의한 채소시 배상금으로 집행되는 사례도 있어, 재판전 화해 등에 의거 보상금의 지급이 요구 될 경우만 집행되는 예산으로서의 성질로 보거나, '91년도중의 집행액 내역(1억5천만원) 수준으로 보아 '92년도중의 집행 예상액으로서는 과다하게 책정 된 것으로 판단되기, 일정액을 삭감 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92년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기초과학 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평가

○ 1992년도 총 세입액 3,399억 9,091만5천원중 92%인 3,118억 7,457만 1천원이 의존수입 이고, 자체수입은 281억 1634만4천원인 8%에 불과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관공비, 정보비, 보상금, 수용비 등의 소모성 경비에 대하여는 전년도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계상액 자체가 전년도 수준에 못미쳐 계상된 예산액을 인정하였고,

○ 세출예산중 2,642억 2,513만원이 인건비로, 총세출액의 78%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운영비 434억 1,129만원(12%)과 교육환경개선비 139억 7,305만원(4%), 시설비 71억4,942만원(2.7%) 등의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는 교육사업비와 교육행정비는 2.3% 수준인 78억 1,958만원으로 적은 예산에 의한 효율적인 교육행정수행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원연수, 학생 경시대회, 연구 및 시범학교 운영, 장학금 지급, 장학자료 개발 등의 경비 지원과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교육공무원포상, 명예 퇴직, 교원해외연수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장비 지원,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컴퓨터 교육 지원비, 또한 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실고 실험실습비, 실고 내부시설비의 지원, 그리고 종합생활관 건립비, 체육활동비, 학교급식비, 사립학교 보조 등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편성하여 건전 재정이 되도록 노력한 바,
- 향후 세출예산의 집행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낭비요인의 사전제거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토록 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거론된 제 문제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임.

6. 수정안의 요지

-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1. 11. 8. 예산소위원회 위원장 김사수 외 4명
- 수정이유: 기타사업비에 계상된 공무상 재해보상금 3억원은 예년의 집행실적('91년도 집행액 1억 5천만원)등에 비추어 과다하게 계상되었기 이증 1억을 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92 추가 경정예산 편성시 기초 과학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학교 과학 실험실습 재료비에 반영 하고자 함.
- 수정 주요 골자: 기타사업비중 재해보상금 3억원을 2억원으로 하고, 예비비 3,412,404천원을 3,512,404천원으로 함.

7.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시·도에 설치예정인 지방교육발전위원회 예산 8,948천원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교육자치 시대의 주역으로서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제도화 된 입장에서 그 필요성이 의문시 되는 바, 계상액 전액을 삭감 할 것을 건의.

(김응복 위원)

첨부서류 : 1.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 1부.

1991. 11. 8.

예산 소위원회

위원장	김	사	수
간사	이	상	일
위원	이	재	희
위원	김	응	복
위원	이	근	수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

제출년월일 : 1991. 11. 8.

제 출 자 : 예산소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불요불급한 세출과목을 감액할 필요가 있어 수정 동의안을 제안함.

2. 주요골자

기타 사업비 공무상 재해보상금 300,000천원중 100,000천원을 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함.

3. 수정 동의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용 참조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

1992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한다.

장) 본청 관) 교육사업비 항) 교육제사업비 세항) 기타사업비 증

공무상 재해보상금 300,000천원을 200,000천원으로 한다.

장) 예비비 관) 예비비 항) 예비비 세항) 예비비 증

3,412,404천원을 3,512,404천원으로 한다.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용

(단위 : 천원)

과 목				교육감 제출안	수 정 안	증 감	비 고
장	관	항	세 항				
본	청			94,578,854	94,478,854	△ 100,000	
	교	육		3,766,834	3,666,834	△ 100,000	
	사	업		3,766,834	3,666,834	△ 100,000	
		비					
		교	육	3,766,834	3,666,834	△ 100,000	
		제	사				
		사	업				
		비					
			기	2,546,188	2,446,188	△ 100,000	· 재해보상금 삭감
			타				
			사				
			업				
			비				
예	비	비	예	3,412,404	3,512,404	100,000	
비	비	비	비				
비	비	비	비				
비	비	비	비				
세 출 합 계				339,990,915	399,990,915	0	

○ 질의 및 응답요지(1일차)

1991. 11. 7.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 의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김 사 수	○ 수업료 납부 실적 및 결손액은	행정과장	○ 결손액 거의 없으며, 일반계는 95%, 실업계는 85%를 계상함
	○ 교육 월보는 어떻게 배부하는지		○ 본청 5급 및 장학사이상과 하급 교육청 6급이상 각 1부씩 배부하고 학교는 10학급미만 2부, 10-20학급 3부, 30-40학급 4부, 50학급이상 5부씩 배부 함.
	○ 지역 교육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여부 및 임기는, 그리고 규칙·규정상 활동범위는	기획감사담당관	○ 구체적인 지침은 없으나 지난 교육부에서의 예산담당자 회의시 교육감자문기관으로 예산에 반영토록 함.
	○ 일반행정비와 사업비로 구분하여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는지	행정과장	○ 과목해소상 사업비는 교육사업비(기타제비등)에 계상함.
	○ 행정소송 변호사비 등 업무추진비 내역과 그 판결 시기는	행정관리담당관	○ 보은 이식국교 기능직사망(연탄가스 중독)에 따른 민사소송과 관련, 소송청구액의 30% 계상하였고, 판결시기는 금년말 또는 '92년 초로 예상됨. (6차 변론 종료)
	○ 연수여비는 교원과 일반직이 동일 수준인지	행정과장	○ 동일 수준임. 다만, 계획인원을 초과할 경우는 부족됨.
○ OECF 교육차관기자제 도입내역 및 도입국은	초등장학과장	○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 특수학교의 기자제 구입에 따른 경비이며, 기자제는 교육부에 요청, 공동구입 인수하는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 의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장학파소관 행사증 불필요한 것은 없는지 또는 각종 응변대회(봉일안보, 교육감기 등)를 통합할 수 없는지 ○ 국교에서 실시하는 다국어 구화대회의 효과는 ○ 고교입시관리 경비를 시험검정비, 일반계고교, 입시관리비, 실업계고교 입시관리비 등으로 나누어 계상한 이유는 ○ 소년체육대회가 내년에 부활되는지 ○ 선수훈련비 지원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장학파장 " 중등장학파장 사회교육체육과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로서는 꼭 필요한 행사만 하고 있고, 응변대회는 그 성격과 행사시기가 달라 통합이 어려움. ○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을 내용으로 하며 상당히 성과가 큼. ○ 학교에서는 원서접수와 시험을 관리하고 체점 및 학교배정은 도교육청에서 담당하므로 도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과 각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구분됨. ○ 부활됨 ○ 소년체전은 개인종목 1일 6천원씩 10일분이고, 단체종목 1일 5천원씩 7일분이며, 전국체전은 20일간 개인종목 7천원, 단체경기 6천원씩임.
이 상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입예산증 기부금이 전년도에 비하면 줄어든 이유는 ○ 사학지원과 관련하여 지나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창회나 지역주민 등이 특정 사업을 위하여 기부할 경우 추경등에 반영하며, 전년도 예산내역은 문의국교 급식소 설치, 충주농고 강당 신축 경비등에 대한 기부금임 ○ 과거 정부에서 장려하여 설립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 의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p>지원은 아닌지 또한 최근 설립되는 사학지원의 필요성은</p> <p>○ 소송 업무추진 예산과 관련 손해배상금 계상에 있어 안전공제회와 관련은 없는지</p> <p>○ 유아교육 자료개발 보급 내용은</p> <p>○ 국립모지 참배대상은</p> <p>○ 사회단체 지원기관 및 지원금은</p> <p>○ 독학학위 취득 경비의 재원은</p>	<p>행정관리 담당 관</p> <p>초등장학 과 장</p> <p>중등장학 과 장</p> <p>사회교육 체육과장</p> <p>"</p>	<p>법인등은 사학기관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이 적은 경우가 있으나,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따른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최근 설립되는 사학은 지원액의 차이는 있으나 고교 평준화등의 관계로 지원이 불가피함</p> <p>○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시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므로 패소시 손해배상금등이 필요함</p> <p>○ 기본생활 습관지도 내용등 유치원 운용자료, 현장연수자료 등의 공동제작 경비임.</p> <p>○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대전(유성)국립모지를 참배함.</p> <p>○ 청소년연맹,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적십자사, 해양소년단등 5개기관에 백만원씩 5백만원을 지원함.</p> <p>○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됨.</p>
이 계 회	<p>○ 생산물매각대 수익금액이 추곡수매가 인상등 물가가 인상됨에도 전년도에 비해 감액된 이유는</p>	행정과장	<p>○ 생산물의 수확량 추계가 어려워 당초예산의 실제 수입보다 적게 계상되나, 납부액 증가시 추가로 증액함.</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 의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잡금을 쓰지 않고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등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 과별 기본여비의외에 사업별 여비가 있는데 이는 중복계상이 아닌지 ○ 광산공고 합주반 운영지원 예산내역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과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통계연보 발간등과 같이 단기적으로 많은 일을 처리할 경우는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는 감당하기 어려우며 상고 졸업생등을 활용함. ○ 사업추진 부서는 기본여비 이외에 실경비를 인정함. ○ 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악기교체, 보수 등 경비임.
김 응 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사업비가 금년대비 79.3%가 증액된 요인은 ○ 기관운영판공비 지급 기준은 ○ 초등장학과 예산이 금년대비 53,987천원이 감액된 이유는 ○ 해외연수에 많은 교직원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과 국고 지원 실패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초등장학과 장 행정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퇴직(4억2천만원)및 공부상 재해보상금(3억원)으로 91년도에는 각시·군에 계상하였으나, 92년부터 본청 예산에 계상함으로 인한 증액이 그 요인임. ○ 과장은 월 5만원이고 직원은 연 2만5천원임 ○ 기자제도입을 위한 사업비가 감소되었고 본청 장학관 및 장학사 기관운영판공비 일괄 계상분을 각과별로 구분하여 계상하였기 때문임. ○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고 해외연수후의 근무자세가 발전적으로 변화되는 등 애국심과 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 의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지학교 방문 격려는 대개 누가 하는지 ○ 단재교육상 시상금 내역은 	<p>초등장학 과 장 행정과장</p>	<p>명감등의 고취에 긍정적이고 교원래의연수의 경우는 국고 50%, 지방비 50%로 증당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이 주로 격려함 ○ 사도상, 학술상, 공로상은 1인당 백만원씩 지급되고, 학생은 면학, 충효, 봉사상에 대하여 1인당 30만원씩 지급함.
이 근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매각대를 당해 기관에 환원하여 주는지, 10%정도 감액하여 환원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 사유는, 또한 그기관에 기부된 재산을 매각하였을 경우의 환원 여부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교육청분은 전액 환원하고 있으며, 고교의 경우 약간 적게 환원되는 경우가 있으나, 다른 예산등이 배부되므로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기부된 재산은 매각시 전액 환원하고 있음.

○ 질의 및 응답요지(2일차)

1991. 11. 8.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요 지	답변자	요 지
김 사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보유현황과 연수경비등 컴퓨터교육을 위한 '90년도 연수경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 교원 연수시 강사수당은 지급액이 동일하게 지급되는지 ○ 차관기자재 관리 예산 활용은 불가능 한것은 아닌지 또한, 예산 반영시 차관기자재의 수선이 가능한지 그리고, 차관기자재를 도입후 미활용 하는 경우는 없는지 ○ 교사들의 컴퓨터교육 이수후 담임, 수업등의 이유로 사후 학생지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 투자에 비하면 그 성과는 어떠한지 	<p>과학기술과</p> <p>"</p> <p>"</p> <p>중등교육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년도부터 컴퓨터보급 및 교육 실시로 총경비에 관한 자료제출은 곤란하지만, 컴퓨터 보유현황과 '90년도 연수경비에 관한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음. ○ 일률적으로 동일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외래강사로 교수를 초빙할때는 3만5천원, 교사는 1만원 지급함. ○ 교육부 주관으로 전국적인 기자재 정비로 불용물품은 불용결정 후 폐기처분 하고 있고, 수선은 개방대학등에서 주로 수선하고 자체 수선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증전의 도입방법과 달리 품목선정 자체를 교장들이 직접 하므로 사장되는 경우는 없음. ○ '96년까지 초·중·고에 대한 컴퓨터 보급이 완료됨으로 지도 교사 양성을 위하여 계속적인 컴퓨터교육이 필요하고, 교육부 지시로 국민학교 교사 전원이 컴퓨터교육을 이수토록 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은 3단계로 기본과정 30시간, 전문과정 60시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 의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김 사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입금이자 상환에 대한 예산 절감 방법은 ○ 체육고 기숙사 보수비 삭감이후 그 대책은 ○ 해화학교 위치는 결정되었는지 ○ 청주교육청 기술직(건축기사등)은 부족하지 않은지 ○ 2부제수업의 해소를 위한 공사 조기발주 추진대책 마련은 ○ 국민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있는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과장 시설과장 " " 행정과장 과학기술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화과정 120시간으로 교원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이수자는 약 60%에 달하고, 전국적으로 컴퓨터담당장학사의 정원을 확보한 곳은 우리 도 뿐임. ○ 자금의 적기 송금과 여유자금을 고수익성 예금에 예치하여 차입이자를 절감토록 노력하겠음. ○ 도청·시청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체육고 신축(본관 및 기숙사)사업을 추진 하겠음. ○ 기계공고와 같은 곳으로 이전 예정임. ○ 다른 시·군에 비하여 사업량은 많으나 공사현장면에서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됨. 특히, 타시·군의 경우는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있으나 청주의 경우는 대형 공사로 집중되어 있음. ○ 학생수용계획 수립시 학교신설 3교, 91추경시 교실증축(30실) 예산을 확보하여 2부제수업 해소 예정이며, 공사 조기착공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 국민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있는 실험실습 소요예산 비용은 우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 의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김 사 수	<p>료비(초자, 시약, 기타재료)의 산출 자료는 있는지</p> <p>○ 연간 실험실습 재료비가 25,000 원정도뿐이 안되는데 무슨 실험을 하겠는가, 좀더 확충할 방안은</p> <p>○ 학생회관 사업비 내역을 보면 운영비가 적게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지장은 없는지</p> <p>○ 교·급당경비 편성 기준은</p> <p>○ 학교운영비를 더 지원 할 수는 없는지</p>	<p>과학기술과 과 장</p> <p>행정과장</p> <p>"</p> <p>"</p>	<p>들이 산출해 놓은 것이 있으나, 현재 이자리에는 없는 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음.</p> <p>○ 과학기술과 예산은 거의가 국고 보조로 이루어 지는데 앞으로 과학의 진흥을 위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과학기자재보내기 운동을 실시하여 금년도 12월까지 5억원을 목표로 하여, 우리 교직원 일동도 1인당 1만원이상씩 모금을 하였고, 교육부 산하에서부터 이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과학진흥을 도모하고자 노력중임.</p> <p>○ 기본적인 운영비는 요구대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됨.</p> <p>○ 교당경비는 '91년도에 629만원이고, '92년도에는 692만원이며 급당경비는 '91년도에 60만원이고, '92년도에는 66만원으로 10%인상함.</p> <p>○ 교·급당경비 이외에 업무용 교통비, 건물유지비, 수세식 변소관리비, 대교경비, 운동회 경비 등이 학교별로 지원되며, 예산 집행의 편의를 위해 학교교육비</p>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 의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김 사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용 교통비 지급은 ○ 고등학교 실험실습비 지원은 ○ 교원업무 경감 행정장비 지원 내역은 ○ 하급교육청의 예산편성 지침은 ○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년에 이것이다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예정 금액으로 예비비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닌지 	<p>행정과장</p> <p>"</p> <p>"</p> <p>"</p> <p>"</p>	<p>로 과목을 통합해서 지원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용 차량이 없는 학교에 매월 30만원씩 지원됨. ○ 실험실습비는 별도로 지원되며 육성회비에서 5%이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별 어려움 없음. ○ 노후 복사기 교체비용 및 워드프로세서, 운전등사기등의 지원 경비임. ○ 교·금당 경비, 행정비 및 사업비는 예산 기준대로 편성하며, 하급교육청의 특색사업 경비는 자율성을 인정하여 요구대로 예산에 반영함. ○ 학교등에서 공무원의 사고가 발생되었을때 공상으로 판단되면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인데, '91년도 지불 실적은 1억 5천만원정도이나, 현재 계무중인 사건도 있고 하여 앞으로의 소요 금액은 추정키 어려움.
이 상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차관기자채 구입 및 수선과 관련하여 기자채 활용도는 어떠한고 부품구입은 용이한지 	<p>과학기술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과 달리 최근엔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도입연도가 10여년이 지난 기자채가 많은바 학교자체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 의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이 상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연수(부전공) 30명의 연수내용은 ○ 폐수처리시설 대상학교는 ○ 실고생 장학금(농·공업계) 연간 지급액 및 대상자 결정은 ○ 공업계고교 재배치를 위한 토지매입 추진현황은 어느 정도 상태인지 또한, 연말안에 시설결정이 가능토록 업무추진이 될 수 있는지 	<p>중등교육 국 장</p> <p>과학기술 과 장</p> <p>재무과장</p>	<p>는 서울 산업대등에 의뢰하여 수선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교사 자격증 보유자가 금년도 신규채용자는 7명 뿐이며, 종전에 상과 자격증 보유교사가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여 과목의 전공성을 살릴수 없었던 바, 충북대 전산과에서 360시간 이수후 부전공으로 자격이 부여되어 그 효과가 높음. ○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는 17개 학교중 화공과가 설치되어 폐수처리 시설이 시급한 부강공고, 보은농공고, 단양공고등 3개교임. ○ 1인당 연간 10만원씩 지급하며 대상자는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 결정함. ○ 개인소유자가 70여명인데 현재 34명으로부터 매도 승락을 받았고, 시설결정을 위하여는 85%의 매도승락서를 받아야 하나, 60% 정도 매도승락을 받으면 시청과 협의하여 시설결정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음. 또한, 건설부소유 18필지(1500평)는 대청댐과 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 의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이 상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비는 교육부에서 차후에 추가배정 되는지 ○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은 계속 되는지 ○ 학교운영비 보조 127,500천원의 내역은 ○ 부속시설 관리비는 무엇인지 ○ 교육행정자문위원회 예산이 교육청별로 다른데 청주교육청 예산안대로 조정할 수 없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과장 " 행정과장 중등교육국 행정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간 용수로 통과 지역으로 그 원형을 살려가면서 사용토록 관계기관과 협의함. ○ 추가배정은 없을 것으로 봄 ○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한시법으로 '92에 그사업이 종결되며 재량권이 없는등 모순점이 있어 다른 방법을 마련 계속 추진계획임. (교육부방침) ○ 육성회 부실교, 소규모학교의 학교운영비 부족분 지원경비임. ○ 농업고등학교의 생산물 매각대환원경비로 전액 해당학교에 지원됨. ○ 청주교육청 예산편성안대로 조정 검토하겠음.
이 제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학교 컴퓨터 구입방법은? ○ '92컴퓨터교육 지원과 관련된 해외연수 대상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과 과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교는 통신공사에서 지원하고 있고, 중·고교는 일괄 구매 형태로 이루어 지지만 전자산업 육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조달청에서 단체 수의계약후 시도별로 업체를 지정함. ○ 컴퓨터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 주관으로 전국을 통합 실시하고 있고, 그 대상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 의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이 계 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월국교 종합생활관 사업은 투자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활용 효과는 ○ 승용차 구입예산액이 기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등급 차종으로 구입할 수 없는지 ○ 이동도서관의 운영 효과는 	<p>중등교육국</p> <p>행정과장</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중·고 교사 각 1명, 전문직 1명임. ○ 학교마다 생활관 신축시 많은 예산 투자에 비하여 활용은 2-3개월 정도로 예산낭비 요인이 있어 생활관 보유 비율이 낮은 북부지역 중·고등학생의 공동이용과 그 지역의 자모,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제공코자 하며, 참고로 지역별 생활관 보유 비율을 말씀드리면 북부 20%, 중부 80%, 남부 60%임. ○ 등급 차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아파트 단지 등을 방문하여 도서관 대출하여 주는 데 주로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 상당히 효과가 큼.
김 응 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군 교육청에 컴퓨터담당 장학사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 농어가 자녀 학비지원 신청자 조사 경비 내역은 	<p>중등교육국</p> <p>재무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배치할 계획임. ○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2회(1,2학기)에 걸쳐 조사하는 직원의 여비이며, 1ha미만 경작농가의 자녀 등에 대한 농수산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 의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김 응 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절약 추진 및 물품관리 현장 점검 방법은 ○ 교육행정자문위원회 예산편성 기준은 무엇이며, 시·군마다 예산액 격차가 심한데 합리성이 없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행정과장	<p>로부터의 지원자금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확인점검 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선기관을 점검하는데 내용 연수 5년 미만인 물품의 폐기 (3백만원이상)시는 현품 확인등 조사자 의견을 반영함. ○ 교육행정자문위원회 예산은 교육청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요구 한대로 편성하였으며, 수당·여비 등은 교육청별로 동일하고, 특별판공비는 교육청에 따라 다르나 도에서 기준을 정하기 어려움.

(별첨 16)

1991 년 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1991. 11. 8.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감사·조사소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294
2. 감사기간.....	294
3. 감사실시 대상기관.....	294
4. 감사실시 경과.....	295
가. 감사반 편성.....	295
나. 감사 일정.....	295
5. 주요 감사 실시내용.....	296
6. 감사결과 및 처리요구사항.....	304
가. 권장사항.....	304
나. 처리 요구사항.....	304
다. 건의사항.....	305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307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감사·조사 소위원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감사·조사 소위원회가 실시한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의 목적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교육위원회 활동에 반영하고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1991. 11. 2 - 11. 6(4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가. 충청북도교육청

나. 충청북도재천교육청

다. 충청북도청주교육청

4. 감사 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1) 감사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비	고
위	원	박	병	래	간사
위	원	권	혁	풍	
"	"	이	상	일	
"	"	이	재	희	
"	"	홍	신	희	
"	"	김	응	복	
"	"	김	광	수	
"	"	이	근	수	
"	"	김	사	수	
"	"	장	충	호	

2) 감사 보조자 명단

직	위	성	명	비	고
지	방	민	병	수	
지	방	이	영	규	
지	방	김	왕	년	
지	방	최	재	혁	
"	"	원	영	훈	

나. 감사일정

기	간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감	사	방	법	비	고					
11. 2(토)		충	청	북	도	교육	청	충	청	북	도	교육	청	주요시책	청취 및	총	합	강	평	
11. 6(수)																				질의·답변
11. 4(월)		충	청	북	도	제	천	교육	청	제	천	교육	청	보	고	청	취	및		
														질의·답변						
11. 5(화)		충	청	북	도	청	주	교육	청	청	주	교육	청	"						

5. 주요감사 실시내용

가. 충청북도교육청(1일차)

1991. 11. 2.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장 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학협의 계획 및 실적 2. 중3 학습능력시험평가('91.8.21 실시) 결과 분석 및 학습능력 향상 방안 3. 학생 언어지도 및 교사사용언어 연구 방안 4. 중학교 총괄평가 문제지 검토 5. 노작교육의 효율화 방안 6. 도 교육계획의 일선학교 전달 방법 및 따금상태 7. 보충자율학습 폐지후 사후 조치사항 및 대책·향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충수업 폐지후의 교사의 연구실적 및 퇴근시간 ○ 보충수업 하는 학교수, 학생수 ○ 보충수업 전후의 학생성적 ○ 외국과의 수업시간 비교 	
생활지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외생활지도 실적 및 불향씨름 현황 2. 학생 야간 생활지도 방법 3. 환경정화 구역내 유해업소 현황 및 대책 4. 보충수업 폐지후 학생지도문제 5. 학생 생활지도 예산증액 문제 	
교단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단·교원지원 특별대책 2. 교원 잡무경감을 위한 사무직원 확대 배치 계획 	
교직·인사·연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 장거리 통근에 따른 대책 2. 교장임기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3. 일부지역 교원 고령화와 정체 현상에 대한 대책 4. 미임용 교장·교감·교사·일반직 현황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5. 교원 복지증진과 사기진작 방안 6. 농촌지역 우수교사 확보 방안 7. 잠재적 전교조 교사 활동내용 8. 청주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장 및 교육청 사회교육계장 임용 현황 9. 교원 정원 현황 10. 예·체능 전담 순회지도교사 증원방안 11. 일선교사소리 수용 현황 및 실적 12. 교직의 전문성, 중립성의 일선반영 조치 현황 13. 단양·제천 등 오지지역 경력교사 배치 문제 14. 각급학교 컴퓨터 교육을 위한 외래강사 초빙 방안 15. 공무원 연수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 16. 교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연수 효과 17. 어학·수리 지도를 위한 지도교사 연수 계획 18. 연수 여비 차등 지급 문제	
보건 및 사회 교육	1. 결식아동수 및 급식학교 현황 2. 사설학원 설립경영자 교육 실적 및 내용 3. 사설학원에 대한 감독 범위 4. 사설학원 수강 학생 현황 5. 학기중 사설학원 개방문제	
감 사	1. 감사원 인사감사 결과 내역 2. 자체감사 결과 적발 내역 3. 감사결과 유형별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4. 사무감사 요원의 감사 자세 및 전문직 참여 문제	
학교관리 및 시설관리	1. 학교 화장실 설계의 다양화 방안 2. 임의 하청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3. 학교 업무용 차량 운영의 문제점 및 대책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영세학교 통·폐합에 따른 통근버스 운영의 성과 5. 교육 환경개선 특별기금 집행내역 6. 입찰공사 시설비 집행 현황 7. 소규모 학교 숙직 전담제 개선 방안 8. 폐교학교, 학급 감축교 재산 관리 9. 각급학교 관사 현황 및 농촌지역 사택 확대 방안 10. 농촌지역 학교 급식시설 확충 방안 11. 교육기자재 시설 확보 방안 12. 공사 추진 현황 13. 미등기 재산 현황 및 대책 14. 학교 안전 공제회 운영(10만원이하 소액사건 보상문제) 15.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 16. 교육재산 임대차 현황 17. 부족교실 대책 18. 컴퓨터 구입 방법 19. 시설공사 설계도 및 시방서 관리 20. 학교 건물의 내구 년한 연장 방안 21. 지체상금 관리 및 부과문제 	
예산집행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산배부 및 자금의 적기 송금 2. 건물유지비 예산 집행 현황 3. 예산부자의 우선순위 책정 방법 4. 물품 공동구매 내역 및 사유 5. 일반회계 전입금 문제 6. 예산배부 현황 및 기준(청주·제천) 7. 예산집행 과정에의 교감 참여범위 확대 	
사립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법인 전입금 현황 및 전입금 부족액에 대한 대책 2.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및 확보방안 	

나. 충청북도제천교육청

1991. 11. 4.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장 학	1.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 및 내용 (교과별 교재 재구성 지도, 우열반 편성, 부진아 지도) 2. 정직성 교육, 봉사근로 정신교육 방안 3. 국교 교과전담제 실시 현황 및 방법 4. 각종행사시 학생동원 문제 및 수업대책	
생활지도	1. 교외생활지도 학부모 참여의 효과 및 내용 2. 교외생활지도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 활성화 방안 3. 불량씨클 현황	
교직·인사	1. 봉군교원 현황 및 대책 (근무지 강제거주에 따른 문제점) 2. 초임교사 자체연수 실적 및 내용 3. 파견교사(순회지도교사) 현황 및 사기진작 방안 4. 잠재적 전교조 교사 활동 내용 5. 누락경력 인정대상 및 인정방법 6. 각종행사시 교사의 학생인솔 실태	
보건 및 사회교육	1. 학교급식 현황 및 예산 현황 2. 노인교실 운영 현황 및 실태 3. 제천시 도서관 이전 문제 4. 제천군 도서관 신축 문제	
학교관리 및 시설관리	1. 미등기 재산 현황 및 미등기 사유 2. 학교 건물에 대한 철저한 공사감독 방안 3. 폐교학교 현황 및 폐교학교 재산 관리 4. 2부제수업 현황 및 대책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예산집행 및 재정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운영비 적기 송금 방안 2. 건물유지비의 효율적 집행 3.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기준 및 내역 (생활지도시 지급 여부) 4.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 방안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장 학	1. 새질서·새생활 운동 실천의 내실화 방안 2. 보충수업 폐단 개선방안 및 전인교육과의 관련 검토 ○ 보충지도 폐지이후 학력 향상에 대한 평가 ○ 보충지도 폐지이후 학생 생활지도 방법 3. 특별활동 활성화 방안 4. 국제화 교육의 내실화 방안과 일본과의 학생교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학습권 신장을 위한 학부모 참여 방안 6. 학부모회 운영 내실화 및 교양강좌 운영 실태와 그 효과 7. 도교육 계획 구현을 위한 방안 8. 학생 자치 활동의 활성화 9. 상설 특활반 운영 10. 공개수업과 장학 협의의 연관성 11. 중위권 학생에 대한 지도 방안	
생활지도	1. 방과후 학생 생활지도 방안 2. 교외 생활지도의 문제점과 대책 3. 교외 생활지도 실적 및 불량씨클 실태 4. 교복 자율화 실태 5. 전교원의 교도교사화 시책 내용	
교육행정	1. 교육행정 자문위원회 운영 실태	
교직·인사·연수	1. 합리적 증치교사 운영 방안 ○ 배정기준 ○ 수업 결손시 대책 2. 잠재적 전교조 교사 활동내용 3. 대학원 진학교원 지원 방안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4. 공사립간 교사 정원 격차 문제 5. 교사의 건의사항 수용 실태 6. 파견교사 현황 및 우대 방안	
사회교육 및 보건·체육	1. 체육 지정 종목 육성을 위한 지원 현황 2. 학교 환경 위해업소 실태 및 제도적 대응 방안 3. 사회교육체육과의 담당업무 및 사회교육 내실화 방안 4. 사설학원 설립 경영자 연수 내용	
학교관리 및 계정관리	1. 미등기 재산 현황 및 등기 추진 계획 2. 불품 수의계약 집행내역 3.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한 대책 4. 시설 공사 지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5. 안전 공제회 운영 실태 6. 교직원 관사 관리 활용 실태 7. 학교운영비 적기 송금 여부 8. 학교건물 유지비 배정기준 및 절차 9.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기준	
사립학교	1. 사립학교 지원실태 및 사립학교 전입금 확보 방안	

라. 충청북도교육청(2일차)

1991. 11. 6.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장 학	1. 학부모 정신 계도 문제(생활지도·가정교육 등을 위한) 2. 바른 학력관 구현을 위한 지속적 추진 방안 3. 학생 자치 활동, 특별활동 내실화 방안 4. 보충수업 폐지에 따른 학력 문제(중위권 학생 지도문제)	
생활지도	1. 학교주변 폭력배 단속을 위한 효율적 방안 2. 교외생활지도 실적 및 합리적 지도 방안	
교직·인사·연수	1. 일선교사 소리듣기 등 사진 진작 방안 2. 파견교사 우대 방안 3. 교원·일반직 정신 교육 4. 증치교사 배치기준 및 확보 방안 5. 잠재적 전교조 교사 활동 내용 6. 교단 및 교사 지원 체제 7. 소규모 학교 사무직원 배치 현황	
사회교육·보건·체육	1. 청주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장 보직 2. 학교급식의 농촌지역 확대 방안 3. 체육 특기학생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 방안	
학교관리·재정	1. 폐교학교 재산 관리 2. 학교운영 경비의 적기 송금 방안 3. 시설유지보수비 집행의 합리적 방안 4. 자체 수입 재원 확보 방안 5. 학생회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확보 방안 6. 학교 안전 공제회 운영	
사립학교	1. 사립학교 지원경비 조속 배정 2. 사립학교 교원 확보 3. 사립학교 전입금 확보 방안	

6. 감사결과 및 처리요구사항

가. 권장사항

- 제천교육청의 『인간교육 프로그램』, 청주교육청의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충청북도교육청 『바르고 굳센 어린이』 등의 책자의 보급 및 활용(도)
- 청주교육청의 『상설 특별반 운영』 등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확산(도)

나. 처리 요구 사항

- 영재 및 지진아가 아닌 "증위권 학생"에 대한 학력제고·기술지도·소질계발 신장 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구체적 지도 방안 등의 대책 강구(도·청주·제천)
- 행정재산 외의 각종 교육재산(특히임야)에 대한 수익성 확보를 위한 발전적 방안 모색(")
- 바른 학력관, 자기 학습력 신장을 위한 모범수업 및 연구수업을 형식화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추진하여 일반화 하기 바람(")
- 학생 자치 활동 및 특별활동을 보다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교사에 대한 구체적 특기지도능력 배양과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할 것(")
- 2부제수업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 학교 신축에 특별한 노력을 경주 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교실 신·증축 공사명과 준공 예정일자 현황을 회보 요망(도·청주)
- 교원 호봉 산정시 농업에 종사한 경력을 '농지소유증명'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 요망(도)
- 학생 교외생활 지도를 위하여 학부모 조직을 활용하는 등, 지도 인원을 증원하고 특히 우범지역에 대한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고, 예산지원을 증액하여 실질적인 생활지도가 되도록 노력할 것.

- 학교공사 감독에 일선 교장 등 관리자가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 요령을 교육토록 하고, 관계 도면(설계도·시방서 등)이 공사 현장에 비치 되도록 조치 요망(도)
- 사립학교 자체 재정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입금 확보, 기본재산의 수익성 증대 등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학생 배정 조정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 고려) (도)
- 미등기 재산에 대한 조속한 등기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추진(도·청주·제천)

다. 건의사항

- 정주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장을 전문직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정원 확보에 노력 요망(도)
- 사립학교 연금 및 의료보험금 부담액에 대한 조속한 지원 요망(도)
- 공·사립 학교간 교사 현원의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요망(도)
- 국가의 장래가 발전 지향적인 국민정신의 결집 여하에 달려 있음을 감안 교직원 및 학부모 정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성 있는 연수교육 확대 방안 강구 요망(실천·행동에 역점을 들 수 있는 내용 등)(도·청주·제천)
- 학교 안전공제회 운영 사항에 대한 홍보를 통한 의구심 해소에 노력 요망(도)
- 중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로 학교수업 결손의 해소와 다양한 학교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 요망(도)
- 일선 교사들의 건의나 애로사항에 대한 적극적 수용태세와 해결책 제시를 위한 능동적 노력 요망(도·청주·제천)
- 학생 생활지도에 따른 소요경비의 현실화 및 증액 요망(도)

- 보충수업 폐지에 따른 제 문제점의 보완 및 지속적 개선 추진 요망(도·청주·제천)
- 사설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 실시로 건전하고 내실있는 사회교육 기관으로 육성 요망(")
- 공사의 조기 발주 및 완공을 위한 노력 요망(")
-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직급별 지급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요망(장학사가 6급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 등)(도)
- 예·체능 전담 지도 등을 위한 파견교사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 강구 요망(도)
- 학교 운영을 위한 재반경비의 적기 송금으로 학교경영에 애로가 없도록 노력 요망(도·청주·제천)
- 잠재적 활동중인 전교조성향 교사 등은 유능한 관리자와 동일 학교에 근무하도록 하여 능동적 근무자세를 갖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교사들의 긍정적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등 교직원 융화, 단결책을 모색하기 바라며, 특정지역(음성·단양 등)에 편중 배치되지 않도록 고려 요망(도·청주·제천)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가. 충청북도교육청

- 고등학교 특성화 사업은 수월성 교육, 개인의 능력과 소질개발, 지역에 필요한 기술인력 공급 등이 기대되는 시책으로 평가됨.
- 학교 재편 사업은 인문계 고교의 실업계 고교로의 균형있는 전환을 통하여 기능인력 양성, 조기취업, 재수생 감소, 실업률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의 적절한 사업임.
- 상설특활반을 운영하는 등의 특별활동 강화 시책은 입시위주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게 하며, 일부 성행불량 학생들에 대한 선도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임.
- 인구의 도시 집중에 따른 학생수 증가로 인한 2부제 수업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예산 확보, 효율적인 수용 계획 수립 등), 2부제 수업을 해소하고자 한 노력을 높이 평가함.

나. 충청북도제천교육청

- 신규교사(2년미만 교사)에 대한 자체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 생활에 충신토록 한 것은, 짧은 경력 교사가 많은 제천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임.
- 교원잡무경감을 위하여 사무보조 기능직에 대하여 업무처리 교육을 실시한 것은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긍정적 조치임.
- 건물유지비 집행에 있어 사전에 학교장의 요구사항을 접수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예산배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였음.

다. 충청북도청주교육청

- 전 교사의 교도교사화 방안의 강구는 학생 생활 지도나 상담 운영에 큰 성과를 거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제화 시대에 대응한 외국어 교육 방안은 시의적절 한 것으로 판단됨.
- 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방법의 개선, 모범수업 참관제 운영 등의 증점 사업은 우수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시설사업집행 등으로 시기 적합한 학생 수용계획 수립과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해 노력한 바, 향후에도 면밀한 계획으로 2부제 발생요인을 사전에 해결하기 바람.

위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1991. 11. 8.

감사·조사 소위원회

위원장	박병해
위원	권혁풍
위원	이상일
위원	이재희
위원	홍신희
위원	김응복
위원	김광수
위원	이근수
위원	김사수
위원	장충호

(별첨 17)

교육행정업무보고

(1991. 11. 4)

충청북도제천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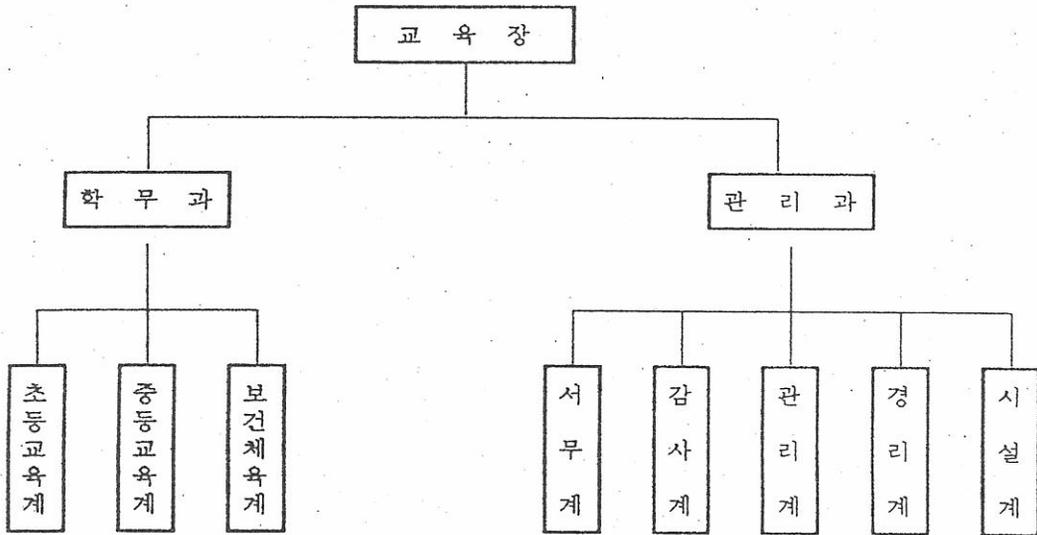
목 차

I .	일 반 현 황	312
1.	기구 및 정원	312
2.	학교현황	313
3.	재정규모	314
II .	' 91 교육지표	315
III .	' 91 주요업무 추진현황	316
1.	인간교육의 내실화	316
2.	교육의 본질 추구	320
3.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325
4.	교육여건의 개선	326
5.	교단지원 행정	328
6.	교육환경 개선	329
7.	교육행정 자문위원회 운영	332
IV .	건의사항	333

I. 일반 현황

1. 기구 및 정원

● 기 구



● 정 원	46 명
○ 일반 직		25 명
○ 교육전문직		12 명
○ 기능 직		9 명

2. 학교 현황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1 (2)	648 (24)	24,408 (1,106)	954 (44)	181 (8)
국민학교	29	468	15,874	562	125
중학교	12 (2)	180 (24)	8,534 (1,106)	392 (44)	56 (8)

유치원	35 (9)	58 (24)	1,697 (946)	70 (36)	
-----	-----------	------------	----------------	------------	--

고등학교	8 (1)	153 (24)	7,464 (1,225)	362 (38)	67 (8)
------	----------	-------------	------------------	-------------	-----------

* ()안은 사립학교

특수학급	국교 : 21 , 중학교 : 3 , 계 : 24 학급				
------	---	--	--	--	--

3. 재 정 규 모

- 특별회계 예산액(단위: 백만원)
- 예산총액: 18,063
- 세입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의 존 수 입	15,232	84.3%	
자 체 수 입	2,790	15.5%	
기 타	41	0.2%	
계	18,063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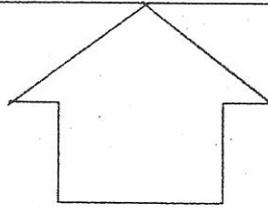
- 세 출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인 건 비	12,880	71.3 %	
교육환경개선사업	1,587	8.8 %	
시 설 비	1,026	5.7 %	
경 상 비	2,568	14.2 %	
기 타	2		
계	18,063	100 %	

II. '91 교육지표

교육지표

자주, 창조, 도덕적 한국인 육성



본시 교육시책

- 1 . 인 간 교 육 의 내 실
- 2 . 교 육 본 질 의 추 구
- 3 . 과 학 , 기 술 교 육 의 진 흥
- 4 . 교 육 여 건 의 개 선

III. '91주요업무 추진 현황

영역별	추진실적
<p>1. 인간교육의 내실화</p>	<p>가. 새질서 새생활의식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제교육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살기에서 바르게 살기 사회기풍조성 - <과소비, 과보호, 무규제> - 교과 및 생활관련지도 : 국.중 41교 - 나의 주장 발표회 개최(6,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국. 중. 고 . 장소 : 제천시문화회관 <p>나. 민주시민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적인 선진문화 시민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훈 및 일기쓰기 지도 - 공동체 의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국.중.고 교과 생활 관련지도 <p>다. 평화통일 의지 배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승지 및 격전지 순례 : 김재옥교사 기념관, 의림지 ○ 통일안보 나의 주장 발표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91. 8. 7 . 장소 : 교육청회의실 . 대상 : 국:29 . 중:12 . 고:8 개교 . 행사 : 그리기, 글짓기, 나의주장 발표회

영역별	추진실적
	<p>라. 전통예절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문화 유적지답사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풍문화재단지, 봉양공전리 자양영당 . 소년 의병장 홍사구 묘소 참배 ○ 민족 문화 전승교육 ○ 어린이 민속잔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91. 5. 5 10:00 - . 장소 : 제천시공설운동장 . 참가대상 : 제천시.제천군 국교 15교(15,000명) . 내용 : 민속잔치 및 어린이 위안잔치 ○ 제 7 회 의림문화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91. 10. 10 - 10. 12 . 개막 : 91. 10. 11 10:00 . 참석대상 : 시내 국. 중. 고 . 주관 : 제천시문화원 . 후원 : 제천시, 충청북도제천교육청 ○ 제 7 회 학생문화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주최 : 충청북도제천교육청 . 미술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 91. 10. 10 - 10. 12 (3 일간) 장소 : 제천시문화회관 전시실 대상 : 국.중.고 교사 및 아동작품 (180 점)

영역별	추진실적
	<p>· 문화공연</p> <p>일시 : 91. 10. 12</p> <p>1 부 11:00 , 2 부 15:00</p> <p>장소 : 제천시문화회관</p> <p>대상 : 국, 중, 고 학생</p> <p>내용 : 독창, 합창, 중창, 가야금병창, 합주, 연극, 현악합주</p> <p>마. 건전한 생활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생활습관의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생활습관 지도자료 : 테이프자료 29 개교 보급 (예절, 경제, 질서) · 내용 : 교과, 생활관련 지도 · 방법 : 학부모 연계지도 - 바쁜회의 진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어린이회 및 학급회 진행방법 · 자료 : 제천동명국교, 제천JC, 29개국교 자료보급 ○ 청소년 단체 수련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천학생야영장 운영(제천군 청풍면 학현리) ○ 청소년 수련 야영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 29교, 중 12교 : 연간 9,389 명 ○ 청소년 단체활동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S : 국 15교 중 4교 670 명 - G.S : 국 10교 중 2교 441 명

영역별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연맹 국 13교 중 4교 1,477 명 - 해양소년단 국 6교 중 5교 277 명 - 청소년 적십자 국 14교 중 12 교 3,377 명 - 우주소년단 국 5 교 중 6교 459 명 <p style="text-align: center;">총계 6,702 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상담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교 1진로 상담실 설치 : 중 12교 ○ 진로 상담 사례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91. 6. 21 . 장소 : 교육청회의실 . 대상 : 중 교도교사 12 명 . 발표내용 : 상담지도사례 12 명 ○ 진로담당교사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91. 9. 20 . 장소 : 교육청회의실 . 대상 : 3학년 주임 12 명 . 내용 : 진학 희망예정자 진로 및 정보교환 ○ 상담 자원 봉사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 지역 상담실 : 교육청 1실 37 명 . 협력학교 진로교육상담실 : 1,209 명 제천중, 의림여중, 대제중 . 상담자원 봉사자 보수교육 기간 : 91. 4. 2 , 7.12 , 9.26

영역별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상담자원 봉사자 및 교도교사 180명 . 내용 : 학부모의 역할, 바르게 키우는 교육 ○ 학생선도 학부모교실 시범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 충북제천교육청 지정 . 학교 : 제천여중 . 보고일자 : 91. 10. 25
<p>2. 교육의 본질 추구</p>	<p>가.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의 정상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학습자료 확보 및 교실의 자료실화 . 지식보다 인간교육에 역점 . 교수, 학습방법 전환 현직연수 강화 ○ 특별활동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설 특활반 운영 - 발표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예회, 종합예술제, 졸업발표회 . 영역별 기능 급수 설정운영 글짓기(의림) 컴퓨터(동명) 체육(남당) 연산기능(남천) 학기말 학교장이 급수 부여 ○ 독서의 생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의 독서실화 - 학교별 독서 시범학급 지정운영 <p>국 29교, 중 12교</p>

영역별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후감 발표대회 : 국. 중(학생, 학부모) 개최 10월 - 여름 독서 교실운영 : 7 개교 40 명 <p>나. 기초학력의 정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교육의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학습방법 전환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차(91.5.17) 2차(91.5.29) 3차(91.8.2) . 장소 : 교육청 회의실 . 대상 : 국. 중 교사, 교감, 교장(연인원 191 명) <p style="text-align: center;">생각하고, 짓고, 만들고 뛰는 교육활동</p> ○ 교수, 학습 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학습(제천동명) . 즐거운교실(수산국, 대제중) . 교육풍토쇄신(유덕국, 백운중) . 절제교육(입석) . 컴퓨터, 과학(송학중, 봉양국) . 교육방송 수업(화산국, 제천여중) ○ 신규임용교사 적응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91. 3. 16 . 장소 : 의림국교 . 대상 : 16 명

영역별	추진실적
	<p>. 내용 : 교과 특질에 맞는 학습지도 학급경영 및 학교경영에서의 역할</p> <p>○ 교육경력 2년미만 교사 학습지도 연수</p> <p>. 일시 : 91. 7. 22</p> <p>. 장소 : 남당국교</p> <p>. 대상 : 교육경력 2년미만 교사(77명)</p> <p>. 내용 : 시범수업 참관, 교사의역할 특강 교수, 학습 방법</p> <p>○ 학습 평가 방법의 개선</p> <p>. 글짓기 - 주관식 서술 평가 확대</p> <p>. 글짓기지도결과 장학협의시 확인</p> <p>다.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p> <p>○ 유아교육</p> <p>- 바른습관 형성과 자립심을 기르는 교육</p> <p>- 유아교육 협의회</p> <p>. 일시 : 91. 6. 28</p> <p>. 장소 : 제천남당국교</p> <p>. 대상 : 제천시내 공.사립 유치(아)원 42명</p> <p>. 내용 : 교육활동 참관, 사례발표, 외국의 유아교육 사례 특강</p> <p>- 유치원 부모 교육</p> <p>. 일시 : 91. 5. 16</p>

영역별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교육청회의실 . 대상 : 유치원 학부모 78 명 . 내용 : 사례발표, 유치원 교육의 개요 - 활동중심 유치원 운영 보고회 . 일시 : 91. 11. 5 . 공개보고 : 백운국교 병설유치원 . 대상 : 제천시내 공.사립 유치(아)원 38 명 . 내용 : 시범교수활동, 유아교육의 당면과제 ○ 특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급운영의 내실 : 24 학급 - 특수학급 담당교사 연수회 . 일시 : 91. 5. 23 . 대상 : 특수학급 담당교사 24 명 . 내용 : 지도사례발표, 특수교육 현안과제 - 특수학급 담당교사 전달강습 . 일시 : 91. 9. 19 . 대상 : 특수학급 담당교사 24 명 - 특수학급 담당교사 현장 연수 . 일시 : 91. 11. 14 . 대상 : 특수학급 담당교사 24 명 . 현장연수장소 : 한국선진학교(경기도 안산) 라. 예, 체능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능교육

영역별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체능 전담제(음악. 미술. 체육) . 전담교사 학교순회 지도(6개교) . 부분적 전담제(6개교) . 교환 수업제(동학년 : 15개교) . 지원 수업제 (2 개교) 계 29 개교 - 제 7 회 학생문화제 개최 . 학예 및 예능교육의 사회화 - 학교별 학예발표, 작품전시회권장 ○ 체육교육 -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 1 교 1 기 특색 발휘 ○ 보건위생 교육의 충실 - 보건위생교육의 철저 . 교재내용 분석 - 예방접종 및 검사 실시 - 발달단계에 맞는 성교육 . 교재내용 분석 3 - 6 학년 마. 미래사회 대비 교육 ○ 안목을 넓히는 국제문화 교류 교육 - 각종작품 자료 교환 - 국제펜팔, 해외연수 권장

영역별	추진실적													
<p>3. 과학기술 교육의 진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월성 교육 및 영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목 : 국(영어, 일어, 중국어) 중(독어, 일어, 중국어) - 수학경시, 외국어 구화대회 행사 실시 - 특수교육 대상자 지도기록 카드 작성 활용 . 대상 : 국, 중 126 명 ○ 영어 말하기 능력 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구화대회 : 국, 중 - 영어 듣기 평가 : 중 ○ 외국어 지도교육 누가기록카드 작성 활용 : 350 <p>가. 기초과학 교육 . 교사 실험연수 : 국교 40 명</p> <p>나. 과학 특별교실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과학교실 운영(91. 4. 2 - 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 5 년 40 명(교육청) . 중 1 년 40 명(제천중) . 학생 과학동산 운영 <table border="1" data-bbox="525 1471 1253 1738"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rowspan="4"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여름 과학 동산</th> <th>구분</th> <th>국</th> <th>중</th> </tr> </thead> <tbody> <tr> <td>일시</td> <td>7. 24 - 7. 29</td> <td>7. 24 - 7. 29</td> </tr> <tr> <td>장소</td> <td>동명, 의림, 화산</td> <td>제중, 제천여중</td> </tr> <tr> <td>대상</td> <td>120 명</td> <td>80 명</td> </tr> </tbody> </table>	여름 과학 동산	구분	국	중	일시	7. 24 - 7. 29	7. 24 - 7. 29	장소	동명, 의림, 화산	제중, 제천여중	대상	120 명	80 명
여름 과학 동산	구분		국	중										
	일시		7. 24 - 7. 29	7. 24 - 7. 29										
	장소		동명, 의림, 화산	제중, 제천여중										
	대상	120 명	80 명											

영역별	추진실적			
4. 교육여건의 개선	겨울	구분	국	중
	과학	일시	12. 26 -12. 30	12. 26 -12. 30
	동산	장소	남당. 남천	제중. 의림여중
		대상	80 명	80 명
다. 컴퓨터 교육의 활성화				
○ 컴퓨터 교육센터 운영				
. 컴퓨터 국: 246, 중:124				
. 동명.입석.교육청(91년도 한국통신공사기증 131대)				
라. 청소년 과학 경진대회 개최				
○ 글짓기, 과학독후감, 라디오조립, 모형항공기 제작				
과학상자조립				
○ 과학실험, 퍼스널컴퓨터 경진대회				
마. 실업.기술교육				
○ 근면. 존중의 태도 육성				
○ 기초 기술력 향상				
○ 기술교육 여건 지도				
가. 학교운영의 민주화				
○ 가족적 학교분위기 조성				
○ 교사의 학교운영 참여기회 확대				
○ 교육문제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 찾기				
○ 교사 우대풍토의 조성				
○ 교사의 제자리 찾기				

영역별	추진실적
	<p>나. 장학협의 방법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장학으로의 전환 ○ 수업중심 자율장학 및 동료장학 권장 ○ 교육전문성 제고 ○ 장학의 전문성 제고 ○ 전과목 장학위원 위촉운영(중 12 교) <p>다. 사회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사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회 운영 : 국.중 41 개교 . 노인교실 운영 : 국 29 개교

영역별	추진실적
5. 교단지원 행정	가. 일선교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 학습방법 개선과 기초과학 진흥 및 컴퓨터 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과학 진흥예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 및 시청각 교구 확충 : 국민학교 29 교 <li style="padding-left: 150px;">중학교 6 교 <li style="padding-left: 150px;">(현미경외 2 종) · 지원금액 : 52,299천원 - 교육과정 개정 학습자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궤도구입비의 1종 : 국민학교 29 개교 · 지원금액 : 39,465천원 - 독서교육용 교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실 교구, 열람대의 3종 : 국민학교 4 교 · 지원금액 : 20,800천원 - 컴퓨터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걸상 외 3종 : 국민학교 6 교 · 지원금액 : 18,500천원 나. 학교장 중심의 학교경영 지원 강화 <p>학교장 요구사업중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지원으로</p> <p>학교장 중심 학교경영 지원</p>

영역별	추진실적
<p>6. 교육환경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비 유지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택수리비 : 국 13 교 중 2 교 . 지원금액 : 43,600천원 ○ 시설장비 유지비 : 국 29 교 중 10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 42,440천원 ○ 급수대 설치 : 국 5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 19,000천원 ○ 운동장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장 마사 깔기의 2 중 : 국 8 교 . 지원금액 : 15,000천원 ○ 학교운영 일반비품 구입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상 일반비품 지원 . 청소용 박스(물은박스)의 5 중 : 국민학교 15 교 중학교 9 교 . 지원금액 : 34,000천원 <p>다. 교원업무경감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요불급한 공지사항등 회보에 게재하여 시행 . 보고요구문서 사전 통제 철저 이행 . 매월 지도방문계획 사전 조정실시 .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사무보조기능 교육 <p>가. 국민학교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제천시 청전동 35 - 6

영역별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명 : 제천중앙국민학교 . 학급수 : 27 학급 . 개교예정일 : 92. 3. 1 ○ 시설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 16,815 m² . 건물 : 연건평 4,054 m² 3층 철근 콘크리트조 . 소요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매입비 : 629,668,000원 . 건설비 : 1,322,643,000원 계 : 1,952,311,000원 ○ 추진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정지 : 30 % . 건물신축 : 60 % . 준공예정 : 91. 12. 7 나. 소규모 학교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 원월국민학교 → 백운국민학교로 통합 91. 3. 1 . 분교장 : 양화국민학교 동막분교장 → 잔류학생 5명은 남천국교에 수용 91. 3. 1 ○ 분교장 격하

영역별 추진 실적

- 운학국민학교 → 화당국민학교 운학분교장으로
 - 송한국민학교 → 송학국민학교 송한분교장으로
- 격하 91. 3. 1
- 폐지학교 아동·통학지원
 - 원월국민학교 : 35인승버스 1 대 구입 배치
 - 동막분교장 학생(5명): 전세차량(택시) 교통비 지원
- 다. 교육시설 개선사업 추진

사업별	국민학교			중학교		
	계획량	실적		계획량	실적	
		완공	추진중		완공	추진중
교실개축	22 실	10	12			
교무실 확충	5 실	3	2			
교원 휴게실	3 실	2	1	1 실	1	
사택 신개축	5 동	3	2			
화장실 개축	2 동	1	1			
화장실 개량				5 동		5 동
부속시설 신개축	1 동		1	3 동	2	1
계단 실축	1 실		1			

영역별	추진 실적																														
7. 교육행정 자문위원회 운영	이 중 창 설 치	42.5실	5	37.5	74 실	9	65																								
	노후교실 증 수	48 실	3	45	32.5실	20.5	12																								
	가. 구성일자 : 91. 9. 27																														
	나. 구성현황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19 713 558 782">직</th> <th data-bbox="558 713 715 782">성 명</th> <th data-bbox="715 713 1179 782">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19 782 558 929">위원장</td> <td data-bbox="558 782 715 929">최 병 찬</td> <td data-bbox="715 782 1179 929">전직교장 현 제천시 문화원장</td> </tr> <tr> <td data-bbox="419 929 558 997">위 원</td> <td data-bbox="558 929 715 997">이 태 호</td> <td data-bbox="715 929 1179 997">제천시 문화원장</td> </tr> <tr> <td data-bbox="419 997 558 1066">"</td> <td data-bbox="558 997 715 1066">김 원 배</td> <td data-bbox="715 997 1179 1066">군정 자문위원 역임</td> </tr> <tr> <td data-bbox="419 1066 558 1134">"</td> <td data-bbox="558 1066 715 1134">신 상 욱</td> <td data-bbox="715 1066 1179 1134">군체육회 전무이사</td> </tr> <tr> <td data-bbox="419 1134 558 1203">"</td> <td data-bbox="558 1134 715 1203">신 상 욱</td> <td data-bbox="715 1134 1179 1203">시정자문위원 역임</td> </tr> <tr> <td data-bbox="419 1203 558 1272">"</td> <td data-bbox="558 1203 715 1272">최 영 자</td> <td data-bbox="715 1203 1179 1272">관내중.고 육성회장 역임</td> </tr> <tr> <td data-bbox="419 1272 558 1315">"</td> <td data-bbox="558 1272 715 1315">최 영 자</td> <td data-bbox="715 1272 1179 1315">어머니회 연합회장</td> </tr> </tbody> </table>								직	성 명	비 고	위원장	최 병 찬	전직교장 현 제천시 문화원장	위 원	이 태 호	제천시 문화원장	"	김 원 배	군정 자문위원 역임	"	신 상 욱	군체육회 전무이사	"	신 상 욱	시정자문위원 역임	"	최 영 자	관내중.고 육성회장 역임	"	최 영 자	어머니회 연합회장
직	성 명	비 고																													
위원장	최 병 찬	전직교장 현 제천시 문화원장																													
위 원	이 태 호	제천시 문화원장																													
"	김 원 배	군정 자문위원 역임																													
"	신 상 욱	군체육회 전무이사																													
"	신 상 욱	시정자문위원 역임																													
"	최 영 자	관내중.고 육성회장 역임																													
"	최 영 자	어머니회 연합회장																													
다. 운영실적																															
. 91. 9. 27. 제 1회 정기회 개최																															
. 위원회 구성 및 교육현안 보고협의																															

IV. 건 의 사 항

1. 제천시 근무만료교사의 제천시 전보방안 강구
2. 교원 화장실 특별 배정 요망

여교사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교원 화장실을 시설

할 수 있도록 사업 배정 요망

(별첨 18)

1991年度

主 要 業 務 報 告

忠清北道清州教育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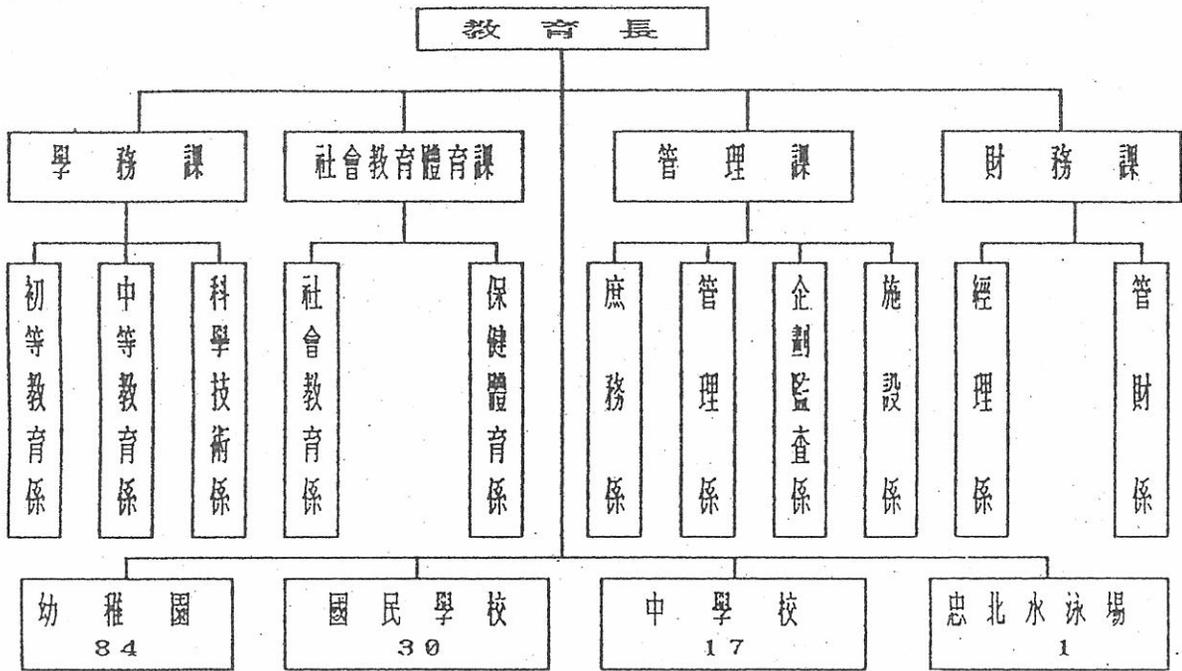
報 告 順 序

I . 一 般 現 況	336
II . 本 市 教 育 的 方 向	339
III . '91 重 點 事 業 推 進 現 況	340
1 . 學 力 的 質 的 管 理	340
2 . 節 制 教 育 的 強 化	341
3 . 特 別 活 動 的 活 性 化	342
4 . 學 校 的 地 域 化	343
5 . 國 際 化 教 育 的 擴 大	344
6 . 教 育 與 件 的 改 善	345

I. 一般現況

1. 機構

4課 11係



2. 職員現況

區分 現員	專門職			一般職					技能職
	教育長	獎學官	獎學士	5級	6級	7級	8級	9級	
67	1	1	11	3	9	16	13	2	11

* 事業所 包含

3. 學校現況

('91.11.1 現在)

區分	學校數	學級數	學生數	教員數	一般職	技能職	雇傭職
總計	131	1,797	82,906	2,346	76	210	2
幼稚園	84	194	6,147	196	.	.	.
國民學校	30	1,124	52,080	1,267	29	160	1
中學校	17	479	24,679	883	47	50	1

*國.私立包含

4. 私設學院現況

('91.11.1 現在)

區分	文理系	技術系	事務系	讀書系	藝能系	家政系	綜合系	合計
計	26	84	249	69	628	1	30	1,087
學院	20	84	182	69	212	1	15	583
課外教習所	6	.	67	.	416	.	15	504

5. 豫算現況

○ 歳入

(單位 : 千圓)

・ 依 存 收 入 40,629,650 (87.2 %)

・ 自 體 收 入 5,966,910 (12.8 %)

計 46,596,560

○ 歳出

・ 人 件 費 35,231,098 (75.6 %)

・ 行政費 及 事業費 317,456 (0.7 %)

・ 運 營 費 5,212,568 (11.2 %)

・ 施 設 費 5,675,458 (12.2 %)

・ 其 他 159,980 (0.3 %)

計 46,596,560

II .本市 教育의 方向

1. 教育 目標

自主 . 創造 . 道德的인 先進文化市民 育成

2. 教育行政의 指向點

가. 市民 精神 教育의 振作
나. 基礎 教育의 充實
다. 科學 . 技術 教育의 振興
라. 教育 與 件의 改善

Ⅲ. '91 重點事業 推進現況

1. 學力の 質的管理

가. 模範授業 參觀制 運營

- 授業者：希望教師 學校長 推薦 20명
- 展開教科：國·中 全學年 全教科 6月
- 參觀者：該當教科研究,擔當教師 468名
- 結果處理：授業場面 비디오테이프 製作普及 20個
授業公開教師 表彰 20名

나. 評價方法의 改善

- 筆答型 主觀式 評價領域 擴大：學校
- 總括評價問題 製作普及：教育廳
 - 國 4.5.6 學年 全教科 3回
 - 中 1.2.3 學年 5個教科 3回
- 評價結果의 教育的 活用

2. 節制教育의 強化

가. 節制生活 學生運動 展開

○ 節制生活 實踐指導

(禮節) 人間性과 道德性 回復 : 約束時間 지키기

(經濟) 勤儉節約의 實踐 : 所持品 管理

(秩序) 秩序生活의 實踐 : 줄서기

○ 節制生活 事例發表會 開催 : 1回 380名 參加

○ 節制生活 事例集 發刊 配付 : 1回 800部

나. 學生 善導機能의 活性化

○ 學生自治 善導活動 強化 : 學校

○ 全教員 教導教師化 : 善導活動 參與

○ 學生善導 相談室 運營 : 5個中 指定

○ 學父母 相談自願 奉仕者教育 : 3回 263名 參席

○ 生活指導의 地域化 : 16個 主軸校 合同校外 指導

· 善導委員會構成 : 教師, 地域人士, 警察

3. 特別活動의 活性化

가. 常設 特活班 運營

- 常設特活班 組織運營 : 學校
 - 分野別 全學年 參與對象者 發掘指導
 - 學年別 連繫 深化指導
- 休暇中 趣味教室 運營 : 學校
- 學父母 自願奉仕制 運營 : 該當分野 專門家

나. 發表機會의 擴大

- 對外行事의 能動的 參與
- 學藝會 展示會 開催 : 學校
- 藝能實技 競演大會 開催 : 10月 2,067名 參加
- 藝能 優秀實績 綜合發表會 開催 : 11月

4. 學校의 地域化

가. 參與文化 形成

- 學生會 運營의 活性化
 - . 會議進行法 指導의 徹底 : 學校
 - . 會議進行過程 비디오테이프 製作普及 : 50個
- 學父母會 組織運營 : 學校
 - . 自律的 參與誘導
 - . 學校, 地域課題 解決 : 參與機會 擴大

나. 學父母啓導 活動展開

- 學父母教養講座 : 隨時 學校
- 婦母趣味教室運營 : 學校
 - . 班編成 : 希望婦母, 自律選定課題
 - . 講 師 : 教師, 學父母自願奉仕者
- 學生, 教師, 學父母 作品展示會 開催 : 學校

5. 國際化 教育의 擴大

가. 外國語 教育의 活性化

- 國民學校

- 生活英語班 運營 : 學校
- 語學教室 運營 : 4個校 (舟城, 中央, 石橋, 한밭)
 . 3個國語 (英, 日, 中) : 336名 (50時間)
- 英才教室 運營 : 石橋
 . 3個國語 (英, 日, 中) : 5學年 120名 (60時間)

- 中學校

- 第2外國語教室 運營 : 5個校 (舟城中, 南中, 清雲中, 西原中, 清州女中)
 . 5個國語 (日, 中, 獨, 佛, 露) : 1, 2學年 400名 (40時間)

나. 日本 鳥取市 親善訪問 : 8月 國校生 37名

- 訪問結果 評價會 開催 : 8月
- 訪問紀 '우리의 벗' 發刊 配付 : 130部

다. 外國語 指導教師 研修

- 國 - 生活英語 擔當教師 研修 : 40名 (30時間)
- 海外 現地研修 : CHICO 國教師 3名

6. 教育與件的改善

가. 學校新設

- 投資額	10,090,045千원
○ 山南國 : 39學級	2,566,318千원
○ 佳景國 : 29學級	2,110,372千원
○ 栗陽國 : 36學級	3,599,532千원
○ 佳景中 : 10學級	1,813,823千원

나. 教育施設의 擴充

- 投資額	4,393,300千원
○ 教室 增 築 : 102室	
○ 教室 改 築 : 33室	
○ 化粧室 改良 : 8.2棟	
○ 倉庫 改 築 : 5棟	
○ 暖房構造 改善 : 317室	
○ 老朽教室 重修 : 41室	

다. 教職員 便宜施設 擴充

- 投資額 837,000千원

○ 休憩室 : 11室

○ 教務室 : 17室

라. 私立中 環境改善費 補助 : 6校 407,366千원

마. 教育廳 舍 增 築 : 220坪 472,700千원

忠清北道清州教育廳幹部名單

教育長 梁 兢 淵

學務課長 洪 聖 根 獎 學 官

社會教育
體育課長 申 慶 俊 地方行政事務官

管理課長 鄭 今 玉 地方行政事務官

財務課長 延 壯 欽 地方行政事務官

